

『개식용 산업 실태조사와 금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2. 9.



(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참 여 연 구 진

책 임 연 구 원 / 임 순 례

연 구 원 / 이 원 창

연 구 원 / 장 병 권

선 임 연 구 원 / 명 보 영

연 구 원 / 김 아 림

연 구 원 / 이 정 동

도움주신 분들 / 카라의료봉사대(윤재원 수의사, 박종무 수의사, 서정주 수의사 외)

이형근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송지헌 변호사

김은경, 이지선, 전진경, 이정화

이 보고서는 IDA(In Defense of Animals)와 AWI(Animal Welfare Institute)의
지원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회원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동물복지의 개념	-----	3
제 2 절 개식용 산업화의 위험요소	-----	5
제 3 절 공장식 축산업과 개식용 산업	-----	8
제 4 절 개식용과 전통문화	-----	13
제 5 절 개고기의 영양적 평가	-----	15

제 2 장 해외의 개식용 관련 사례 및 우리나라 개식용에 대한 반응

제 1 절 해외 개고기 식용 및 금지 사례	-----	21
제 2 절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개식용에 대한 반응	-----	35

제 3 장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 실태조사

제 1 절 개식용 산업에 이용되는 품종	-----	42
제 2 절 개식용 관련 음식 현황	-----	48
제 3 절 사육단계(1)-개농장의 질병관리와 항생제 오남용	-----	54
제 4 절 사육단계(2)-잔반급여과 그 위험성	-----	66
제 5 절 수송과정	-----	90
제 6 절 도축 및 도축과정	-----	95
제 7 절 유통과정	-----	108
제 8 절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	119

제 4 장 개식용 관련 법령 분석 및 대응 방안

제 1 절 개식용 관련 법령 분석	-----	136
제 2 절 개식용 관련 대응 방안	-----	162

표 목 차

<표1- 1> 개고기 및 보신탕의 영양가	15
<표1- 2> 육류의 콜레스테롤 함량	16
<표1- 3> 식품 중 콜레스테롤 함량	17
<표3- 1>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의 사육현황	42
<표3-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입소견의 입소후 질병 상태	55
<표3- 3> 잔류물질 정의	61
<표3- 4> 주요국가의 육류생산량과 항생제 사용량 비교	62
<표3- 5> 국내 환자에서 분리한 병원성 세균 항생제 내성률	63
<표3- 6> 경구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	73
<표3- 7> 경구 전염병의 감염 경로	73
<표3- 8> 경구 전염병의 종류와 특성	74
<표3- 9> 중금속의 표적장기	85
<표3-10> 국민 혈중 납 수준	86
<표3-11> 국민 혈중 수은 수준	86
<표3-12> 국민 혈중 카드뮴 수준	87
<표3-13> 전국의 염소도축장 현황	99
<표3-14> 축산물의 생물학적 위해 및 성장 특성	104
<표3-15> 축산물의 화학적 위해 요소	105
<표3-16> 축산물의 물리적 위해 요소	106
<표3-1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건강보조식품 섭취현황	119
<표3-18> 50 대 이상 성인의 성별 건강보조식품 섭취현황	121
<표3-19> 춘천지역 60대 이상 노년층의 질병별 건강식품 섭취 현황	122
<표3-20> 부산 지역에서 성별, 연령층별로 싫어하는 음식 조사	123
<표3-21> 부산 지역에서 성별, 연령층별로 섭취하지 않은 음식 조사	124
<표3-22> 조사 대상(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125
<표3-23> 반려동물 사육 여부(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125
<표3-24> 개고기 음식 섭취 경험(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126
<표3-25> 잠재적인 개고기 섭취 대상자(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126
<표3-26> 경구전염병에 대한 인식 유무(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127
<표3-27> 경구전염병에 인식 후 섭취 의사 변화(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127
<표3-28>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유무(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128
<표3-29> 항생제 내성 인식 후 개고기 섭취 의사 변화(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128
<표3-30> 약물 주입으로 도살된 개고기 섭취 의사 변화(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128
<표3-31> 개 도축에 대한 인식(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129
<표3-32> 개고기의 영양가에 대한 인식(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129
<표3-33> 개고기가 다른 고기보다 나은 점(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129
<표3-34>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와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의 차이 (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130
<표3-35> 전통음식으로서 개고기의 인식(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130
<표3-36> 개고기가 계속 이어가야 할 전통인가에 대한 인식(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130

그림 목 차

<그림2- 1> 중국 시장에서 판매중인 개(1)	23
<그림2- 2> 중국 시장에서 판매중인 개(2)	23
<그림2- 3>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	29
<그림2- 4> 2002년 월드컵 당시 개식용 반대 항의 포스터	35
<그림2- 5> 미국 보호단체 IDA의 한국 개식용 금지 항의 집회	36
<그림2- 6> 우리나라 개식용에 반대 및 한국산 상품불매운동 청원 사이트	36
<그림2- 7> 개식용 반대 포스터(1)	37
<그림2- 8> 개식용 반대 포스터(2)	37
<그림2- 9> 국내 업소에서 개고기 손질 모습(1)	37
<그림2-10> 국내 업소에서 개고기 손질 모습(2)	37
<그림2-11> WSPA 웹사이트에 게재된 국내 개식용 산업 실태	38
<그림3- 1> 도사견(시코쿠견)이 교잡되어 만들어진 과정	43
<그림3- 2> 도사잡종견이 사육되고 있는 모습	45
<그림3- 3> 모란시장에서 확인된 그레이트 피레니던	46
<그림3- 4> 개농장에서 확인된 보더콜리	46
<그림3- 5> 개장수에서 팔려가는 진돗개	47
<그림3- 6> 보신탕	49
<그림3- 7>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는 개소주	50
<그림3- 8> 개식육으로 만든 전골	50
<그림3- 9> 개식육으로 만든 수육	51
<그림3-10> 개식육으로 만든 두루치기	51
<그림3-11> 개고기 가공식품	51
<그림3-12> 개고기 햄버거, 쿠키, 빵	52
<그림3-13> 개기름 화장품	52
<그림3-14> 중국에서 시판중인 개고기라면	53
<그림3-15>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분비물	57
<그림3-16> 골이형성증을 겪고 있는 자견들	58
<그림3-17> 개농장에서 쓰이는 항생제, 지사제	59
<그림3-18> 잔반에 수많은 파리들이 붙어 있는 모습	68
<그림3-19> 잔반을 끓이고 있는 장면	68
<그림3-20> 불결한 위생상태의 케이지와 잔반	69
<그림3-21> 개고기 및 개소주 위생검사 결과	82
<그림3-22> 도로상에서 확인된 개의 수송 모습	90

<그림3-23> 개 이동용 철장	90
<그림3-24> 개장수 트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91
<그림3-25> 제주도 여객선에서 육지로 이송되고 있는 개트럭	92
<그림3-26> 트럭에서 확인된 세인트 품종 개들	92
<그림3-27>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 된 개	97
<그림3-28> 개의 도살장면	97
<그림3-29> 약물을 이용한 도살시 이용하는 근이완제	98
<그림3-30> 염소 도축장에서 개 도축현장	98
<그림3-31> 성남 모란시장 내 도축장소	98
<그림3-32> 도살장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모습	98
<그림3-33> 경주 안강시장	113
<그림3-34> 안동 중앙시장	114
<그림3-35> 서천 시장	114
<그림3-36> 서천 시장 내 건강원의 냉동고에서 보관중인 개식육	114
<그림3-37> 부산 구포시장(영업장 앞 전시된 개)	114
<그림3-38> 부산 구포시장 영업장 앞 작업대	114
<그림3-39> 부산 구포시장(고양이, 토끼, 야생동물 취급 문구)	115
<그림3-40> 영업장 앞 냉장고에 전시된 개식육	115
<그림3-41> 성남 모란시장 영업장 앞에 전시된 개들	115
<그림3-42> 영업장 앞 냉장고에 전시된 개식육	115
<그림3-43>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소주 판매	116
<그림3-44>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소주 인터넷 상거래(1)	116
<그림3-45>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소주 인터넷 상거래(2)	117
<그림3-46>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고기 인터넷 상거래	118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동물복지의 개념
- 제 2 절 개식용 산업화의 위험요소
- 제 3 절 공장식 축산업과 개식용 산업
- 제 4 절 개식용과 전통문화
- 제 5 절 개고기의 영양적 평가

제 1 절 동물복지 개념

1960년대 중반 영국에서 공장식 축산방식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윤리적 반성이 일어난 후, 1980년대에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작으로 농장 동물의 복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동안 과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동물복지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¹

- **감정** : 동물 복지를 평가하는 데 고통, 기쁨과 같은 동물의 주관적인 경험이 중요
- **건강** : 동물의 생리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 **자유** : 동물 종(種) 본성 및 자신의 모든 행동유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1.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

동물 학대 및 복지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반성과 함께,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 (Farm Animal Welfare Council)에서는 농장동물의 복지 평가를 위해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라는 평가 틀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사육, 이동, 시장, 도살의 전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현재 동물의 복지를 평가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²

(1)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

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 충분한 건강과 활력의 유지를 위한 신선한 물과 음식의 제공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 우리 및 편한 휴식장소를 포함한 적절한 환경의 제공

③ 통증,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예방 및 신속한 진단과 치료

④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같은 종(種)과의 어울림

⑤ 두려움과 불안감으로부터의 자유

-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환경과 취급에 대한 보장

2. 영국 농장동물복지 권고안

영국 농장동물 복지위원회는 이와 함께 훈련, 관리감독을 비롯한 작업자의 관리자 적 정신(stockmanship)이 동물복지의 핵심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영국 농장동물복지 권고안에서는 농장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과 같은 10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였다.⁴

- ① 편한 사육 시설
- ② 언제나 접근 가능한 신선한 물과 동물들의 건강과 활력 유지를 위한 음식
- ③ 움직임의 자유
- ④ 다른 동물들, 특히 같은 종(種)과의 어울림
- ⑤ 대부분의 정상적인 행동 유형을 표현할 기회
- ⑥ 낮 시간 동안의 일조, 그리고 언제나 동물들이 관찰될 수 있도록 조명 구비
- ⑦ 동물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 바닥 설비
- ⑧ 상해, 기생충 감염과 질병의 방지 또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
- ⑨ 불필요한 신체 절단의 금지
- ⑩ 화재 발생, 기본적 기계 설비의 고장에 대비한 응급 장치

3. 국내 동물보호법에 제시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최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를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 추가되었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⁴

1.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참고문헌

1. Duncan, I.J.H. & Fraser, D. Understanding Animal Welfare. In: Eds. Appleby, M.C. & Hughes, B.O., *Animal Welfare*, CBA International, Wallingford: UK,1997,pp.19-31
2. Spedding, C.R.W., Animal Welfare in Europe. In: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ol 204, No.3. February1,1994,p.387.
3. Mercer, D.R., Codes, Regulations and Mandatory Requirements. In: Eds. Wathes, C. M. & Charles, D. R., *Livestock Housing*, CAB International, Wallingford, UK,1994,p.409.
4. 동물보호법

제 2 절 개고기 산업화의 위험요소

1. 음식으로서의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관계법령이 없이 방치된 상태로 음성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에서 매년 여름철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 공개 자료는 중금속, 식중독 균의 다량 검출로 충격을 준 바 있다. 2008년도 이후에도 위생검사는 계속 실시되고 있으나 외부에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위험성이 아주 큰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식용을 합법화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동물종이 새롭게 산업화된다는 것, 그것도 식용으로 본격적으로 사육된 역사가 없기에 의지할만한 아무런 데이터조차 없는 개라는 동물이 산업화의 대열에 곧바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욱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식용 관련 공장식 축산의 위험성

개식용 업계에서는 소, 돼지 축산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개에서도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육, 위생관리, 질병관리, 도축 부분 등에 대해 유사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아직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된 자료도 미약하다. 여기는 수의사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식용으로 사용할 동물은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야 하는데 소, 돼지 등과 비교하여 위생관리, 질병관리, 도축 등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난센스이며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이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농장에서 살아왔던 동물들조차 적응에 실패하고 축산전문가들도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축산방식이 바로 공장식 축산방식이다. 기존의 산업축산 영역에서의 문제점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까지 산업축산 환경에서 발생한 동물, 인간, 환경 영역에서의 공통적인 문제들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개식용 산업화는 반드시 막아야 할 상황인데, 개식용이 산업화될 경우 어떤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역시 아무도 모르고 있다.

산업축산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특징은 그 규모가 대규모라는 점인데, 개를 산업축산의 형태로 사육해 온 사례는 어디에도 없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고할 만한 선진적 대처방안 또한 없으므로, 문제의 발생은 결국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사육규모 200만에 이른다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파장이 클 것이며, 합법화로 인해 사육 및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

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위험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전 예방 원칙이다.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있어 핵심적 원칙인 사전 예방 원칙은 미래에 상당한 위험이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칙은 또한 의사 결정자는 위험으로부터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이다. 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험의 회피가 의사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¹

3. 보신문화와 개식용 산업

우리나라는 보신문화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제도적 소비라기보다는 신념체계에 근거한 소비로 보이며 보신문화에서 개식용의 위치는 큰 상태이다.

건강식품에 대한 규제 법률, 관련 규제 법령이 있으나 개식용에 대한 수요, 문화상대주의, 보신문화의 성격 때문에 위해식품으로서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만 되고 있다. 몸보신을 위해 먹는 개고기가 결국 소비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국가적 이미지

개식용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음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개식용 산업에 대한 비난을 할 때마다 왜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해 간섭을 하느냐 라는 문화상대주의 논리를 펴고 있으며 오히려 애국심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식용으로 개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전통음식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도사건을 개량한 품종을 식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도축하기 전까지 수백 마리를 케이지에 두고 많은 사람의 타액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주고 공장식 사육을 하였는지, 도축할 때 전기를 사용하거나 목을 매달아 도축하였는지, 길에 다니는 개를 잡아와 음식으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였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50-100년 사이 반려동물 개념의 도입과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개식용 금지가 일반화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개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중국, 베트남, 대한민국 등이다. 중국은 워낙 영토가 큰 나라라 이미 성행하고 있는 곳을 제재하기는 쉽지 않으나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개식용 산업을 음성적으로 더욱 산업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상황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인의 57%가 한국인과 개고기를 함께 연상하고 있다고 하며 유학생들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개고기를 먹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개고기를 먹는 나라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개식용의 이유로 국제적 행사에서도 보이콧이 있었으며 수출품목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위협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개식용 업계에서는 개식용이 오히려 국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1/3을 해결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 역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잔반을 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 경구 전염병, 식중독 등의 발병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모든 타액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은 동물을 사람이 섭취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개식용 합법화의 부당성, 카라, 2004

제 3 절 공장식 축산업과 개식용 산업

1. 정의

현대의 축산업은 집약적 축산 또는 공장식이라는 특성으로 요약되며 이는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한군데에 많은 수의 동물을 모아놓고 사육하는 것과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고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동물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Hodges는 공장식 축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집약적 동물 생산이란 동물을 대규모 사육단위에 넣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대량생산방식이 사용되며, 동물과 자연환경의 접촉이 미미하거나 없으며, 도살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도록 설계된 방식에 동물을 수용하고 생산비를 절감한다. 이는 동물을 처분 가능한 자원으로 다룰 고유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농업경영방식이다.¹

2. 공장식 축산업의 도입

200여 년 전 율타리가 쳐진 지역에서 동물들이 길러지면서 교배와 번식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증가했다. 그리고 20세기의 초반부터 시작된 농업의 강조점에 따라 사료전환효율, 사육밀도, 유전적 선택과 교배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며 투자자본의 효율 극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50여 년 전에는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술의 사용을 크게 증대시킨 현대 공장식 축산방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동물복지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2, 3}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70년대 이후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급속히 성장해온 축산업은 초기의 소규모 부업형에서 점차적으로 전, 기업규모형으로 변천해 왔다.⁴

전통적인 농장동물들은 합법화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업화가 추진된 경우이나, 2001년에는 본격적인 산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동물들에 대한 합법화가 주장되었다.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와 같은 동물들의 경우도 사육을 통한 부의 극대화를 위해 합법화가 도모된 경우이다. 2001년 6월 20일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와 같은 동물들의 산업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축산신문 주최, 한국타조협회, 한국오소리협회, 한국뉴트리아협회 주관으로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서는 이들 동물들에 대한 축산 법규상의 가축화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의 포함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축산 영역에서의 합법화는 곧 산업화를 의미한다. 타조의 경우, 사육농가들은 시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사육을 본격화했으며, 수입업체들은 타조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수익성이 높이라며 농가들에 대량 분양했다.⁵

많은 이들이 오늘날 산업문명과 소비문화의 비인간성, 반생명성에 대해 강한 비판

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 속에서 공장식 축산방식에 의한 동물사육은 그 방식의 비인도성, 반생명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문명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식 축산방식은 인간의 문화가 될 수 없다. 인간의 문화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치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공장식 사육방식은 동물과 환경에 대한 반생명성,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성의 황폐화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공장식 축산방식에 대해 내리는 기본적인 진단이다.

3.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점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법령들에 의해 대부분 적용이 되어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 현재 FTA와 관련해서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친환경, 인도적인 사육, 인도적인 도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도입하고 있다. 실효성, 일반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동물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적극 장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1) 광우병 사태의 유발 원인

광우병 사태는 가축사육을 산업화·공장화한 현대축산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쇠고기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양과 소의 사체를 사료로 사용한 것이 큰 이유로 보고 있는데, 반추 초식 동물인 소가 동물성 단백질을 직접 섭취하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새로운 위험요인이 산업화, 세계화, 개방화한 식품 시스템을 타고 각종 경로(쇠고기, 부산물 가공품, 동물성 사료 등)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광우병 사태를 산업화된 축산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우연적인 결과로 보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동물의 사체를 사료로 먹이지만 않았던들 산업화된 축산 환경이라 하더라도 광우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쇠고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의 사체를 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산업화된 축산 환경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전통적 사육방식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것은 산업화된 축산의 필연적 결과일 수 있다.⁶

(2) 동물 본연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음

공장식 축산 환경은 높은 생산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동물의 자연적인 습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아 성장 환경의 부적합성, 신체 훼손, 질병 등에 노출됨으로써 성장촉진제, 과다한 항생제 사용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3) 도살 전까지 극도의 스트레스

농장 동물은 각각의 동물 종에 적합한 생활환경이 철저히 무시된 사육 환경에서 도살에 이를 때까지 극도로 무로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단조로움과 자연 습성을 거스르는 환경에서의 생활은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때로는 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게다가 출생에서부터 사육과 운송, 그리고 도살에 이르는 거의 모든 과정에 걸쳐 가혹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란계의 경우 달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환우(forced moulting)와 부리 자르기를 하며, 돼지는 태어난 지 10일 이내에 이빨과 꼬리가 잘린다. 강제 환우는 닭의 자연적인 생체리듬을 거스르면서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서이며, 그 외의 신체 훼손은 과밀도의 사육장에서 나타나는 이상행동의 하나인 카니발리즘(cannibalism)으로 인한 상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살은 종종 동물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다.⁷

(4) 유대관계 단절

축산 환경, 특히 현대의 축산 환경 내에서는 유대관계의 단절이 빈번히 발생한다. 물론, 어미와 자식의 유대관계 단절은 자연 환경 내에서도 발생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이다. 반면에, 농장동물들은 주로 갑작스럽게 분리되며, 분리되는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지도 못한다. 사람의 경우 이별 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건강과 복지에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간주된다.

(5) 종별 특이성 무시

각각의 종이 다른 것은 물론, 종(種) 내에서도 각각의 개체가 다르다. 이는 곧 각각의 종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야 함은 물론, 각각의 개체를 다루는 방식 또한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동물에 맞추어 동물의 집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동물들이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수천, 수만 마리 단위의 사육장 규모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6)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 높음

공장식 축산방식은 그 사육의 규모가 대규모이기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며 실제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축산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계사육 형태는 계절적인 특성상 겨울철에는 무창계사 형태로 사육을 하게 된다. 연료비 증가 요인과 관리의 용이 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만큼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항상 겨울철이 되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농장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유형은 누전차단기에 의한 헛작동 정지로 인한 질식사, 병아리 육추시 산소부족

으로 인한 질식사, 화재발생에 의한 사고, 계사붕괴로 인한 사고, 열풍기 고장으로 인한 동사, 병아리 수송도중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동사, 차량 전복사고로 인한 폐사, 농장 도착 후 하차인원 부족 등 하차 지연으로 인한 동사, 특히 질병하계군이나 계군이 약한 닭들의 수송 도중 추위로 인한 폐사 등 다양하다.

공장식 축산방식이 시작된 이후로 발생하기 시작한 대규모 질병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채 반복을 거듭하며 고질적인 농장동물 질병 목록에 오른 지 오래이다. 전통적인 축산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대해 많은 이들은 그 원인이 바로 공장식 축산방식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7) 항생제 내성 및 슈퍼박테리아 출현

공장식 축산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백신과 항생제와 같은 수의약품의 광범위한 투여이다. 그것이 없이는 실내에서 그러한 대규모의 동물 군을 사육할 수가 없다. 동물농장에서 항생제 과용의 결과, 항생제 저항 박테리아의 출현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된다. 이 항생제 저항 박테리아는 동물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 가능성도 있어 농장 근로자를 비롯하여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 연간 보고서에서 농장동물의 집단 사육장이 지독한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를 변형시키는 산실임을 확인하고, 돼지가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기 전에 조류 관련 바이러스나 인체 바이러스를 서로 혼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⁹

(8) 가축의 생매장

대규모 사육환경에서는 전염병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동물들이 때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어느 축산방식보다도 크다. 게다가 한국은 전염병 대처 상황에서 극단적인 생매장을 선택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육자 및 일반인들에게 심리적인 쇼크를 안겨주었다. 생매장은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생매장 후 직장을 옮기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생매장하는 장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 이미지 또한 크게 실추되었다.

(9) 토양오염

제2차 세계대전과 녹색혁명을 거치면서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은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미 10대 기업에 의해 전 세계 농화학시장의 85%가 장악되었으며, 이제 이들은 종자회사와 연계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점점 증가하는 살충제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조작 곡물의 생산을 목격할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콩은 동물 사료로 쓰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⁸

(10) 대기오염

농장동물의 메탄, 화학비료의 이산화질소, 가축 폐기물과 몇몇 화학비료의 암모니아, 에너지/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탄산가스 등으로 인해 대기가 오염된다. 이러한 가스들은 대기 온난화, 대기의 오존 상실, 토양과 수질의 산성화,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⁸

(11) 수질오염

농장 밖으로 나오는 살충제, 니트로겐과 인 같은 성분들, 오물, 농장 폐기물과 미생물이 땅과 지표수를 오염시키며 수질의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독성 폐기물로 인해 수중 생명체가 죽게 된다.¹⁰

참고문헌

1. Hodges, J., Why Livestock, Ethics and Quality of Life? In: Eds. Hodges, J. & Han, I.K., Livestock, Ethics and Quality of Life, CABInternational, Wallingford : UK, 2000, p.3
2. Stricklin, W.R., The Evolution and Domestication of Social Behaviour. In: Eds. Keeling, L.J. and Gonyou, H.W., Social Behaviour in Farm Animals, CABInternational, Wallingford : UK, 2001, p.88.
3. Gregory, N.G. & Grandin, T., Animal Welfare and Meat Science, CABInternational, Wallingford : UK, 1998 ,p.13.
4. 김재환 외, 가축사육의 지역분류와 공간이동에 관한 연구, 축산시설환경: 7(1) p.45, 2001.
5. 도경표 외, 타조사육현황 및 산업화 방안, 오소리사육현황 및 산업화 방안, 뉴트리아사육 및 산업화 방안, 특수가축 산업화 방안 토론회, 특수축산 2001년 7·8월호, p.19-47.
6. 한국도시연구소 환경연구부 한국공간환경학회 환경분과, 위험사회와 광우병 사태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성찰적 근대화의 과제, 환경과 생명 2001년 봄호, pp.116-117.
7. 개고기산업실태조사보고서, 동물자유연대, 2008
8. D'Silva, J., Factory Farm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 Compassion World Farming Trust briefing, January 2000, p.6-11
9. 시사저널 2004년 1월 8일, 집단사육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p.77.
10. 개식용 합법화의 부당성, 카라, 2004

제 4 절 개식용과 전통문화

현재 식용 목적의 개와 반려동물로서의 개는 다르다는 논리로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심지어 법적구분까지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개식용 문화를 전통문화로 인식시키고 있으며 문화사대주의 논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 서구문화가 배척한다는 논리이며 애국심을 자극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개를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고 서구사회 역시 개가 식용으로 쓰였으며 서서히 농장동물의 산업화와 함께 개의 식용 문화는 없어지게 되었다. 법적으로 개식용을 금지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정도이다.

식용견이라 불리는 개들은 고기 근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개체들이며 식용견과 반려동물의 법적 구분은 우리 전통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전통문화 안에서 개는 하나의 개로서 존재했던 것이지 식용견이나 반려동물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동양적 생명관,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 생명관에서는 동물의 가치가 동물의 용도적 가치를 의미하지 않았다.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가 주어지고, 필요에 의해 특정한 용도로 쓰이는 동물들이 있었지만, 용도는 용도일 뿐 그 용도가 동물에 대한 정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¹

음식으로 쓰이지 않았던 경우는 물론, 결국 음식으로 쓰였던 경우라 할지라도, 과거 우리 민족의 삶 안에서 개란 같은 음식을 나누는 한 마당 식구, 바로 집개였기에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인간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인간 사회 안에서 다양한 의미를 형성해 왔다. 식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육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삶 안에서 개의 특수성이며, 이러한 개와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개와 관련한 우리 민족의 문화를 형성한다.

우리 민족의 생활사 속에서 개와 인간의 관계와 유사한 형태를 띠었던 것이 바로 소와 인간의 관계였다. 우리 조상들은 소를 조력동물로 이용했으나 그런 속에서도 그들과 교감을 이루었으며, 한 식구로 대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소와 관련된 조상들의 전통문화를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소는 오로지 식용으로 사육될 뿐이다. 이와 같은 소의 사육이 소와 관련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오늘날 소의 사육은 전통 문화적 요소를 아무것도 담고 있지 못하다. 더 이상 쌍방의 관계는 없고 일방적 용도만이 존재하는 그것은 전통과는 단절된 하나의 새로운 현상일 뿐이다.

이미 오늘날의 식용목적의 개사육에서도 과거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감과 배려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식용이 합법화될 경우 우리의 전통은 결정적으로 재생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합법화를 통해 산업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축산 하에서는 동물과 관련하여 오

로지 식용이라는 단일목적만이 존재할 뿐,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던 인간과 동물 간의 다양한 관계 내지 의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전통문화의 몰락은 이미 산업화된 축산영역은 물론 새롭게 산업축산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신종 축산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¹

참고문헌

1. Goulet, D., Ethics, Culture and Development: Livestock, Poverty and Quality of Rural Life. In: Eds. Hodges, J. & Han, I.K., Livestock ,Ethics and Quality of Life, CABInternational, Wallingford : UK, 2000, p.138

제 5 절 개고기의 영양적 평가

개고기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 분석은 영양성분과 관련된 분석이 있으며 질병 및 효능 등과 관련된 정보는 밝혀진 바 없다. 다만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에 기재된 내용이 홍보되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대의 의학 및 한의학에서는 개고기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영양적으로 다른 육류에 비해 나은 바가 없으며 위생적인 부분과 질병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인과 개고기 홈페이지를 인용한 내용이며 개고기의 효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개고기의 약효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서는 개고기의 약효를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개고기의 성질은 따뜻하며 짠맛과 신맛을 내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한다.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일으켜 음경이 서게 하고 기력을 증진시킨다. 오로칠상(五勞七傷)등 몸이 상했을 때 몸을 보하며, 혈액을 잘 통하게 한다.

누렁이 개고기가 가장 좋고 검둥이가 중간, 흰 개가 그 다음이다. 누렁이 개는 여자에게 좋고 검둥이 개는 남자에게 좋다. 개고기는 열을 내므로 열병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다. 마늘도 열을 내므로 같이 먹으면 열이 지나치게 되므로 같이 먹지 않는다. 개를 구워 먹으면 소갈증(당뇨병)이 생긴다.

2. 개고기의 영양가

개고기는 훌륭한 고단백질 식품이다. 그리고 개고기를 삶으면 풀어지며, 풀어지는 고기는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여름에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인데 반해 개고기는 탈나는 일이 없으며, 기름도 돼지고기나 쇠고기보다 수십 배 소화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질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매우 적어서 동맥경화증과 고혈압을 예방한다.

<표1-1> 개고기 및 보신탕의 영양가 (100g당, 날고기 기준)

성분	단위	개고기	보신탕
에너지	cal	262	116.7
수분	%	60.1	
단백질	g	19.0	8.4

지방질	g	20.2	7.9
당질	g	0.1	3.4
섬유질	g	0	0.7
회분		0.8g	1.4mg
칼슘	mg	9	39.5
인	mg	168	91.9
철	mg	2.8	2.7
나트륨	mg	72	247.9
칼륨	mg	270	289.5
비타민A(R.E)	µg	12	131.8
레티놀	µg		4.6
베타카로틴	µg		762.5
B1	mg	0.12	0.08
B2	mg	0.18	0.11
니아신	mg	1.9	1.2
C	mg	3	11.8
콜레스테롤	mg	44.4	17.02

<표1-2> 육류의 콜레스테롤 함량(고기100g당 mg)

육류	함량
소의 골	2,247.5
달걀노른자	1,280.7
돼지 허파	438.6
꿀뚜기	120.1
광어	93.7
참치	82.4
오리고기	77.6
닭고기	72.6
돼지고기(살)	65.2
한우 등심	64.2
꿩치	63.7
돼지고기 삼겹살	55.3
분유	46.7
개고기	44.4

3. 복날 개고기 먹는 이유

개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져서 열을 나게 하므로 복날의 삼복더위를 땀을 내며 이열치열로 다스리기 위해서이다.¹

위의 내용과 다르게 여러 전문가들은 영양적인 효능에 대해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2004년 뉴스메이커 기사에 의하면 영양학적으로 개고기를 쇠고기 등 다른 육류와 비교했을 경우, 개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비교할 때 단백질 지방 열량 무기질 등의 함량이 가장 떨어진다고 하였다.

개고기의 에너지는 닭튀김(280kcal)이나 돼지갈비(337kcal)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백질 함유량은 개고기가 19.0g인 데 비해 한우 등심은 21.0g, 안심은 20.7g, 닭(구운 살코기)은 27.3g, 닭튀김(프라이드치킨)은 23.9g, 돼지갈비는 23.4g로 나타났으며, 지방질은 개고기가 20.2g인 데 비해 한우 등심은 14.1g, 안심은 8.0g, 양념불고기는 11.5g, 오골계는 6.1g에 불과했다.

• 개고기,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은 고기이다. ²

<표1-3> 식품 중 콜레스테롤 함량(100g 중)

식품	콜레스테롤 함량
계란	470
대구 알젓	295
물오징어	300
마른 오징어	625
보신탕1인분	653
선지국1인분	667
순대국1인분	404
추어탕1인분	304
닭곰탕1인분	274
소간	240
소곱창	221
자어	200

• 2005년 부산일보 기사에서 류병호 식품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보신탕이 정력식품이라고 하지만 정력에 좋다는 성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비교해 보면 단백질, 지질, 무기질 등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으며 특별한 성분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논문에 따르면 보신탕 중 단백질을 구성하는 중요 아미노산으로 글루탐산, 프롤린, 아스파르트산, 리신, 류신이 전체 아미노산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필수 아미노산으로 리신, 류신, 메티오닌과 트레오닌 등이 들어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고기에 비하여 소화가 잘 된다고 하지만 사람의 인공위액을 이용한 실험에서 각종 육류 소화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간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어 시력에 좋다고 즐겨먹고 있으나, 간은 모든 유기물을 해독 처리하므로 유독물질과 오염된 사료, 음식물 쓰레기에서 들어오는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신탕은 스테미나 식이라는 암시효과이고, 대사에 의하여 생기는 영양분이 일시적으로 열이 나서 정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라고 하였다. ³

• 2011년 한국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여름에 보양식으로 보신탕 등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개고기의 보신탕효능에 대해선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그동안 의사들은 단백질 등 개고기의 영양가가 다른 고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한의사 하태요 원장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개고기가 양기를 북돋아 주기는 커녕 좋지 못한 화(火)의 에너지가 신진대사를 방해해 원기를 떨어뜨린다”고 단언한다. 그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른 동물성 음식과 마찬가지로 개고기를 먹게 되면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므로 심장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나 비만이 있는 사람에겐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한다.

또 일부 영양물질은 과다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기운과 영양이 골고루 함유돼 있지 않아 보신탕을 먹으면 몸의 균형이 오히려 깨진다고 덧붙였다. ⁴

영양학적 분석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고기 영양학적 분석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이며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과 관련되어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커 개고기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참고문헌

1. 한국인과 개고기, 안용근 (<http://wolf.ok.ac.kr/~annyg/k4.htm>)
2. 뉴스메이커, 2004. 3. 5 '건강식'에 대한 편견을 버려
3. 부산일보, 2005. 5. 4 보신탕, 특별한 성분 찾기 힘들어(경성대 류병호 교수)
4. 한국일보, 2011. 7. 11 보신탕은 보양식이 아니다...왜?

제 2 장

해외의 개식용 관련 사례 및 우리나라 개식용 대한 반응

제 1 절 해외 개고기 식용 및 금지 사례

제 2 절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개식용에 대한 반응

제 1 절 해외 개고기 식용 및 금지 사례

▲ 요약

-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식용의 역사가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나라에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개식용의 관습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음
-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이 유일하게 개고기 금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중국은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임
- 우리나라의 개식용 및 그에 대한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이며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중국 등의 개식용 문제로 국제적인 행사 보이콧, 수입품목 보이콧 등 외교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으며 한국인에 대해 개식용을 하는 야만인이란 편견이 많이 알려져 이로 인해 외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음
- 대만이 가장 근래(2001년)에 개식용 금지가 실시되었으며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시민단체에서 대만 정부를 고발하는 상황도 있었음. 2007년도에는 벌칙조항도 첨가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식용에 대한 대응을 실시함
- 개고기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는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이후로 정부에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반려동물 인식이 확산되고 동물보호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2010년도 개식용 금지 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정부에서 개고기 금지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며 오히려 2005년도 개식용 합법화를 위한 “식용견 위생관리 정책연구”의 이름으로 합법화 움직임이 있었음. 2008년도 서울특별시 조례로 개식용 합법화를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2008년도부터 여름철 개식용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매년 실시가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법인 상태임

1. 해외 개식용의 역사

인간의 개식용은 고대 중국, 고대 멕시코, 고대 로마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록되어 있다. 현대의 기록에 의하면, 개고기는 중국, 베트남, 한국과 같은 일부 나라에서 섭취되어진다.^{1, 2, 3}

덧붙여, 개고기는 전쟁이나 어려운 시기에 생존을 위한 음식으로 사용되어 졌는데, 멕시코-미국 전쟁이 치열한 시기에 시에라네바다 산에 고립된 개척시대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애완용이던 개를 먹었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4, 5, 6}

남극과 북극의 개들은 시베리아, 북부 캐나다, 그린란드 등지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응급용 식용자원으로 이용되어 왔다. 썰매개들은 주로 썰매를 끌었지만 때때로 다른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식용으로 이용되곤 하였다.

영국 탐험가 Ernest Shackleton과 영국의 남극횡단탐험대는 고립되었을 때 결국 그들의 썰매개를 먹었다. 노르웨이 탐험가 Roald Amundsen 역시 남극 탐험시 사람과 개의 먹이로 썰매개를 먹으면서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2. 아시아권 국가 사례

(1) 중국

개고기는 BC 500년이나 그 이전부터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음식 재료로 이용되어 졌다. 철학자 맹자는 약학적 효능으로 개고기를 추천하였다. 주왕조의 고대 문학작품에서는 돼지, 염소, 개로 구성된 식용으로 길러지는 ‘3종의 야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개고기는 간혹 약학적으로 만다린어로는 ‘향기로운 고기’나 ‘지구의 양고기’로 광둥 어로는 ‘3+6 향기로운 고기’(3더하기6은 숫자 ‘9’로 광둥어로 ‘개’와 발음이 같다)라고 불린다.^{7, 8}

중국에서 개고기 섭취는 몇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져 있다.⁹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열을 만들어 내어 체온을 높이는 것으로 믿어져서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높다.^{10, 11, 12, 13} 광둥과 광시에서 인기가 높아 중국의 우주비행사를 위한 음식이기도 하다. 음식이 부족할 때 개고기는 응급용 식용재료로 섭취되어 왔다.^{14, 15}

중국에서는 개고기 섭취 자체가 아니라, 개를 도살시 산 채로 피부를 벗기는 등의 잔인함 때문에 일부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며 고양이와 개고기의 섭취에 반대하는 의견이 중국본토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반려동물 보호네트워크인 Chinese Companion Animal Protection Network (CCAPN)의 형성 후 2년 동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40개 이상의 회원단체를 가지고 CCAPN은 2006년 1월 광저우에서 시작하여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매우 최상의 대중의 반응’을 가지고 개와 고양이 식용에 반대하는 대중화된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¹⁶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전에 베이징의 정부 관료들은 베이징에서 개고기를 제공하

는 것에 질겁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반감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 112개의 올림픽 지정 식당에서 개고기 메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2007년 1월부터 개와 고양이 식용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10개 이상의 중국단체가 가입하였으며 앞으로는 개, 고양이 식용을 피하겠다는 참여자들의 온라인 서명운동은 4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중국전역을 순회하였다.¹⁷

중국에서 개고기 섭취를 반대하는 법안이 2010년에 제안되었으며 2010년 1월 26일 전국의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최대 15일 동안 구금하는 등의 내용을 가진 법안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18, 19}

그러나 개고기 홍보를 위한 축제는 계속되어 2011년 5월29일 유린, 상시 음식축제에서는 10일 동안의 축제기간동안 15,000마리의 개가 소비되어졌다.^{20, 21}



<그림2-1> 중국 시장에서 판매중인 개(1)
(출처: www.houseofhappyfamily.blogspot.com)



<그림2-2>중국 시장에서 판매중인 개(2)
(출처: www.ibnlive.in.com)

(2) 대만

대만에서는 개고기는 완곡한 언어로 ‘향기 나는 고기’로 알려져 있다. 개고기 섭취는 이전에는 더욱 흔했으며 2007년에도 섬의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섭취되어졌다. 개고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올리는 등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믿어졌

다.²²

2001년, 대만정부는 약간의 반대는 있었지만 국내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적인 인식 향상을 위해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였다. 대만 의회는 2001년 1월 2일 고기 또는 가죽을 얻을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통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는 이 법안은 위반자들에게 최고 10만 대만달러(미화 3천3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²³

2007년에는 개고기 판매자들에게 많은 벌금을 물리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동물권 리옹호자들은 식당에서 개고기를 도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대만 정부를 고소하였다.²⁴

• 대만의 개식용 금지법 마련 과정

- 2004년 이전-개(반려동물)의 도살금지

- 2004년 이후-개고기 판매(유통)금지

동물보호단체의 노력

정부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의 일환

- 2008년 이후-개고기 판매(유통)금지

여전히 개고기가 유통되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존재. 구조된 유기동물의 1/3이 식용으로 쓰인다고 추정 - 법이 미약함이 원인. 하지만 법은 계속 발전하는 추세이며 개식용은 상당히 감소하여 드문 현상이 됨.

• 대만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²⁵

제 3 조 정의

제 1 항 동물의 정의

개, 고양이와 척추동물

제 5 항 반려동물의 정의

개, 고양이, 그 외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

제 12 조 동물의 보호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 고기, 털 또는 다른 동물을 위한 먹이와 같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2. 과학적 응용을 위한 경우
3. 동물무리의 질병관리나 번식 프로그램에서의 토태를 위한 경우
4. 권한을 지닌 공인에 의해 인정되어 경제 동물의 과도한 수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5.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경우
6. 인간 삶, 신체, 건강, 자유, 자산 또는 공공 안전의 즉각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7. 동물보호소나 특별지방자치, 국가, 도시의 공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관리중인 동물이 7일 이상동안 대외적인 공고이후에도 귀가, 입양,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8. 중앙정부급의 권한을 가진 공인기관에 의해 공표된 이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은 다른 경우

중앙 정부 급의 권한을 가진 공인기관은 앞서 언급한 12조 (동물의 보호)의 세부 항목에 언급되어진 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의 금지를 공고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12조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행할 수 없다 :

- 개나 고양이를 죽여서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
- 중앙정부급의 권한을 가진 공인기관에 의해 죽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동물의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

12조의 세부항목 7에 따라서 요구되거나 입양이 허락된 동물은 8조에서 언급된 대로 양육되거나 반출되는 것이 금지된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 조 - 반려동물의 도살을 실질적으로 금지한 조항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중앙정부의 공고에 의한 경우.

중앙정부는 본 조항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 도살의 금지를 공고할 수 있다.

- 관련 벌칙조항

제 25 조 ~ 제 35 조 - 벌칙조항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타이완 NT\$100,000(한화 3백9십만 원)에서 NT\$500,000 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자의 이름, 가명 또는 사진은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다.

제 31 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NT\$2,000 ~ NT\$10,000).

해당행위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위반의 빈도에 따라 연속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홍콩

홍콩에서는 개, 고양이를 법령이 정부에 의해 1950년 1월 6일 도입되었다.²⁶ 인간에 의해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나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고 어길시 벌금이나 구금을 집행하였다.²⁷ 2006년 12월에는 2마리의 개를 도살한 죄로 4명의 남성들이 30일 구금되었다.²⁸ 그 이전에는 1998년 2월, 식용을 위해 유기견을 사냥한 홍콩인에게 한 달의 구금과 홍콩달러 2천 달러를 벌금형 하였다.²⁹

• 홍콩 동물보호법(개식용 금지 관련 법령)³⁰

개와 고양이를 관리, 통제, 조절하고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방지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위함이다

1. 어느 누구도 인간 또는 기타를 위해서 식용을 위해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
2. 어느 누구도 식용으로 개나 고양이 고기의 판매나 이용을 팔아서도 이용해서도 허락해서도 안 된다
3. 개나 고양이의 사체나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된 어느 누구의 경우든지 식용을 위해 그러한 개와 고양이가 도살되었거나 팔리거나 사용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이러한 법률 위반의 경우 1과 2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치안판사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1과 2에 해당되는 법률 위반을 하여 유죄로 간주한다.

(4) 일본

일본은 개식용이 금기시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개를 먹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 서구사회 유입과 반려동물 인식이후 개식용은 더욱 금기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675년 소, 말, 원숭이, 닭과 함께 개고기가 섭취되었으며 황제 Temmu는 일 년 중 4-9번째 달 동안 개고기의 섭취를 금지시켰다.³¹

(5) 필리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는 마닐라 위원회 법령 82-05가 특별히 식용을 위해 개를 죽이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³²

더욱 일반적으로, 필리핀 동물보호법령 1998은 종교, 문화, 조사, 인수공통질병이나 동물건강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소, 돼지, 염소, 양, 구금류, 토끼, 물소, 말, 사슴, 악어외의 어떤 동물도 죽이는 것이 금지되었다.³³

• 필리핀 개식용 관련 현황

(필리핀 개식용 근절을 위한 비영리 시민단체 인용)³⁴

- 1998년 이후 동물복지법에 개식용이 불법으로 규정
- 법집행과 실효성 부족으로 연간 5십만 마리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
- 시장이나 식당에서 개고기와 살아있는 개가 공개적으로 거래됨.

-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으나, Baguio City근교에서는 성행하고 있음
- 개가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되어 철장에 여러 마리들과 함께 넣어져 움직일 수 없고, 입은 묶여져 숨조차 겨우 쉬는 뜨거운 곳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하고 있음.
-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목을 잘라서 죽임.

• 필리핀 동물보호법(개식용 금지 관련)³⁵

The Animal Welfare Act 1998

제 1 조

판매 또는 애완동물과 같은 모든 동물의 번식, 관리, 사육, 처리, 훈련을 위해 이용되는 모든 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필리핀내의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이 이 법령의 목적이다. 이 법령의 목적을 위해 애완동물에는 새도 포함된다.

제 6 조 불법행위

- 동물을 직접적으로 학대하거나 이를 야기하는 행위
- 적절한 보호, 사료의 급여, 쉴 곳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태만에 의한 방치와 이를 야기하는 행위
- 관리 소홀에 의한 학대행위와 이를 야기하는 행위
- 투견, 투마
-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명백히 승인되지 않는 내용의 연구와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
- 소, 돼지, 염소, 양, 가금류, 토끼, 필리핀 산 물소, 말, 사슴, 악어 이외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
- 예외조항과 법적으로 도축이 허용된 동물(10종)은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살하여야 한다.
- 인도적인 방법이라 함은 동물복지위원회의 결정과 승인에 의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 동물을 도살 할 때에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인도적인 방법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 8 조 벌칙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페소(한화 27,000원)이상 5천 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선고의 형량을 이행한 후 차후 통보 없이 즉시 추방된다.

• 필리핀 수도 마닐라 동물 보호 조례(개식용 금지 관련)³⁶

(MMC ORDINANCE NO. 82-02)

- 국민들은 마닐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보호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개는 인간, 가정의 충실한 반려동물이므로 마닐라 시의회는 전국적으로 개고기 거래가 증가하는 것에 대처하여 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 마닐라는 각 지역에서 배, 자동차, 기차를 이용해 개고기를 들여오는 개고기 반입 지점이므로 마닐라 모든 지역에서 통일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개 보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

- 개를 죽이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를 이동하거나 개고기를 저장,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외 : 반려 등의 좋은 목적으로 개를 이동하는 행위)
- 개를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982년 7월 8일 제정)

(6) 베트남

중국, 한국과 더불어 개고기 금지가 되고 있지 않는 나라이다. 주로 베트남 북부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개고기를 판매하는 특별한 음식점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개고기는 행운을 불러 온다고 믿어 닭이나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것과 필적하고 있다. 어떤 도시든지, 항상 개고기 음식점이 밀집한 구역이 있다. 예를 들어, 하노이의 Nhat Tan Street, Tây Hồ District 구역에는 많은 개고기 음식점이 있으며, 개고기가 남성의 정력을 향상시킨다고 믿어져 주로 남성인 손님 일행들이 돛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개고기 요리를 나누면서 밤 시간을 보낸다. 점성술과 행운을 이유로 음력달의 말기 쯤 종교적 의식의 하나로 개고기를 먹는다.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은 음력달의 하반기에만 문을 열고 있다.³⁷

2009년 10월 연합뉴스는 물가상승이 하노이의 개고기 음식점을 흥하게 하여 개도독을 증가시켰다고 보도했다.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20킬로의 개가 100달러이상에 팔리는데 이는 베트남 평균노동자의 월급과 맞먹는다.³⁸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도살이나 다른 이유에서든 개를 훔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 혹독하게 벌하여 진다. 만약, 개도독이 잡히면, 화난 사람들에게 호되게 맞는데 심지어 죽을 때까지 맞고 도독의 오토바이나 소지품은 완전히 파괴된다.³⁹

2008년 개고기가 비브리오 콜레라 세균의 주된 전염원이 되어 북부베트남에 여름 콜레라 전염병을 유발하기도 하였다.⁴⁰



<그림2-3>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

우리나라에서도 안동 중앙시장, 경주 안강시장 등 이런 비슷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음 (출처: <http://www.vietnam720.com/travel-tips/vietnam-dog-meat/>)

(7) 태국

태국 정부는 2000년 7월 16일 동물애호단체들의 항의에 따른 대응책으로 개와 고양이 고기의 소비와 상업 목적의 도살을 금지하였다.

돈 프라맛위나이 외무부 대변인은 유관 정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와 고양이를 가정 애완동물로 법적으로 승인하고 비인간적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고 16일 영자지 네이션이 보도하였다.

다음은 관련 보도내용이다:

돈 대변인은 태국에서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잔학행위가 보편적 현상은 아니지만 일부 서방 국가들이 태국의 가축제품을 금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개와 고양이에 대한 이 같은 잔학행위 금지조치는 애완동물들에 대한 어떠한 잔인한 행위도 반대하는 대다수 태국인들의 정서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농업부와 공중보건부, 내무부, 교육부 및 법무부는 경찰국과 합동으로 개, 고양이 보호법안의 적용범위를 논의해왔으며 교육부와 내무부, 공보청 및 관광청은 이들 동물 바로 다루기에 관한 계몽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개와 고양이 고기는 북동부 일부 지방에서 먹고 팔고 있으며 그 가죽은 의류와 자동차 시트 커버, 핸드백, 드럼, 골프 장갑 등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다.

스위스의 동물복지협회는 최근 태국의 개고기 도살에 항의하는 서한을 통해 태국에서는 매주 500마리 이상의 개가 식품과 가축 거래 목적으로 도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1, 42}

3. 서구사회 사례

(1) 프랑스

프랑스에서 개고기섭취가 흔하지는 않고 현재는 금기로 여겨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개고기를 섭취하였다. 고대 프랑스의 고고학 지역에서는 도축된 개의 뼈가 발견되

어 개고기 섭취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동시대나 그 이전에 비슷한 증거들이 유럽에 걸쳐 발견되었다.⁴³ 19세기말 프랑스에서는 개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아름답고 반짝이는’ 것으로 묘사되어 보도되어 지기도 하였다.⁴⁴ 1870년 파리가 고립되었을 때 정육업자의 가게에는 개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1910년까지도 파리에서 개고기는 판매되었다고 보고되어진다.^{45, 46}

(2) 독일

독일에서는 프레데릭제왕 시대 이후로 국가의 고비 때마다 개고기는 섭취되어 왔으며, ‘사각형 양고기 덩어리’로 불렸다. 20세기 초, 개고기의 섭취는 독일에서 흔했다. 다른 고기가 비싸서 사람들은 말고기나 개고기를 먹게 되었다. 개고기 섭취는 1920년대까지 계속되었다.^{47, 48, 49}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작센지방에서 기아로 인해 개고기는 저소득층에게 섭취되었으며 이후 증가하여 개고기가격이 상승하였다.⁵⁰

1937년, 선모충을 예방하려는 고기위생법이 돼지, 개, 여우, 오소리 고기 등에 도입되었다. 1986년 이후로 개고기는 독일에서 금지되었다.^{51, 52}

(3) 네덜란드

현재는 금기시 되고 있으며 개고기로 만들어진 소시지는 1940년대까지 네덜란드에서 섭취되어졌다.⁵³

(4) 벨기에

현재는 금기시 되고 있으며 20세기 초, 벨기에에서는 정육가게에서 개고기를 팔았다. 1916년 평균가격은 킬로당 12프랑(1.3파운드)이었다.⁵⁴

(5) 미국

현재는 금기시 되고 있다. 1884년 이후로 소시지의 동의어로 ‘개’가 사용되었으며 소시지 제조업자들이 개고기를 이용한다는 혐의는 최소 18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⁵⁵

개고기 섭취가 흔했던 독일이민자들은 미국으로 ‘프랑크소시지’를 가져왔는데 이는 개고기로 만들어졌다고 믿어져서 hotdog라고 불렸다. 소시지가 개고기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이 결국 옳다는 것을 보여줬다.^{56, 57}

19세기말 개고기를 다량 섭취하는 것으로 결핵(흔히 ‘consumption 폐결핵’이라 불리는)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세기 초 개고기는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소비되어져 뉴저지의 정육업자 가게에서 판매되었다.^{58, 59, 60, 61}

(6) 멕시코

아즈텍 시대에 털 없는 멕시코 개들은 다른 이유와 함께 개고기를 위해 길러졌다. Hernán Cortés 는 1519년 그가 Tenochtitlan 에 도착했을 때 ‘먹기 위해 길러진 작은 거세한 개’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Xoloitzcuintles인 이 개들은 콜럼버스 이전의 멕시코 도자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견종은 1940년에 거의 멸종되었으나 멕시코시의 영국군인, Norman Wright,이 외떨어진 시골에서 발견한 일부 개들을 번식시켰다.

멕시코 문화에서는 개고기 섭취는 금기이다. 그러나 2008년 5월, Veracruz-Bocadel Rio 의 Rubén Cuellar 라는 남자가 타코식당에서 개를 도살하여 개고기인줄 모르는 손님들에게 개고기를 판매하였다고 고발당했다. 그는 조사받는 동안 구금되었다. ⁶²

참고문헌

1. Schwabe, Calvin W. (1979). Unmentionable cuisin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p. 168
2. Rupert Wingfield-Hayes (29 June 2002). "China's taste for the exotic". BBC News.
3. "Vietnam's dog meat tradition". BBC News. 31 December 2001.
4. Douglas Mawson. "The Home of the Blizzard".
5. Donner Party Ate Family Dog, Maybe Not People : Discovery News William Saletan (January 16, 2002).
6. "Work The Dog, What's wrong with eating man's best friend?". slate.com
7. Asme; Shiqiu Liang, Dazun Chen (2005)
8. Ya she xiao pin xuan ji. Chinese University Press. p. 144
9. Rupert Wingfield-Hayes (29 June 2002). "China's taste for the exotic". BBC News
10. Simoons, Frederick J. (1991). Food in China: a cultural and historical inquiry. CRC Press. pp. 24, 38, 149, 305, 309-315, 317, 332.
11. Jeffries, Stuart (2004-12-29). "Fang shui".
12.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2006-09-04.
13. "Dog meat row hits HK chain". BBC News. 4 August 2002.
14. Li Xianzhi, 2010-01-27, Eating cats, dogs could be outlawed, Xinhua News Agency
15. Bosker, Bianca (2010-05-13). "Chinese Astronauts Ate Dog Meat In Space". Huffington Post.
16. Guangzhou bans eating snakes—ban helps cats". Retrieved 2008-02-16.
17. "Say no to cat dog meat". Retrieved 2008-02-16
18. Trung Quốc sắp sửa cấm ăn thịt chó, mèo (Vietnamese)

19. "China to jail people for up to 15 days who eat dog". China Daily. 2010-01-26.
20. "陝西榆林10天美食節 1萬5千隻狗慘遭下肚 | 大陸新聞 | NOWnews 今日新聞網". Nownews.com. Retrieved 2011-06-30
21. "Tasteless? Food festival in Yulin, China celebrates canine culinary culture – with 15,000 dogs on the menu | Mail Online". London: Dailymail.co.uk. 2011-06-28
22. Dog meat, a delicacy in Mizoram". The Hindu (Chennai, India). 20 December 2004
23. "Tribal Naga Dog meat delicacy". Retrieved 29 January 2012
24. Dog meat, a delicacy in Mizoram". The Hindu (Chennai, India). 20 December 2004.
25. 대만 동물보호법
26. "Dogs and cats ordinance". Department of Justice (Hong Kong). 1950-01-06
27. Slaughter of dog or cat for food prohibited". Department of Justice (Hong Kong). 1997-06-30
28. Cheng, Jonathan (2006-12-23). "Dog-for-food butchers jailed (DUBIOUS first case)". The Standard – China's Business Newspaper.
29. First Case Imprisonment in HK for Dog Meal". 2006-05-29
30. 홍콩 동물보호법
31. Simoons, Frederick J. (1994). Eat not this flesh: food avoidances from prehistory to the present (2 ed.). Univ of Wisconsin Press. p. 229
32. Murray, Senan (2007-03-06). "Dog's dinners prove popular in Nigeria". BBC News
33. Willy Volk (March 7, 2007). "'Man Bites Dog': Dining on Dog Meat in Nigeria". gadling.com
34. DogMeatTrade.com
35. 필리핀 동물보호법
36. 마닐라 동물보호 조례
37. Schwabe 1979, p. 173
38. excerpts from both articles translated in: "And you thought they just ate fondue", Marmot's Hole, January 14, 2004.
39. FDHA Ordinance of 23 November 2005 on food of animal origin, Art.2. "Vietnam's dog meat tradition". BBC News. 2001-12-31
40. Dognappers spark deadly violence across Vietnam". Newsday. October 3, 2011."Hanoi dog meat restaurants come under scrutiny after cholera

- outbreak". Vietnamnet. Retrieved 2012-01-10
41. "Taiwan bans dog meat". BBC News. 2 January 2001.
 42. "Activists expose dog meat trade". Taipei Times. 2011-06-23
 43. Mallher, X.; B. Denis (1989). *Le Chien, animal de boucherie*. pp. 81-84.
 44. Romi (1993). *Histoire des festins insolites et de la goinfrerie*, Artulen, Paris.
 45. Romi (1993). *Histoire des festins insolites et de la goinfrerie*.
 46. Boitani, Luige; Monique Bourdin (1997). *L'ABCdaire du chien*.
 47. Germany's dog meat market; Consumption of Canines and Horses Is on the Increase. The New York Times. June 23, 1907.
 48. Bureau Of Manufactures, United States; Bureau Of Foreign Commerce (1854-1903), United States; Bureau Of Statistics, United States. Dept. of Commerce and Labor (1900)
 49. "Use Horse and Dog Meat - Germans forced to that diet by high price of other meat", The New York Times, 1900
 50. "GERMANS STILL EAT DOGS.; Berlin Police Chief Issues Rules for Inspection of the Meat.", The New York Times, 1925
 51. Monthly consular and trade reports, Volume 64, Issues 240-243
 52. United States. Bureau of Manufactures, Bureau of Foreign Commerce, Dept. of Commerce. "...the German breeders... heightened the price to such an extent that horse, and even dog's meat, has become staple with the poorer classes in certain districts, and notably in the large cities.", in "American Food In Germany", The New York Times, 1898,
 53. Fleischbeschaugesetz (Meat Inspection Law), § 1a, RGBl. (Reich Law Gazette) 1937 I p. 458, then becoming § 1 para. 3, RGBl. 1940 I p. 1463 (in German)
 54. WPA Indian Pioneer History Project for Oklahoma Albert Couch (October 12, 1937)
 55. Fleischhygienegesetz (Law on Meat Hygiene), § 1 para. 1 sent. 4, BGBl. (Federal Law Gazette) 1986 I p. 398 (in German).
 56. Romi (1993). *Histoire des festins insolites et de la goinfrerie*, Artulen, Paris.
 57. "FEAR OF FAMINE APPALS AUSTRIA; Charges of Cannibalism by Vienna Workmen Are Officially Hushed Up. PEOPLE JEER AT THE WAR. German Promises of Victory Flouted—Soldiers Beg for Bread and Long for Peace. Quarantine Against Bolshevism. Real Famine in the Country. Saxons Eat Camels and Dogs", New York Times, May 22, 1918

58. "NETHERLANDERS SEEK SUNDAY MEAT IN VAIN; Food Situation Becomes Acute as Nazis Seize Dog Sausage", The New York Times, 1940
59. "Hot Dog", Online Etymology Dictionary,
60. "A new cure for consumption is being tried in Shelbyville, Ind. It is an exclusive diet of dog meat.", in "A Florence Bank in Trouble", Telegraphic Brevities, The New York Times, 1891,
61. "PATRONS OF DOG MEAT", The New York Times, 1885,
62. About THE XOLOITZCUINTLE, Xolo Rescue USA.

제 2 절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개식용에 대한 반응

1. 서론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개식용 때문에 국제적으로 행사 반대 및 한국산 상품 불매 운동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그때마다 외교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개식용 규제를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처벌사례는 없었으며 행사가 끝나면 규제하는 정책은 다시 언제 실시했냐는 듯이 사문화되었다.

2002년 월드컵 전후로 프랑스의 영화배우 브리짓트 바르도의 한국의 개식용에 대한 독설로 인하여 개식용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는 오히려 서구문화에서 개입할 부분이 아닌 전통문화라는 논리로 애국심을 자극한 격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론이 양극화되는 현상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오히려 우리나라 개식용이 더욱 알려져 개고기를 먹는 나라로 국격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 후 서구사회에서도 우리나라 개식용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외교문제로 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나라 개식용의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개식용 반대의 형태는 이전에 서양보호단체 중심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인터넷 청원 사이트, you tube,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개식용 금지 법안 추진 등으로 더욱 우리나라의 개식용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어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개식용에 대한 연구 및 기사 등도 빈도도 높다. 우리나라 개식용 문제는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지금 국격을 떨어뜨리고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2. 2002년 월드컵 당시 개식용 반대 항의 포스터



<그림2-4> 2002년 월드컵 당시 개식용 반대 항의 포스터

(출처: www.admh.org/main.html)

3. 우리나라 개식용에 대한 실태를 다룬 인터넷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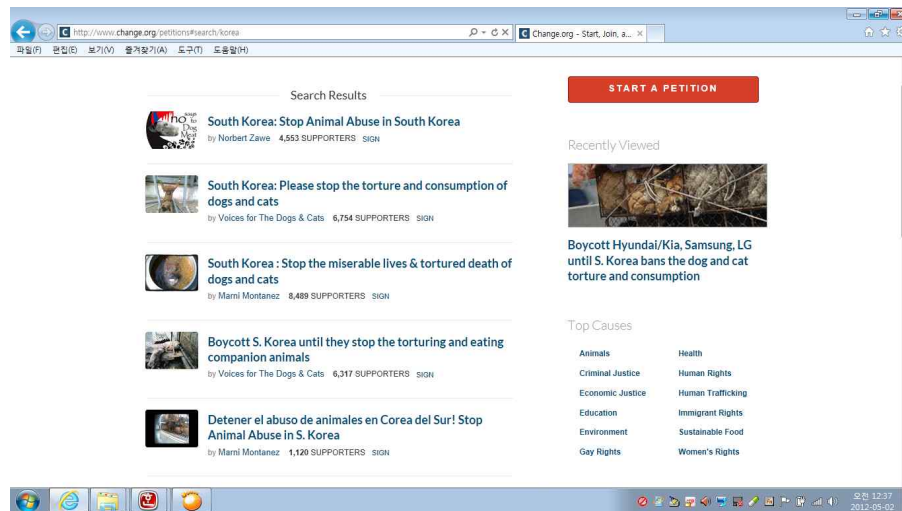
- www.siriusgao.org/Korea.html

미국 경제, 사회계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로서 월드컵 당시, 한국의 개식용 실태에 대한 항의와 캠페인 활동 내용 게시

- 한국내 모든 미디어와 접촉하여 항의
- 미국 정치인에게 로비하여 한국과의 무역시 압력 요구
- 한국 대사관에 항의 계속함
- 다른 국제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진행



<그림2-5> 미국 동물보호단체 IDA의 한국 개식용에 대한 항의 집회
(출처: www.sweetpotatopetphotos.com)



<그림2-6> 우리나라 개식용에 반대 및 한국산 상품불매 운동 청원 사이트
(출처: www.change.org)

- www.change.org/petitions/boycott-hyundaikia-samsung-lg-until-s-korea-bans-the-dog-and-cat-torture-and-consumption

위 사이트는 우리나라 개식용을 반대하며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을 하자는 청원이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 국제 청원 사이트이며 인권, 여성, 환경, 교육 등 청원 운동 등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다. 한국의 개식용 반대에 대해 항상 다수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그림2-7> 개식용 반대 포스터(1)
(출처 www.soshiok.com)



<그림2-8> 개식용 반대 포스터(2)
(출처 www.tiendathoang.worldpress.com)

- www.avaxnews.com/disgusting/South_Korean_Restaurants_Serve_Dog_Meat.html
외국의 포털 사이트로서 “South Korean Restaurants Serve Dog Meat ” 제목으로 우리나라 개식용 문제를 다룸



<그림2-9>국내 업소에서 개고기 손질 모습(1)
(출처 : www.avaxnews.com/disgusting/South_Korean_Restaurants_Serve_Dog_Meat.html)



<그림2-10>국내 업소에서 개고기 손질 모습(2)
(출처 : www.avaxnews.com/disgusting/South_Korean_Restaurants_Serve_Dog_Meat.html)

- www.wspa.org.uk/wspaswork/dogs/dogmeattrade/default.aspx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WSPA에 게재된 한국의 개식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었으며 “Working to end the dog meat trade” 의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그림2-11> WSPA에 게재된 국내 개식용 산업 실태

(출처: www.wspa.org.uk/wspaswork/dogs/dogmeattrade/default.asp)

- www.ibtimes.com/articles/171636/20110629/china-ban-on-eating-dog-korean-dog-farms.htm

미국 International Business Times에서 China proposes ban on dog meat, will South Korea follow suit? 란 제목으로 중국에서 식용견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의 개식용 실태를 언급하였다.

4. 우리나라 개식용과 관련된 연구논문

-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5, No. 3, 2009, pp. 615-632

“Good to Pet and Eat: The Keeping and Consuming of Dogs and Cats in South Korea”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리나라 개식용 문제에 대해 다루었으며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의 확대와 개, 고양이를 먹는 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Volume 32, Issue 1, 2011

“Animal Rights vs. Cultural Rights: Exploring the Dog Meat Debate in South Korea from a World Polity Perspective”

저자 Jeffrey Jackson 는 한국에서의 동물권과 문화권에 대한 논쟁을 보편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기술하였다.

• Journal of Social Issues , [Volume 65, Issue 3](#), pages 633–644, September 2009

“Having Our Dogs and Eating Them Too: Why Animals Are a Social Issue”

저자 James A. Serpell은 개를 키우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인간의 행동, 태도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1. www.admh.org/main.html
2. www.siriusgao.org/Korea.html
3. [www. change.org/petitions/boycott-hyundaikia-samsung-lg-until-s-korea-bans-the-dog-and-cat-torture-and-consumption](http://www.change.org/petitions/boycott-hyundaikia-samsung-lg-until-s-korea-bans-the-dog-and-cat-torture-and-consumption)
4. www.sweetpotatopetphotos.com
5. www.soshiok.com
6. www.tiendathoang.worldpress.com
7. www.avaxnews.com/disgusting/South_Korean_Restaurants_Serve_Dog_Meat.html
8. www.wspa.org.uk/wspaswork/dogs/dogmeattrade/default.aspx
9. www.ibtimes.com/articles/171636/20110629/china-ban-on-eating-dog-korean-dog-farms.htm
10.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5, No. 3, 2009, pp. 615–632
Good to Pet and Eat: The Keeping and Consuming of Dogs and Cats in South Korea
11.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Volume 32, Issue 1](#), 2011
Animal Rights vs. Cultural Rights: Exploring the Dog Meat Debate in South Korea from a World Polity Perspective
12. Journal of Social Issues , [Volume 65, Issue 3](#), pages 633–644, September 2009 Having Our Dogs and Eating Them Too: Why Animals Are a Social Issue

제 3 장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 실태조사

- 제 1 절 개식용 산업에 이용되는 품종
- 제 2 절 개식용 관련 음식 현황
- 제 3 절 사육단계(1)-개농장의 질병관리
- 제 4 절 사육단계(2)-잔반급여와 그 위험성
- 제 5 절 수송과정
- 제 6 절 도축 및 도축과정
- 제 7 절 유통과정
- 제 8 절 개식용 관련 국민 의식 조사

제 1 절 개식용 산업에 이용되는 품종

1. <표3-1>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의 사육현황

	'09. 12월말 (A)		'10. 12월말 (B)		전년말대비(B/A)	
	사육호수	사육마리수	사육호수	사육마리수	사육호수	사육마리수
개	호 621,626	마리 1,811,547	호 601,728	마리 1,703,887	% 102.8	% 97.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2011)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2011)에 의하면 가축으로 분류된 개의 조사 결과 개량종 430,123두, 진돗개 66,838두, 잡종 1206,926두로 601,728호에서 총 1,703,887두가 사육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¹

사육마리수로 구분했을 경우 식용목적, 번식목적으로 추정되는 10두 이상 사육하는 두수는 12,430호에서 798,584두이다. 이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이 식용 목적의 사육인지 불분명하며 조사방법 역시 불명확하여 조사품종 만으로 보았을 때 식용목적 사육이 주된 것임을 추정하는 정도이다.

2. 개식용 산업에 이용되는 개 품종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는 품종으로 일반적으로 잡종견(누렁이, 황구), 도사잡종견이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식용 목적의 사육품종은 아니나 식용 목적으로 둔갑되는 개체들은 한때 반려동물로 추정되는 개체들도 확인이 되고 있으며 진돗개도 확인이 되고 있다.

(1) 개식용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육 품종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품종은 일본산 투견인 도사종과 토종 누렁이 개를 교잡시킨 품종이 90%를 차지하고, 토종 누렁이개가 10%를 차지한다. 무게 당 맛과 가격은 토종 누렁이개가 좋지만 수익은 대형견인 도사 교잡종이 높다. 예로, 토종 누렁이개는 마리당30근(18 kg) × 6,000원 = 180,000원이지만 도사교잡종은 60근(36 kg) × 5,000원 = 300,000원이기 때문이다.

도사교잡종은 다 크면 60 kg 정도가 되지만 먹이 효율의 피크인 36 kg 정도가 되는 12개월 정도에 출하한다. 식당이나 학교, 부대, 회사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수집하는데 시간과 품이 걸리고 자동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는 500마리 정도 키우는 것이 한계다. 사료는 비싸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음식물 찌꺼기, 도계장 및 도축장 폐기물, 생선가공공장 폐기물 등뼈가 있는 것은 분쇄기로 분쇄한다. 뼈가 목이나 창자에 걸리면 죽기 때문이다. 먹이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준다. 기름기 끼는 것을 방지하려고 먹이를 이틀에 한번 주기도 한다. 질병 방지를 위하여 끓여 주는 곳도 많다.²

이상은 안용근 교수의 글에서 인용한 개식용 업계에서 언급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 외에 사육되는 품종별 두수 등에 대해 전체적인 파악은 되어 있지 않다.

(2) 개식용 산업에서 일반적인 사육되고 있는 품종

- 잡종견(mongrel dog)

잡견이라고도 하며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개를 일컫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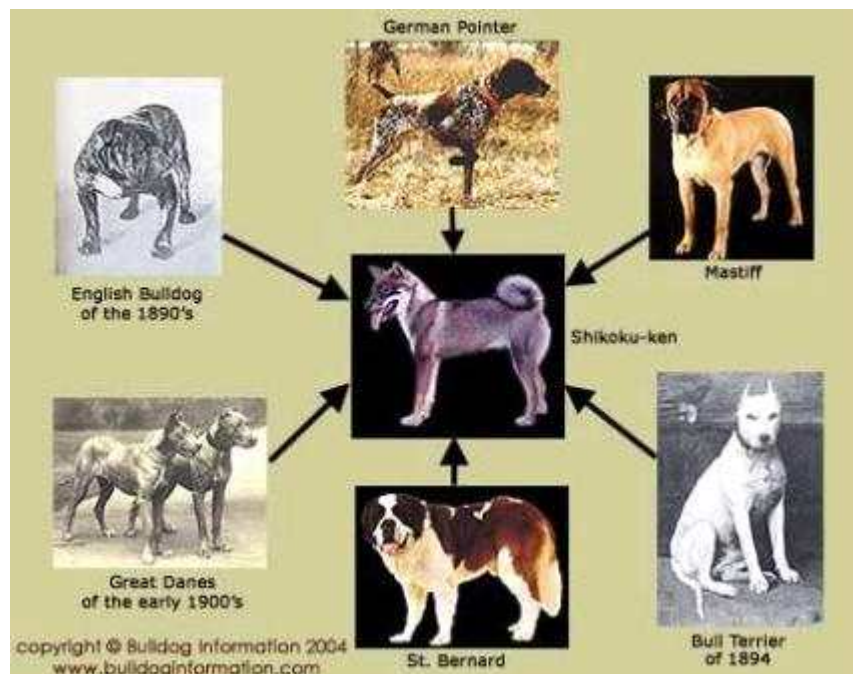
- 황구(yellow dog)

누렁이라고도 하며 털빛이 누런 개를 말한다.

진돗개에서 털이 노란 개를 황구라고도 한다.

- 도사잡종견

도사견은 일본 시코쿠 섬에서는 고대부터 투견이 성행하였는데 일본의 재래종 도사견 (현재의 시코쿠견)에 그레이트 덴, 세인트 버나드, 마스티프, 불독 등의 덩치가 크고 강력한 개들만 교배를 시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도사견이다.



<그림3-1> 도사견(시코쿠견)이 교잡되어 만들어진 과정 (출처: 위키백과)

사람들에게는 도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식용목적으로 고기 근수로 가격을 매기는 육견 시장에서의 관행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도사견과 황구, 마스티프, 그레이트 덴 등과 교잡하여 만들어진 품종이다.³

언론에서는 도사 잡종견에 의한 피해를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 굶주린 도사견 20마리 집단 탈출, 시민들 불안에 벌벌⁴(티브이데일리, 2011. 02.16 기사)

- 도사견에 물려 40대 여성 숨져⁵(YTN, 2008. 2. 22 기사)

- 결혼 이민 온 여성, 탈출한 도사견에 물려 사망⁶(SBS, 2008. 2. 4 기사)

- 70대 할머니 도사견에 물려 중태⁷(뉴시스, 2007. 12. 30 기사)

- 7살 어린이 개에 물려 숨져⁸(YTN, 2008. 12. 7 기사)

- 도사견에 물려 죽은 소년의 억울한 죽음... '식용' 도사견은 야수나 다름없어⁹ (경향일보, 2005. 11. 25 기사)

이는 좁은 우리에서 대량으로 길러지는, 식용목적으로 길러지는 이른바 '육견'이라 불리는 개들이 주인의 부주의로 풀려나서 사람을 공격한 것이었다. 인명사고를 야기하고 심각한 상황이 되는 이유는 경비견은 애초에 낯선 사람이나 아래 서열이라 판단되는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개들인데 사람에게 순종적인 일반적인 성향도 가진 반면 거기에 도사 투견의 투쟁심이 합쳐졌기에 성품 상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잡종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이 공격성을 띄게 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들은 태어나서 도축되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좁은 철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위생적인 환경과 환경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여 강박행동, 공격성을 띠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형견의 특성상 넓은 공간에 뛰어다니는 습성이 있어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것은 그 위험도를 더욱 높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림3-2> 도사잡종견이 사육되고 있는 모습 (출처: www.tosatop.com)

(3) 유기동물을 식용목적으로 사용

성남 모란시장에 가보면 품종 있는 개체들이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유입경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유실동물이거나 유기된 동물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유기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관련 기사이다.

- 반려견이 개고기로 넘겨진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7년 한 지방의 전직 유기견 보호소장이 공무원들의 요구로 유기견을 식용으로 제공해왔다고 고백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¹⁰ (연합뉴스 2007. 7. 19 “[학대 온상 되고 있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 한 방송프로그램은 재래시장, 경매장 등에서 소위 애견들이 식용으로 팔려가는 현장을 포착하기도 했다.¹¹(KBS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2007. 7. 11 "당신은 애완견을 먹고 있습니다." 편)

• 2004년에는 호주에서 경주견 사업으로 인해 남아도는 개들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 일도 있었고 이들 중 한국으로 수출된 개들의 대부분이 보신탕으로 쓰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¹²(오마이뉴스 2009. 8. 12 기사 " 못생긴 진돗개는 보신탕집으로 보내라?")



<그림3-3> 모란시장에서 확인된 그레이트 피레니언

<그림3-4> 개농장에서 확인된 보더콜리

(4) 진돗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용

농림수산통계연보에서도 진돗개도 통계에 들어가 있으며 진돗개로 추정되는 개들이 농장에도 다수 확인이 되고 있다. 2008년도부터 지식경제부에서는 진돗개 명견화 사업으로 국비 60억을 들여 연구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진돗개 품종의 정형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진돗개 번식업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식용 문화가 성행하고 있고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체계가 잘되어 있지 않으며 반려동물 문화 수준이 낮다. 이런 현실에서 진돗개 품종에 대한 산업화 사업은 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사육농가에서는 분양되지 않은 개체 중 다수가 식용 목적으로 팔리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다.

다음은 진도에서 진돗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 기사이다.

심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개는 도태하거나 방출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나 실제로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해서 바로 도태 명령서를 주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심사에 다시 나와 보라는 식으로 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었고 또한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해서 바로 일괄 개들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심사는 군에서 하지만 개의 소유자는 모두 주민들로, 처리는 전적으로 주민들 몫이었다.

그렇다면 소위 불량견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자신의 개가 불량견이라고 해도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함께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진도군의 상징이며 나중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와 군의 선전에 키우기 시작한 개가 귀찮아지고 병에 걸리거나 등록되지 못한 불량한 개라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할까? 주민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다. "내다 판다"는 것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못생기고 상업성이 없는 개들을 누가 사가는 것일까. 심사과정에서 만난 주민들은 간혹 마을을 지나는 업자가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업자가 식용목적의 개를 키우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¹²



<그림3-5> 개장수에서 팔려가는 진돗개 (출처: 동물자유연대)

참고문헌

1.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2011)
2. 개고기 식용이 위생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미치는 영향 , 안용근, Korean J. Food & Nutr. Vol. 23. No. 1, 124~ 133 (2010)
3. <http://ko.wikipedia.org/wiki/%EB%8F%84%EC%82%AC%EA%B2%AC> 위키백과
4. 티브이데일리, 2011. 2.16 “굶주린 도사견 20마리 집단 탈출, 시민들 불안에 벌벌”
5. YTN, 2008. 2. 22 “도사견에 물려 40대 여성 숨져”
6. SBS, 2008. 2. 4 “결혼 이민 온 여성, 탈출한 도사견에 물려 사망”
7. 뉴시스, 2007. 12. 30 “70대 할머니 도사견에 물려 중태”
8. YTN, 2008. 12. 7 “7살 어린이 개에 물려 숨져”
9. 경향일보, 2005. 11. 25 “ 도사견에 물려 죽은 소년의 억울한 죽음… ‘식용’ 도사견은 야수나 다름없어
10. 연합뉴스 2007. 7. 19 “**학대 온상 되고 있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11. KBS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2007. 7. 11 "당신은 애완견을 먹고 있습니다."
12. 오마이뉴스 2009. 8. 12 " 못생긴 진돗개는 보신탕집으로 보내라?"

제 2 절 개식용 관련 음식 현황

1. 서론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보신탕과 개소주이며 취급하는 업소는 보신탕을 메뉴로 하는 음식점, 개소주를 취급하는 건강원이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개고기라면 판매, 개고기 스파게티 등이 인터넷에 회자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있었다.

2005년도 식용견 위생관리 정책연구에 의하면 보신탕집은 한국음식업조합에 회원이지만 분과가 없어서 통계가 없으며 전화번호부상에는 보신탕집 숫자가 4,000여 업소. 그러나 보신탕집으로 등록하지 않고 보신탕을 파는 집, 여름에만 보신탕 파는 집 등을 합치면 약 1만 곳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지도검색을 통해 검색한 결과 4019개 업소가 검색되었다. 국내 식용견의 2/3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건강원 숫자는 9천여 곳. 건강원은 손님이 주문하면 개와 약재를 고아서 추출하여 팩으로 하여 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추출가공식품협회라는 단체로 정식 등록되어 중앙회와 시도지부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는 전체 식용견의 1/3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¹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지도검색을 통해 검색한 결과 개소주 메뉴가 기재된 곳은 223개 이었으며 건강원으로는 10,791개 업소가 검색되었다. 보신탕 취급 음식점, 개소주 취급점만 따로 정리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담당 지자체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아래는 우리나라에서 개식용과 관련하여 소비되고 있는 음식이며 개고기 박사로 알려진 안용근 교수의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 개식용 산업화와 합법화가 진행된다면 개소주, 보신탕 뿐 아니라 아래 언급한 식품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다.

2. 개식용 관련 음식

(1) 보신탕

보신탕은 개장국(狗醬, 개장)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개장국보다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88올림픽 이후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보신탕은 된장을 풀어 개를 삶아 고기를 건져 찢고, 국물에 파, 부추, 토란 줄거리, 고사리 중 한두 가지를 가해 무르도록 삶은 다음 국물에 고기를 넣어 양념을 하고 밥을 말아 먹는다. 된장을 넣어 삶으면 개냄새가 나지 않는다. 경상도 지방과 중국교포들은 끓일 때 옛 방식대로 차조기(紫蘇, 蘇葉)를 넣어 개냄새를 없앤다. 양념으로는 들깨 가루, 고춧가루, 후춧가루 등이 사용된다. 마늘은 원하면 넣고 원하지 않으면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옛 방식대로 마늘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많다.



<그림3-7>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는 개소주

(출처: http://rg55.co.kr/shop/item.php?it_id=1314578971)

(3) 전골

개장 국물을 적게 하고 고기와 양념을 많이 하여 끓여 가면서 먹는다. 채소로는 미나리, 깻잎, 파 등이 들어가며 양념으로는 마늘, 후추, 고춧가루 등이 들어간다. 소주 안주로 먹을 수도 있고 밥과 함께 먹을 수도 있다. 먹고 나서 밥비벼 달라고 하면 남은 국물에 채소와 반찬 넣어 밥을 비벼 준다. 1인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3-8> 개식육으로 만든 전골 (출처: <http://wolf.ok.ac.kr/~annyg/k5.htm>)

(4) 수육

수육은 고기가 식지 않도록 끓는 물이나 증기로 따뜻하게 덥혀가며 양념이나 소금에 찍어 먹는다. 양념은 초고추장에 들깨를 섞어 만들며, 고기를 소금이나 양념에 찍어 그냥 먹든지 상추나 깻잎에 싸 먹는다. 채소로는 부추를 살짝 데쳐서 함께 먹는다. 수육에는 주로 소주를 마신다. 1인분을 기준으로 한다.

(5) 두루치기(무침)

개고기와 양념, 채소를 한데 섞어서 무치거나, 두루쳐서 볶은 것이다. 소주와 함께 먹는다. 1인분을 기준으로 한다.

안용근 교수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외 여러 가지 관련 음식들이 열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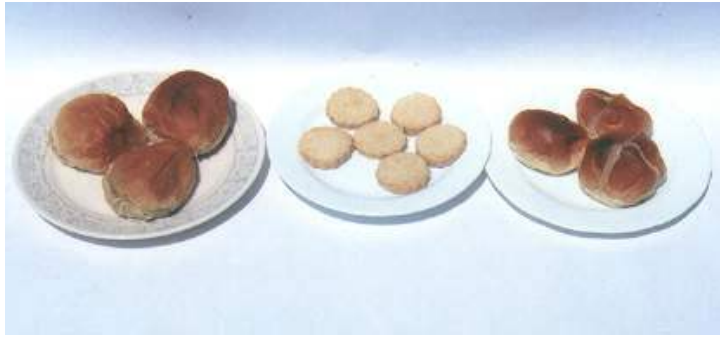
<그림3-9> 개식육으로 만든 수육 (출처: <http://wolf.ok.ac.kr/~annyg/k5.htm>)



<그림3-10> 개식육으로 만든 두루치기 (출처: <http://wolf.ok.ac.kr/~annyg/k5.htm>)



<그림3-11> 개고기 가공식품 (출처: <http://wolf.ok.ac.kr/~annyg/k5.htm>)



<그림3-12> 개고기 햄버거, 쿠키, 빵 (출처: <http://wolf.ok.ac.kr/~annyg/k5.htm>)



<그림3-13> 개기름 화장품 (출처: <http://wolf.ok.ac.kr/~annyg/k5.htm>)

3. 관련기사

- ‘개고기 스파게티’ 팔던 레스토랑, 네티즌 질타에...(경향신문. 2012. 6. 22)

인천의 한 레스토랑이 개고기로 만든 파스타를 판매하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자 판매를 중지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레스토랑은 지난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고기를 주재료로 한 파스타와 피자, 수육 등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소식은 SNS를 통해 전해지자 동물보호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해당 구청에는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판매를 개시한 지 이틀 후인 14일 해당 레스토랑 측은 홈페이지에 판매 중단 방침을 밝히고 사과문을 올렸다.⁵

- 中 '개고기 라면' 논란, 10년 전 부터 '인기'(세계일보. 2012. 5. 6)

중국에서 ‘개고기 라면’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홍콩 핑귀르바오와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연벤에서 생산되는 개고기 라면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사이에서 대중적인 식재료로 알려진 개고기가 라면으로 생산된 것은 10년째

지만 **최근** 홍콩언론의 보도로 화제가 됐다. 라면 **포장지**에는 **한글**로 ‘개고기 라면’이라고 쓰여 있으며 개당 2위엔(약 360원)에 팔리고 있다.

개고기 라면은 연벤은 물론 베이징, 하얼빈을 비롯한 남부 광둥성까지 팔려나가며 북한에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전했다.

연벤 **조선족** 자치구에 위치한 개고기라면 **생산 공장** 선례식품 **직원**에 따르면 “개고기라면 3000개에 개고기 30kg이 들어간다”고 밝혀 하루 3만 개를 생산하면 약 20마리의 개가 **재료**로 사용된다.

개고기 라면이 생산 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중국에서 2010년 발표한 반동물학대법 초안 때문이다. 법안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이며 현재의 안건으로 정식 **발효**될 경우 개나 고양이를 식육하면 5000위안(약 90만원)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를 받을 수 있으며 도살을 비롯한 사안이 위중하면 최고 50만 위안(약 9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⁶



<그림3-14> 중국에서 시판중인 개고기 라면 (출처: 세계일보. 2012. 5. 6)

참고문헌

1. 식용견 위생관리 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 2005
2. <http://wolf.ok.ac.kr/~annyg/k5.htm> 한국인과 개고기
3. 金亨愛·, 李盛雨. 개고기 食用史와 개소주의 營養成分, 韓國生物科學論文集, 漢陽大學校, 1982
4. 李盛雨. 한국요리문화사. 敎文社, 1985
5. 경향신문, 2012, 6, 19 ‘개고기 스파게티’ 팔던 레스토랑, 네티즌 질타에…
6. 세계일보, 2012, 5, 6 中 ‘개고기라면’ 논란, 10년 전 부터 ‘인기’

제 3 절 사육단계(1)- 개농장의 질병관리와 항생제 오남용

▲ 요약

- 집단관리의 문제점은 소, 돼지 등의 경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집단관리를 하면 분변 등 유기물의 축적, 환경스트레스, 병원균의 항시 존재 등으로 백신, 항생제, 소독 등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중 축산물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의 축산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 비슷한 예로 동물보호소에서 일정기간 보호기간이 지나면 보호개체중 대다수가 호흡기질환에 감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등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도 질병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허술한 상태임
- 이 역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 적절한 시설, 백신, 소독, 항생제가 필요하다. 현재 농장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량의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음
- 개의 집단관리에서 질병관리는 동물보호소에서도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건행정 당국에서도 기존 축산업과 관련된 연구만 되어 있고 반려동물 분야와 관련된 연구의 진행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기반 하에 위생 검사 강화, 합법화를 통한 규제 등으로 현재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약물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국내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고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축산물의 고농도의 항생제 배합 사료, 자가 치료 등이 큰 원인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항생제의 사용은 공장식 축산업에서 현재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동물복지형 사육 방식으로의 전환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 역시 공장식 축산업화가 되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1. 동물보호소 질병 관리 실태

국내 개농장과 관련되어 질병 관리 실태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집단관리 되고 있는 동물보호소의 경우도 질병 조사 자료는 제한적이다. 기존 조사된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 실태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동물보호소의 경우 지자체,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동물관련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이다. 동물보호소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 체계화가 되고 있지 못하며 기본적인 질병관리조차 실패하여 전염병의 온상지가 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개체가 호흡기질환 등에 노출이 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는 상주수의사에 의해 질병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며 2008년도 입소된 개체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체계화가 되기 전의 상황이며 전국의 다른 동물보호소는 대부분 수의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보호 중에 호흡기질환 및 홍역, 파보바이러스 장염 등 심각한 전염병에 노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 고양이의 동물보호소 등 집단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원인균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제가 큰 상태이며 이에 대한 보고가 다수 있다. 집단관리하고 있는 개농장의 경우 역시 같은 상황이며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등의 관리를 위해 다량의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3-2>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입소견의 입소후 질병 상태

Category	Diseases	Number(%)
Internal medicine	Upper respiratory infection	256(22.4)
	Canine distemper	105(9.2)
	Parvo virus enteritis	23(2.0)
	Total	384(33.6)
Dermatology	Fungal infection	6(0.5)
	Decubitus ulcer	10(0.9)
	Total	16(1.4)
Ophthalmology	Keratoconjunctivitis	3(0.3)
	Keratic ulcer	3(0.3)
	Total	6(0.6)
Total		406(35.5)

• 2008 년 광주 동물보호소 입소견의 입소 후 건강상태¹

- 입소 후 입소 당시 인지되지 않았던 406건(35.5%)의 질병이 새로 발생하였음
-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서 상부호흡기 질환, 폐렴,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 (개 홍역 제외) 비율이 406건 중 63.1%(256두)로 가장 높았음

•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질병관리 실태²

- ① 소규모 보호시설을 제외하고 중규모 이상의 보호시설에서는 질병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음
- ② 질병관리가 보호소 운영의 기본이며 질병관리를 통해 보호소 운영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됨. 질병관리가 잘되는 곳의 경우 입양률을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락사율이 낮아져 사체처리비도 줄일 수 있음. 보호소 인식도 좋아져 지역사회에 교육의 역할도 제공할 수 있음
- ③ 중규모 이상 보호시설은 다두사육 구조에 다두 입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음.
- ④ 병사되는 대부분의 개체가 전염성 호흡기질환, 파보장염, 홍역, 범백혈구감소증 등에 감염된 개체로 추정되며 현재 자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⑤ 시설설계, 개체분류, 백신, 위생, 소독, 근무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스트레스 최소화 등 여러 상황이 질병관리에 관련되어 있음
- ⑥ 상근 진료수의사 구조와 지속적인 근무자 교육을 통해 질병관리 수준을 상향하여야 함
- ⑦ 소규모 형태에서는 질병관리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으나 밀집사육 형태의 중규모 이상 보호시설에서는 질병관리 부분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음
미국, 유럽 등에서는 병사율은 질병관리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치료를 받고 병사한 개체, 받지 못하고 병사한 개체 등을 구분하고 있음
- ⑧ 우리나라의 전국 병사율은 20%가 되고 있으나 중규모 이상의 보호시설에서는 30%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며 대규모 보호소인 A보호소의 경우 76%로 전국 최고의 병사율을 보이고 있음
- ⑨ 현재 상황의 위탁 진료형태로는 보호소 질병관리가 힘든 상황이며 소규모 보호시설의 경우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⑩ 상근 진료수의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B보호소의 경우 공고기간 직후 도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병사율이 5% 이하로 유지하고 있음
- ⑪ 상근 진료수의사를 통해 백신, 소독, 개체 분류, 안락사, 개체 치료 등 보호소 질병 관리 전반적인 상황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규모 이상 시설에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진료가 가능한 시설을 한 후 상근 진료수의사를 통해 인건비와 약품비로 질병예방, 치료, 안락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임

2. 개농장 질병관리 실태

(1) 전염병의 온상지

개농장에 대한 질병 조사는 거의 없다. 내부기생충 및 심장사상충 등에 대한 조사

만 일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케이지에서 집단 관리되고 있는 동물보호소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기생충, 내부기생충,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모든 원인균의 전염, 전파가 가능하다. 동물보호소의 집단관리의 예를 보더라도 그 상태는 아주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조사 결과 내부기생충 및 심장사상충 감염률이 높게 나타났다. 회충, 심장사상충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심장사상충 유행 지역이며 실외견에서의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심장에 기생하고 심장에 병변을 주고 그 유충 및 유충에서 분비하는 woobachia라는 혈액원충은 모든 장기에 이주하여 여러 병변을 만들고 있다. 내부 기생충 역시 장내 기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충들은 여러 장기를 이주하여 병변을 만든다.

개농장에서 비용상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기생충 구제도 하지 않은 곳이 많다. 실외 사육되는 특성상 심장사상충의 감염률을 아주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질병 관리 하에 사육되는 개들은 질병을 겪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먹거리로서 부적합한 식육이 유통이 되고 있다.

- 서울지역 개농장에서 165두의 개에서 83(50.3%)두가 내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으며 23두(20.2%)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었음³
- 대전지역 개농장에서 206두의 개에서 18두(8.7%)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었음⁴
- 광주, 전남지역 개농장에서 200두의 개에서 8두(4%)두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었음⁵



<그림3-15>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분비물
분변과 해충이 뒤엉켜 심한 악취를 내고 있다.

분변 같은 유기물로 인해 악취, 병원균의 증식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해충에 의해 병원균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바닥, 케이지에 분변, 털 등의 유기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소독의 의미가 없으며 질병 발생의 악순환은 필수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사육공간은 대부분 축사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소, 돼지 등 농장동물과 같은 기준을 쓰고 있으며 개의 집단사육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행정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

(2) 개체의 건강상태



<그림3-16> 골이형성증을 겪고 있는 자견들.
두 마리 모두 양측 전지가 휘어 있다.

- 젖을 떼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되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 특히 민원과 관련법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한 산속에 농장이 위치하게 되는데 케이지 내에서 운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골성장에 필요한 Vit D 등의 합성이 되기 힘든 상태이다.
- 갈혀있는 공간에 계속 있으면서 지루함과 악취, 좁은 공간에 다른 개들과 합사가 되어 심한 환경 스트레스를 받는 개체들이 생기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하게 되며 부신피질기능항진증과 같은 호르몬성 질환에 이환이 될 수 있다.
- 여러 개체들이 케이지 내에 합사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서열을 정하기 위해 동물간의 싸움이 흔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교상 등 상해를 입는 개체들이 생기게 되며 방치하여 폐사하는 상황도 생긴다.

3. 개농장의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오남용

- 개농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집단사육으로 생기는 흥역, 파보바이러스 장염 등 호흡

기질환, 소화기질환 등에 대한 대책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항생제 내성 유발 등 그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가 아주 큰 상태이다. 최근에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잔류 및 인체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생제 처방제가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1) 관련기사

- **당신은 애완견을 먹고 있습니다.** (KBS, 소비자고발, 2008. 7. 11)

보신용 개고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사육환경은 충격적일 정도로 비위생적이었다. 개장들이 있는 통로의 바닥조차 흘러내린 배설물로 가득차 걷기조차 힘들었다. 먹이통엔 개들의 배설물이 뒤섞여 있었다. 개들은 얼굴 털에까지 자신의 오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묻어있었다.



<그림3-17> 개농장에서 쓰이는 항생제, 지사제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개들이 병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까.

농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은 항생제와 복합 강력지사제, 그리고 피부병약. 관리인은 20kg개에 15-20CC를 3회에 나누어 사용한다고 한다. 동물의 경우 1kg당 0.08~0.1CC가 적량이다. 이에 따르면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양이다. 이런 개의 고기를 충분한 휴약기간을 두지 않고 사람이 먹는다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한국동물병원협회 강종일 명예회장은 말한다. ⁶

- **보신탕은 보양식이 아니다...왜?** (한국일보, 2011.7.4)

종류에 상관없이 식용 동물들을 밀집사육 하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고기를 먹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는 예민한데다 활동성이 강한 동물 이어서 밀집 사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병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좁은 공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한 마리가 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사육장 내 모든 개에게 전염된다. 이 때문에 개 사육 시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고, 개고기를 먹는 건 항생제에 찌든 고기를 먹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과거 개 농장을 운영하는 한 환자로부터 사육하는 개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항생제를 매일 투여한다는 양심고백을 들은 이후 문제의 심각

성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 정도로 항생제가 농축된 고기를 섭취하면 우리 간에 심각한 독성 효과를 유발하며, 중단기적으로 우리 체내에 내분비적 교란을 일으켜 각종 암 질환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⁷

• 개고기, 항생제- 어느 수의사의 양심고백(법무부 게시판)

나는 수의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고 사과드린다. 어느 날 입원 중이던 환견이 죽었다. 개 주인은 나더러 뒤통리를 해달라고 했다. 전화로.. 오지도 않고.. 아마 오로지 귀찮았던 모양이었다.

난감했다. 매장을 하자니 매장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오래 놔두면 삼복이라 금방 썩어날 것이고. 그런데 조수로 일하던 윤군이 묘책을 알려주었다. <보신탕 집>에 전화를 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죽은 개를 저울질했다. 3관이라며 15,000원을 쥐어준다. 죽은 것이라 관(3.75킬로그램)에 5천원이며, 목숨만 붙어 있으면 3.75 킬로그램에 8,000원 준단다. 그때부터 <더러운 거래>가 시작되었다.

"말기 암"에 걸린 개도 "오랫동안 폐렴"으로 앓던 개도 축주가 포기하면 보신탕집으로 직행했고 나는 나대로 입원비와 개고기 값을 챙길 수 있었다. 어떤 날은 5-7마리까지 보신탕집으로 보냈다.

또 "고양이"까지 저들은 요구했다. 개고기와 함께 내면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이런 이를 들러내며 웃는 것이다. 그때 나는 젊었고 그리고 양심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을 갖추며 살만큼 여유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책 없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

정말 더러운 "환견"들이 "식용"으로 둔갑해서 가는 것을 보았다. 조금 썩어도 저들은 반갑게 챙겨가 주었다. 나로서는 죽은 사체를 처리할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했으니 나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파렴치한 일에 동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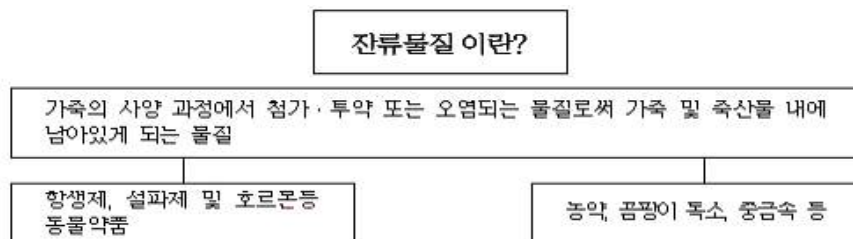
그 썩은 개고기를 나만 보신탕집에 보낸 것은 아니다. 대도시에 개업하고 있던 1970년 중반 시절의 상당수의 수의사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죽거나 병든 개를 처리했다고 나는 본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없어서 묻혔던 것이다.

이런 개고기를 일본말로 <쯔부시>라 했다. 물론 맞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쯔부시감으로 팔린 개들이 결국 보신탕으로 변해서 보신탕 애호가들의 위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환축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항생물질로 치료했던 터라 바로 "독약"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음식을 보양식으로 먹었으니 그들은 암에 걸리고 고혈압, 중풍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⁸

(2) 항생제 내성

<표3-3> 잔류물질 정의 (출처: 항생제 내성의 문제. 이연희. 1998)



박테리아마다 세포벽 등의 구조적 차이와 대사의 차이로 각 항생제에 대해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테리아에 따라 원래부터 특정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의 구조차이에 의해 항생제의 투과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항생제의 항균력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각 박테리아에 대한 기준농도(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농도)를 정하고, 이 농도에서 죽지 않는 박테리아를 내성 박테리아라고 한다. 예를 들어, 폐렴을 일으키는 *Kiebsiella pneumoniae*는 amoxicillin이 10 $\mu\text{g}/\text{ml}$ 이상이면 되면 죽어야하는데 환자의 객담에서 이 농도에서 죽지 않는 균이 발견된다면 바로 내성 박테리아이다.

(3)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원인

- 감염원이 된 세균을 정확하게 파괴시키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 항생제의 사용량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서 내성균이 생기게 됨. 항생제의 사용량은 세균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용되어야 함
- 항생제의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 사용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혈액속의 항생제 농도가 유효치 이하로 떨어져 죽어가던 세균이 다시 새롭게 인체를 공격하게 됨
- 내성균이 생기게 되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성균에 감염된 사람은 처음부터 고칠 약이 없어 고생하게 됨. 성병이나 결핵균의 경우 그러한 내성률이 특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한편 교차내성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음. 교차내성이란 특정 약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을 때 그 약제의 화학적 구조나 작용기전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약제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내성을 나타내는 성질을 말함. 예를 들면 테트라사이클린과 오레오마이신, 애클로마이신, 클로로마이세틴은 서로 교차내성의 가능성을 가진 항생제임⁹

- 농축수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결국 내성균을 출현시키고 그렇게 출현된 내성균은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에게 내성 유전자를 전파하거나 항생제 노출된 농축수산물 섭취를 통하여 인간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부분적인 사용 억제와 함께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¹⁰

(4) 국내 항생제 내성 실태

국내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축산물에서의 항생제 오남용을 원인중 하나로 보고 있다.

임균에 대한 페니실린 G 내성률은 우리나라가 1위로 91%이며, 뉴질랜드(19%) 보다 월등히 높고, 홍콩 및 싱가포르(60%) 보다도 높음. 또한 폐렴구균의 페니실린 G의 중간 내성 또는 내성 균주의 비율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84%로, 필리핀 15%, 뉴질랜드 18%, 싱가포르 38% 보다 배 이상 높다. 국내의 경우 동물용 항생제 판매 및 사용 제어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오남용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항생제 사용량이 높았다.

계열별로는 tetracycline, penicillin 계 사용량이 높았으며 축종별로는 돼지에서 가장 많은 항생제가 사용되었으며 첨가용 항생제로는 penicillin 등 6종의 인수공용 항생제가 허가되어 사용되며 치료용으로는 fluoroquinolone계 및 3세대 cephalosporin 계가 사용되고 있다. 내성균 유발 및 교차내성, 내성인자 전달이 용이한 위해도가 높은 항생제로는 fluoroquinolone계, cephalosporin 계, aminoglycoside계, macrolide계, penicillin계가 확인이 되었다. ¹¹

<표3-4> 주요국가의 육류생산량과 항생제 사용량 비교

표 1. 주요국가의 육류생산량과 항생제 사용량 비교

국가	2002년			2003년		
	육류생산량 (천톤)	항생제 (톤)	육류1톤당 항생제사용량	육류생산량 (천톤)	항생제 (톤)	육류1톤당 항생제사용량
우리나라	1,662	1,355	0.82	1,776	1,273	0.72
미국	38,988	9,983	0.26	38,911	9,158	0.24
노르웨이	270	11.5	0.04	275	11.7	0.04
스웨덴	557	17.3	0.03	551	16	0.03
영국	3,340	430	0.13	-	-	-

(출처: 인수공용 항생제의 위해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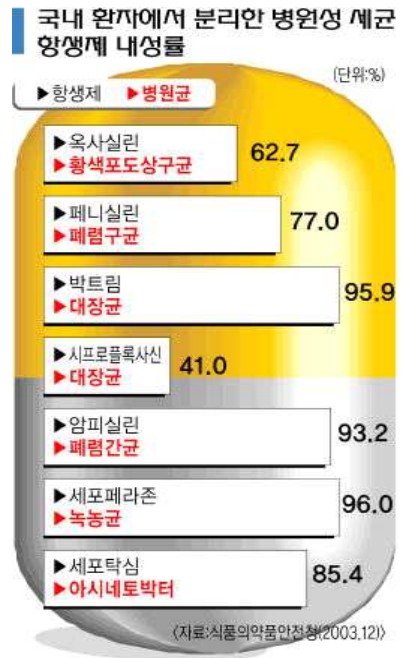
• 항생제 '약발' 안 듣는다.(한겨레신문, 2003. 12. 3)

국가차원 첫 조사, 폐렴구균 환자 페니실린 내성률 77% 세계 최고

우리나라 환자와 건강한 사람에서 분리한 병원성 세균들의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각종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돼지·닭 등의 축산동물에서 분리한 세균과 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에서 분리한 식중독균 그리고 축산농가 주변 흙이나 지하수, 하천 따위에서 분리한 병원성 세균과 일반 세균의 항생제 내성률도 최근 더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세균의 내성률이 높을수록 항생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사실은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항생제 내성률 국가로 평가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보건원, 대학병원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올해 처음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드러나게 되었다.



<표3-5> 국내 환에서 분리한 병원성 세균 항생제 내성률

성균관대 의대 송재훈 교수팀이 지난 7~10월 4개월 동안 전국 7개 의과대학 부속 8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에서 분리한 감염성 세균의 각종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 폐렴구균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77.0%,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의 옥사실린 내성률은 62.7%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균의 내성률이 77%이면,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23%의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대장균의 박트림 내성률은 95.9%로 나타났으며 폐렴간균의 암피실린 내성률도 93.2%, 녹농균의 세포페라존 내성률도 96.0%나 됐다. 송 교수팀은 대학병원들이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 73.1%가 항생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지난 3~10월 서울·부산 등 5개 대도시에서 팔리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와 우렁·넙치·돔·농어 등 수산물, 생선회, 어육제품 따위를 분석한 결과 2~18%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장염을 일으키는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는 클린다마이신과 암피실린에 100% 내성을 보였고, 다른 대부분의 세균들이 테트라사이클린에 80% 이상,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암피실린에 30~60%의 내성률을 보였다. ¹²

• **국내 소에서 항생제 내성 실태**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부산, 경남 지역의 소에서 분리한 E. coli 의 항생제 내성을 조사한 결과 총 600 샘플중 92건 (15.3%)이 E. coli가 검출되었으며 doxycycline(73.9%), tetracycline(70.7%), and cefazoline(63%) 순으로 높은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소에서 항생제 오남용의 실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항생제 사용을 규제하여야 한다. ¹³

• **국내 닭에서 항생제 내성 실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역의 26개 닭농장으로부터 채취한 닭 분변에서 251 E. coli와 214 Enterococcus spp의 항생제 내성을 조사한 결과 E. coli는 tetracycline(88.8%), nalidixic acid(68.1%), ampicillin(59.8%), streptomycin(57%) 순으로 높은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었다. E. faecium, E. faecalis 의 경우 tetracycline(66.4%, 85.9%), bacitracin(61.5%, 64.1%), erythromycin(54.9%, 62%) 등이 높은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닭에서 항생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을 규제하여야 한다. ¹⁴

• **국내 돼지에서 항생제 내성 실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전국 5개 지역의 40개 돼지 농장에서 377개의 분변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E. coli와 Enterococcus spp의 항생제 내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E. coli에서는 대부분의 항생제에서 높은 항생제 내성을 나타냈으며 tetracycline(92.6%), ampicillin(68.3%), streptomycin(68%) 순이었다. E. faecium, E. faecalis 의 경우 tetracycline(57.9%, 98.7%), erythromycin(69.2%, 66%) 순이었다. 이 결과 돼지에서 항생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 ¹⁵

참고문헌

1. 명보영, 광주 동물보호소의 유기견 현황 및 질병 조사, 대한수의학회지 제49권 p.297-307, 2009년
2.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2011
3. 서영우, 수도권 일대 집단 번식농장 사육견에서의 개심장사상충 감염실태, 대한수의학회, 2001
4. 대전지역 사육견의 심장사상충 감염실태 조사, 장승익, 가축위생학회지, 2004
5. 광주와 전남지역 사육견의 심장사상충 감염률조사, 정대영, 가축위생학회지, 1997
6. KBS, 소비자고발, 2008. 7. 11 “당신은 애완견을 먹고 있습니다”
7. 한국일보, 2011.7. 4 “보신탕은 보양식이 아니다...왜?”

8. www.blog.naver.com/lch6867?Redirect=Log&logNo=120102309355
9. 항생제 내성의 문제. 이연희. 1998
10. 항생제 내성과 대응반안 연구, korea institute patent information 특별기고 , 강상수
11. 인수공용 항생제의 위해관리- 주요 축, 수산용 항생제 영향 평가, 식품의약품안정청, 2007
12. 한겨레신문, 2003. 12. 3 “ 항생제 '약발' 안 듣는다”
13. 김홍태 외, 유통되는 쇠고기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 조사, 연구 Kor J Vet Serv (2007) 31(1) : 17-29.
14. 김애란외, 가축 유래 지표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양상 조사- 닭 분변 유래 대장균 및 장구균의 항생제 내성 양상 조사, Kor J Vet Serv (2007) 31(1)
15. 임숙경외, 가축 유래 지표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양상 조사-돼지 분변 유래 대장균 및 장구균의 항생제 내성 양상 조사, Kor J Vet Serv (2007) 31(1)

제 4 절 사육단계(2) - 잔반급여와 그 위험성

▲ 요약

- 개에서 잔반을 먹여 키우는 것이 친환경 사육이라 하며 음식물 쓰레기 해결사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잔반에는 각종 사람의 타액 등 개가 중간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구 전염병 및 인수공통 전염병, 사육동물의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먹이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잔반은 부패하는 속도가 빠르고 쥐, 바퀴벌레, 파리 등 해충의 침투가 용이하여 또 다른 오염 및 질병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내의 개와 관련된 인수공통 전염병 역학 조사는 광견병, 브루셀라병, 심장사상충 등 극히 제한되어 있음
- 개고기에서 체내에 축적되어 생체 기능을 장애하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이 되고 있음. 잔반위주의 사육과 저급사료(음식물 찌꺼기, 도축장 및 도계장의 잔여물이 재료)의 급여를 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개를 식용으로 해서 조사된 연구는 없으며 식용으로 사용되어 질병에 노출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음

1. 서론

대한육견협회에서는 친환경사육이라 하여 잔반을 이용한 사육에 대해 이를 선전하고 있으며 기사, 논문자료를 통해서 개에게 잔반사육을 하여 식용견 사육과 음식물 쓰레기 해결 등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에게도 잔반처리를 하자는 주장도 하였다.

잔반에는 여러 사람의 타액이 음식물찌꺼기, 도계장, 도축장 폐기물, 생선가공공장 등의 폐기물과 섞여 있는 형태이며 그 타액에는 A, B, C 형 간염 바이러스 등 경구전염병의 병원균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동물의 폐기물의 섭취시 역시 알 수 없는 병원균을 섭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잔반을 섭취한 동물에게서 어떤 형태로 병원균이 돌연 변이할 가능성이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다.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 발병에 대한 부분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급여하여 광우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논란이 큰 상태이다.

2002년 중국 광둥지역에서 유래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였던 SARS 원인 병원체(변종 coronavirus)는 원인규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용 목적의 집단 관리된 개, 고양이의 유래로 추정하고 있다.

닭, 오리 등의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등 동물유래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위험 요소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잔반으로 사육하는 개의 식용에 대한 위험성은 대중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다.

개와 관련되어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광견병, 브루셀라병, 심장사상충 등이다. 최근 관련 수의사, 관련업종사자 등에게서 브루셀라 감염증 발병 등이 보고가 된 바 있다. 지금까지 보건 행정 인프라에서는 기존 산업동물 위주의 연구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며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반려동물 및 개와 사람과 관련된 질병 역학 조사 자체가 실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노출이 될 수 있으나 면역이 억압된 사람의 경우 위험도가 크다. 암환자, 장기이식환자, 에이즈 환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사람, 임산부,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 비장절제수술을 받은 사람 등이 더욱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다.

2. 잔반급여와 관련된 자료

• 보신탕용 식용개, 음식물 쓰레기 최고 ‘해결사’(중앙일보 2010. 5. 5)

보신탕에 사용되는 식용개가 최고의 음식물 쓰레기 ‘해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고기 박사’로 유명한 충청대 식품영양학부 안용근 교수는 전국의 124만여 마리의 식용개가 매년 126만여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준다는 연구결과를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안 교수는 논문에서 “소·돼지·닭·오리 등은 사료를 먹이지만 식용개는 거의 100%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키운다”며 “식용개가 처리해주는 양은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552만여t, 환경부 통계, 2008년 기준)의 19.3%에 달한다”고 기술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2008년 한 해 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t당 12만원)으로 6,332억 원을 썼다”며 “식용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1289억 원 가량”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도사교잡종은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평균 2.5kg, 토종개는 1kg 가량 먹

는다는 것을 근거로 식용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계산했다. 안 교수는 “식용개는 그동안 분뇨를 무단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동물로 낙인찍혀 왔다”며 “분뇨 방류로 인한 손해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줘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소·돼지·닭·오리 등은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해마다 엄청난 수가 살 처분·매몰돼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반해 개는 이런 일에 일절 연루되지 않아 ‘에코 프렌들리’(환경 친화적)한 동물이라는 것이 안교수의 개 예찬이다.

그는 또 유기된 개도 안락사 시켜 폐기물로 처리하기 보다는 키워서 식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환경에 더 이롭다고 주장했다. ¹

• 사료는 비싸서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할 수밖에 없다.

식당이나 학교, 부대, 회사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수집하는데 시간과 품이 걸리고 자동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는 500마리 정도 키우는 것이 한계다. 사료는 비싸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음식물 찌꺼기, 도계장 및 도축장 폐기물, 생선가공공장 폐기물 등 뼈가 있는 것은 분쇄기로 분쇄한다. 뼈가 목이나 창자에 걸리면 죽기 때문이다. 먹이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준다. 기름기 끼는 것을 방지하려고 먹이를 이틀에 한번 주기도 한다. 질병 방지를 위하여 끓여 주는 곳도 많다. ²

3. 실태조사



<그림3-18>잔반에 수많은 파리들이 붙어 있는 모습



<그림3-19> 잔반을 끓이고 있는 장면



<그림3-20> 불결한 위생상태의 케이지와 잔반

- 모든 개농장에서는 잔반급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개농장의 필수요소이다. 위 사진과 같이 파리, 바퀴벌레, 쥐 등 해충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충은 병원균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 잔반은 그냥 급여를 하거나 끓여서 급여를 하고 있다. 따로 물을 급여하는 곳은 많이 않으며 잔반만을 급여를 하고 있다. 개들이 이를 먹게 되는 것은 배고픔과 높은 염분 때문이다. 개는 체외로 염분 배출이 용이하지 않아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체외 배설과 관련된 장기에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손상이 이루어지고 간, 신장, 심장 등 장기부전 상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잔반에는 양파, 마늘 등 개에서 산화제로 작용하여 장기손상을 유발할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급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개체도 생길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산화제에 의해 장기손상이 되어 장기부전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 오염된 잔반으로 인해 세균성 장염, 원충성 장염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농장에서는 지사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을 빈번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4. 개식용으로 인한 질병 감염 자료

우리나라뿐 해외에서도 개식용과 관련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1) 개소주 관련 질병 발생 자료

우리나라는 보신문화가 유행하는 나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규모가 큰 나라이다.

개소주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 중에 하나이며 여러 한약재를 혼합하여 만들어 내고 있다. 한의사 및 의사들의 이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우리나라 보신문화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하여 민간건강식품 섭취와 간 손상 결과에 대한 자료이며 개소주의 경우도 사례에 포함되어 있다.

• 한림의대 내과 김동준 교수 건강표방식품·약제에 의한 독성간염실태 분석결과

(국민일보 2010.10.2)

아무리 간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오남용할 경우 간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용약·한약·건강기능식품 등 여러 종류의 약제를 장기간 또는 단기간 복용하거나 주사하거나 섭취할 경우 간 기능 손상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림의대 내과 김동준 교수가 건강표방식품 및 민간 약제에 의한 독성 간염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당뇨·간암 등에 좋다는 백선(봉삼)에서 47례의 간 기능 손상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 표방 식품 중 오남용할 경우 간에 도리어 간에 손상을 주는 식품으로는 ▲하수오(13례) ▲인진쑥(12례) ▲향어·잉어(7례) ▲개소주(4례) ▲상항버섯(4례) ▲느릅나무(3례) ▲가시오가피(3례) ▲호박즙(3례) ▲녹용(2례) ▲지네(2례) ▲헛개나무·벌나무 ▲홍삼(2례) ▲키토산(2례) ▲스쿠알렌(1례) ▲알로에(3례) 등이다.

우리 몸에서 간은 인체의 화학공장과 같은 곳으로 음식물의 대사(metabolism), 해독(detoxification), 약물대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김 교수는 “모든 약물은 효능이 있는 약이면서 또한 부작용이 있는 독”이라며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라 할지라도 과도하면 병(예: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대다수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 어떤 때에는 해(예: 콩알레르기등)가 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런 양면성은 약뿐 아니라 음식, 한약 등 사람이 섭취하는 ‘모든 물질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독성 간 손상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도 발견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시판후조사와 같은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상용약에 대한 부작용 감시체계는 있으나 한약·건강표방식품·민간요법의부작용 감시기능은 미미한 수준이다.³

• 충남대 의과대학에서 급성 간염 및 간 손상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03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년간 급성간염 및 간 손상의 원인별 빈도는 A형 간염이 53예(13.6%), B형간염이 46예(11.8%), C형 4간염이 11예(2.8%), 독성간염이 159예(40.9%), 자가면역간염이 22예(5.7%), 알코올 간염이 98예(25.2%)로 독

성간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독성 감염 환자 중 민간약제에 의한 경우가 54예(34%), 민간 약제는 봉삼이 14예, 인진쑥이 7예, 인삼 6예, 칩 6예, 상황버섯 4예, 개소주 3예, 가시오가피 3예, 녹용 2예 이었으며 감초, 당귀, 마, 황영, 지작, 약하수, 헛개나무, 홍삼이 각각 1예씩이었다.⁴

(2) 해외 개식용과 관련된 인체 감염 자료

• 2001년 중국에서 개식용후 선모충(Trichinella) 발병 사례 확인

중국에서 1974년에서 1999년까지 선모충 발병이 집단적으로 발생(81건) 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유행하였다. 중국의 동북부 9개 지역의 개, 19,662두의 검사 결과 지역별로 7%에서 39.5%의 감염률이 확인되었다. 선모충 유충의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며 유충의 형태로 인체에 감염되거나 돼지 등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한다.⁵

국내에서는 선모충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기생충과 관련된 조사로 내부기생충, 심장사상충 감염률에 대한 보고가 있다. 이로서 개농장에서의 기생충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회충, 선모충, 심장사상충 등의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울지역 개농장에서 165두의 개에서 83(50.3%)두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으며 23두(20.2%)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었음⁶

- 대전지역 개농장에서 206두의 개에서 18두(8.7%)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었음⁷

- 광주, 전남지역 개농장에서 200두의 개에서 8두(4%)두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었음⁸

• 2008년 개고기가 비브리오 콜레라 세균의 주된 전염원이 되어 북부베트남에 여름 콜레라 전염병을 유발하기도 하였음.⁹

• 1912년 12월 14일 호주 남극탐사대는 대부분의 비상식량을 가지고 눈 덮인 빙하 틈으로 추락하여 사라졌다. Mawson 과 Mertz는 당장 되돌아오기 시작했으나 그들 자신만을 위한 일주일반 동안 먹을 식량만 가지고 있었으며 개들을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들의 빈약한 식량은 남은 315마일을 돌아오는 동안 자신들의 썰매 개를 먹게 하였다. 개고기는 거칠고 질기고 지방은 거의 없었다. 각 개들은 거의 반항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른 살아있는 개들에게 남김없이 먹혔다. 사람 역시 개의

뇌와 간을 먹었는데 불행하게도 개는 사람보다 비타민 A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이러한 개의 간을 먹은 사람은 비타민 A과다증에 걸려서 Mertz는 급격한 체력저하에 시달리며 복통을 호소하며 운동 불능과 정신불안을 겪다가 1913년 1월 7일에 사망하였다. 혼자 남은 Mawson은 마침내 캠프로 살아서 돌아왔다.

10

5. 개식용과 경구(經口)전염병

개에게 급여하는 잔반에는 여러 타액이 섞여있으며 파리, 바퀴벌레, 쥐 등 해충의 침투가 용이하여 여러 병원균의 침투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연구제반 여건 또한 없다. 개를 매개체로 하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요소가 높은 상태이다.

(1) 정의 : 병원체가 오염된 식품, 그 이외에 오염된 손, 물, 곤충, 동물, 식기류 등으로부터 경구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소화기계 전염병

(2) 수인성 전염병

(3) 전파양식

- ①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분변, 혹은 구토물, 콧물, 가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하여 배출되어서 음식물, 음료수, 손에 오염되어 경구로 침입
- ② 배설물과 접촉한 쥐, 파리 등의 매개로 식품에 오염되어 입을 통해서 체내로 침입되어 발병 되는 경우

(4) 균의 양, 종류, 숙주의 감수성 등에 따라 전염 여부 결정

(5) 특징

- ① 집단적이고 폭발적인 유행
- ② 계절적인 특성 : 여름철(고온다습)에 많이 발생
- ③ 지역적인 특성에 영향
- ④ 음식물에 대한 기호성의 관계와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발생

- ⑤ 잠복기가 짧음
- ⑥ 식품 속에서 증식하므로 발병률이 높음
- ⑦ 가복집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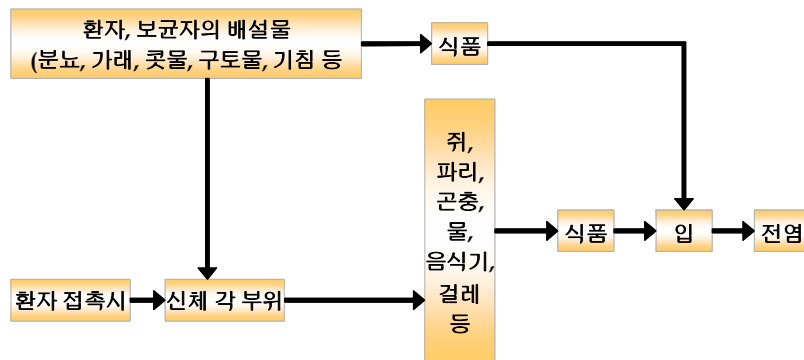
(식품영양학, 건동대학교, 2010)

<표3-6> 경구 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

구 분	경구전염병	세균성 식중독
감염관계	감염환(infection cycle)이 성립	종말감염(terminal infection)
균의 양	미량의 균으로도 감염이 가능	일정량 이상의 균이 필요(다량)
2차 감염	2차 감염이 빈번	2차 감염은 거의 드뭄
잠복기간	길다(원인균 검출이 곤란)	비교적 짧다
예방조치	거의 불가능	균의 증식을 억제하면 가능
음 료 수	음료수로 인해 감염	음료수로 인한 중독은 거의 없음(균이 희석되기 때문)

(출처: 식품영양학, 건동대학교, 2010)

<표3-7> 경구 전염병의 감염 경로



(출처: 식품영양학, 건동대학교, 2010)

<표3-8> 경구 전염병의 종류와 특성

전염병명	병원체	잠복기	감염 경로	증상
장티푸스	<i>Salmonella typhi</i>	3~60일 (1~3주)	물, 음식물, 생과일 및 생채소, 우유, 유제품, 패류	지속적인 발열, 서맥, 두통 간·비장의 종대, 권태감, 식욕부진, 건성기침
콜레라	<i>Vibrio cholera</i>	6시간~5일 (24시간 내외)	식수, 음식물(어패류), 과일, 채소	심한 설사
세균성 이질	<i>Shigella</i> 속	12시간~7일 (1~3일)	음료수, 식품, 환자나 보균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감염	경미하여 증상이 없으나 때로는 고열, 경련성 복통, 설사, 대변에 혈액이나 농
파라티푸스	<i>Salmonella paratyphi</i>	1~3주	물, 음식물, 우유, 유제품	지속적인 고열, 두통, 비장종대, 발진, 설사 등 장티푸스와 유사하나 다소 경미
폴리오	Polio virus	불현성 3~6일 마비성 7~12일	인두분비물과 대변에 의한 직접접촉감염 및 비말감염	■비마비성인 경우 발열, 권태감, 두통, 설사 ■마비성인 경우 발열, 근육통, 경부·배부 경직, 이완성 마비
간염	<i>Hepatitis virus A, B, C</i>	A형 15~50일 B형 45~108일 C형 15~150일	■A형 : 물, 음식물, 주사기, 혈액제제 ■B형 : 상처, 키스, 성접촉, 주사기, 모자간 수직감염 ■C형 : 주사기, 수혈, 성접촉, 모자간 수직감염	■A형은 발열, 식욕감퇴, 근육통, 피로감, 설사 ■B형은 만성인 경우 피로, 전신권태, 황달, 식욕부진 합병증으로 간경변, 정맥류출혈, 비장비대, 복수 ■C형은 만성인 경우 간경변
성홍열	<i>β-hemolytic streptococci</i>	1~3일	비말감염과 분비물에 의한 직·간접전파, 음식물, 우유, 유제품	인후통, 발열, 두통, 복통, 인후염, 발진, 딸기혀, 편도선이나 인두후부의 점액농성의 삼출액, 경부림프절의 종창
디프테리아	<i>Corynebacterium diphtheriae</i>	2~6일	접촉 및 비말감염, 가공식품	발열, 상기도 염증과 위막, 때로는 피부 침범

(출처: 식품영양학, 건동대학교, 2010)

6. 개와 관련된 인수공통 전염병

개와 관련된 인수공통 전염병은 수많은 병원균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내부기생충, 광견병, 브루셀라병, 심장사상충만 일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잔반급여,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해충노출, 비전문인에 의한 질병관리 등으로 취약자 및 이를 섭식하는 사람에게 더욱 위험요소는 높다.

(1) 전파

인수공통 질병은 동물과 사람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파될 수 있음.

- 직접 전파

질병을 가진 개체의 분비물(혈액, 뇨, 분변, 타액 등)을 감수성이 있는 개체가 접촉하였을 경우

- 간접 전파

인수공통 질병은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질병에 노출된 개체의 유기물이 묻은 생물이나 무생물 등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매개체 역할

(2) 개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수공통 질병 종류 (일부)

1) Animal Bites and Scratches

- 사람에서의 증상
부종, 통증, 체액유출, 교상부위 기능 저하, 발열
패혈증 -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2) Bubonic Plague

- 원인
Yersinia pestis
- 사람에서의 증상
림프절 종대, 발열, 폐렴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폐사(흑사병)

3) Camphylobacter

- 원인
Camphylobacter jejuni (bacteria)
- 사람에서의 증상
급성 위장관 질환- 식중독으로 분류
설사, 구토, 복통
건강한 사람에서는 자가 치유가 가능하며 짧은 기간의 경과

4) Cutaneous Larval Migrans

- 원인
개 구충의 유충이 사람의 피부를 뚫고 이주
(Ancylostoma braziliense, Ancylostoma caninum)
- 사람에서 증상
피하가 충혈되고 심한 소양감이 확인되며 발끝부터서 항상 시작됨

날마다 2-3mm정도 이동

5) Giardiasis

- 원인

Giardia lamblia (protozoa)

- 사람에서의 증상

병원성의 정도에 따라 설사의 양상 및 지속기간이 다름
복부 통증,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음

6) Lyme Disease

- 원인

Borrelia burgdorferi (spirochete bacteria)

- 사람에서 증상

진드기에게 물린 자국은 발적이 생길 수 있음
발열, 기면, 관절염이 일반적임
심장 병변도 일부에서 확인됨

7) Psittacosis

- 원인

Chlamydia psittaci (bacteria)

- 사람에서 증상

노출 후 1-2주 증상이 생김
발열, 불안함, 두통, 기침, 폐렴 증상 같은 호흡기질환이 확인됨
심장문제가 가끔 일어남
유산, 자궁 감염이 임신 후기에서 확인됨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은 아님

8) Rabies

- 원인

Rhabdovirus or Lyssavirus (virus)

- 사람에서 증상

교상부에 통증과 종대
부전마비, 완전마비가 생기며 후두근육의 마비와 종대로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게
하며 통증을 유발하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Hydrophobia라고 불림
폐사도 일어날 수 있음

9) Salmonellosis

- 원인

Salmonella typhimurium (bacteria)

- 사람에서 증상

복통,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관 질환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임
동물과 같이 혈액 감염도 일어날 수 있음

10) Shigellosis

- 원인

Shigella (bacteria)

- 사람에서 증상

복통,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관 질환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임
동물과 같이 혈액 감염도 일어날 수 있음

11) Visceral Larva Migrans

- 원인

Toxocara canis (dog roundworm)

Toxocara cati (cat roundworm)

Baylisascaris procyonis (raccoon roundworm)

- 사람에서 증상

섭식한 충란이 부화한 후 유충에 의해 일차적으로 증상이 발생함

유충은 체내 조직과 기관을 이주하여 염증반응을 만듦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이 확인 될 수 있음

눈도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유충의 이주로 아이들에게서 후천적인 실명을 야기할 수 있음

12) Anthrax

- 원인

Bacillus anthracis (bacteria)

- 사람에서 증상

피부형은 대부분 나타나는 형태임. 노출 후 1일에서 7일 사이에 빨간 반점으로 시작함. 점차 검은 색으로 변하여 괴사병변을 만듦.

이후 혈중으로 이동하여 장기 부전을 만듦

폐렴이 확인될 수 있음

폐사율은 노출 정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50%이상은 초기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폐사 됨

13) Babesiosis

- 원인

Babesia divergens (protozoa)

Babesia microti

- 사람에서 증상

발열, 오한, 두통, 피로 등이 2-4주 이상 지속될 수 있음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함

14) Brucellosis

- 원인

개에서는 *Brucella canis*

- 사람에서 증상

림프절 종대, 발열, 두통, 오한, 장기간 피로할 수 있음

15) Colibacillosis

- 원인

Escherichia coli (*E. coli*)

- 사람에서 증상

구토, 설사, 복통 등 급성 위장관 질병

패혈증으로 가는 경우는 드뭄

16) Cryptosporidiosis

- 원인

Cryptosporidium (protozoa related to the common coccidia organism)

- 사람에서 증상

대부분 무증상, 가벼운 증상

면역이 억압된 사람의 경우 설사, 발열, 체중소실, 탈수 등이 생길 수 있음

다양한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

17) Dipylidiasis

- 원인

Dipylidium canium (tapeworm)

- 사람에서 증상
대부분 무증상이며 가벼운 소화기 증상이 있을 수 있음

18) Echinococcosis

- 원인
Echinococcus granulosus (tapeworm)
- 사람에서 증상
충란을 섭취한 후 유충이 부화하고 몸의 여러 장기로 이주하여 cyst 형태로 바뀌고 크게 자람. cyst의 크기에 따라 임상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임상증상을 일으키기까지 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음

19) Ehrlichiosis

- 원인
Ehrlichia canis (bacteria-rickettsia)
- 사람에서 증상
발열, 기면

20) Encephalitozoonosis

- 원인
Encephalitozoan cuniculi
- 사람에서 증상
대부분 무증상
면역이 억제된 사람에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음

21) Hantavirus

- 원인
Hantavirus (Sin Nombre strain) (virus)
- 사람에서 증상
호흡기 증상, 폐부종이나 폐렴 등
가끔 치명적임

22) Leptospirosis

- 원인
다양한 strain의 Leptospira(bacteria
L. canicola (dogs)

- 사람에서 증상
무증상이 대부분
발열, 쇠약, 기면
고환 통증
피부 발적
신장질환
간질환

23) Newcastle Disease

- 원인
Paramyxoviridae(Newcastle Disease Virus)
- 사람에서 증상
심한 결막염
발열, 기면, 식욕부진

24) Q-Fever

- 원인
Coxiella burnetti (bacteria-rickettsia)
- 사람에서 증상
발열, 기면
심내막염을 포함한 심장 문제
두통
2-3달 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25) Streptococcus

- 원인
Streptococci, many different species and strains (bacteria)
- 사람에서 증상
상처부위에 농, 괴사 병변
목통증
심장질환
Scarlet Fever(성홍열)

26) Trichostrongylus

- 원인

Trichostrongylus different species (intestinal worm)

- 사람에서 증상

대부분 무증상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 증상

27) Tuberculosis

- 원인

Mycobacterium different species (bacteria)

- 사람에서 증상

기침, 객혈 등 호흡기 증상

발열, 체중소실, 기면

피부병변

28) Bordetellosis

- 원인

Bordetella bronchiseptica (Bacteria)

- 사람에서 증상

기침, 비루, 폐렴 등 호흡기 증상

(AHA 가이드라인, 2010)

7. 개식용과 중금속 중독

개고기에서 체내에서 축적되어 생체 기능을 장애하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이 되고 있다. 잔반위주의 사육과 저급사료(음식물 찌꺼기, 도축장 및 도계장의 잔여물 등)의 급여를 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속원소는 미량으로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철분, 아연, 구리, 코발트와 극히 미량 일지라도 독성이 강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납, 비소, 카드뮴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납, 비소, 카드뮴은 생물체 본래의 구성성분이 아니고 동물의 생육과정이나 식품의 제조가공 중에 외부에서 오염되어 들어가는 환경오염성 중금속이다.¹³

중금속은 토양 뿐 아니라 체내에서도 분해되기 어렵고 배출이 쉽지 않아 생물체에 축적되면 먹이연쇄를 따라 농축되므로 먹이 사슬의 최종 소비자인 사람에게 식품의 중금속 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다. ^{14, 15, 16}

특히 납, 카드뮴은 식품 중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독성물질로 생체 조직과 강한 결합을 하여 생체 내에 축적되어 천천히 제거되는 유해물질이다. 급성 중독

일반세균은 1g 또는 1㎤ 당 최저 135.2마리에서 최대 381.6마리가 검출됐고, 대장균도 최저 808마리에서 최대 927마리가 나왔다.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도 검사 대상 14점 중 3점에서 검출됐다.

한편 이 기간 함께 검사한 닭고기와 오리고기에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²⁰

• 인천 보양식당 개고기서 중금속·식중독균 검출 (YTN, 2000. 12. 10)

인천시 가축위생 시험소는 지난 6월부터 인천지역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고기와 오리고기 등 79건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개고기 4건과 오리고기 2건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납 성분이 검출된 개고기의 경우 국제 식품규격위원회의 잠정기준치인 0.4ppm을 초과한 0.5ppm을 나타냈습니다. 시험소측은 개나 오리가 사료 등을 통해 중금속 성분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²¹

• 2003년에는 말복을 며칠 앞두고 중국 저장(浙江)성 일대에서 청산가리가 든 개고기가 14.7톤 적발되어 압수된 적이 있다. 개고기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된 것은 농촌 토종개들을 때려잡기가 쉽지 않아 청산가리로 독살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2002년에도 독극물이 든 개고기가 압수되었는데, 중국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개고기가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해 한국에도 일부 밀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처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²²

• 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는 2000년 12월 인천지역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 시료 50개를 채취해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벌인 결과, 10% 5개 시료에서 0.02 ~ 0.5ppm가량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특히 이중 2건은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돼지, 쇠고기의 납 성분 함유 기준치 0.4ppm을 뛰어넘었다. 납 성분의 검출은 개들이 토양, 음식용기, 음식물찌꺼기 등에서 납 성분을 섭취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납 성분을 함유한 개고기를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 복통, 구토, 설사와 함께 신경장애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²²

• 1998년 8월에는 3년 동안 세균 또는 바이러스 백신 실험에 사용되거나, 폐렴 등 병들어 죽은 개 5,600여 마리를 도축,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음식점과 건강원에 유통시킨 동물연구소 대표와 개고기 도매업자가 적발된 적도 있었다. 동물연구소의 경우는 제약사와 연구소에 실험용 개를 공급한 뒤 '광견병 생독 건조백신' 등 백신실험에 사용된 개 860여 마리를 빼돌려 성남-모란시장, 오산-평택시장 상인들에게 되팔았던 것이다. 또한 개고기 도매업자의 경우는 폐렴, 장염으로 병들어 죽거나 실험용으로 쓰인 개 4,800여 마리를 도축해 서울 강남, 인천, 의정부, 신갈, 안

양 일대 음식점과 건강원에 팔았으며, 상당수의 음식점과 건강원들이 불량 고기인 줄 알면서도 구입,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²²

(2) 중금속 중독의 인체에 대한 영향

중금속 중 아연, 철, 구리 코발트 등은 생물의 생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금속이다. 필수금속이라도 과잉 섭취하면 생체에 대한 금속의 조절 유지기전이 손상되어 독작용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구리의 과잉섭취는 용혈성빈혈 및 모세혈관의 손상, 간장 등의 실질 장기에 장애를 일으키며, 코발트도 조혈계에 유해한 각종 변화를 일으킨다. 한편 수은, 납, 카드뮴등은 생체에는 불필요한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로서 생체에 각종 독작용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생체의 기능을 장애하는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1) 납중독

납은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가운데서도 독성이 강한 것 중의 하나로 미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면 체내에서 강한 독성작용을 나타내고 급성보다는 만성중독으로 일어나며 헤모글로빈 합성 저해, 혈구 수명 단축으로 인한 빈혈, 식욕 부진, 소화불량, 뇌신경 장애 등이 알려져 있으며 국제 암연구기관(IRAC)에서 사람에게 대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인 Group 2B로 분류하였다.²³

2) 카드뮴 중독

카드뮴은 중금속 중에서도 오염지역의 오염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적인 원소로 아연, 구리, 납의 제련 시 생기는 폐수와 농장물의 재배 시 사용하는 비료에서 오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인산비료에 상당량의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다.²⁴

카드뮴에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에서는 고혈압 등 순환기 계통의 환자들이 많고 사망과 빈혈이 초래된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는 카드뮴의 2가 이온인 구리, 아연, 철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기간 노출 시 빈혈, 골 소실 및 결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²⁵ 주로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요통, 골절, 골다공증 등을 유발시킨다.²⁶

카드뮴은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사람에게 대해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Group1에 분류되어 있다.

3) 비소 중독

비소의 경우 아직까지 생체 내에서의 생리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과량 축적 시에만 신체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비소는 의약품, 안료, 방부제, 농약 등에 사용되어온 금속으로 비소 단독으로는 독성이 크지 않지만 아비산, 염화비소, 비산 칼슘 등과 같이 비소화합물이 되었을 때 독성이 매우 크며 중독증상은 식도가 수축되어 침을 삼키지 못하며 섭취했을 때 만

성 또는 급성독성을 나타내는데 심한 복통과 구토 및 설사 등의 소화기 장애와 피부 기저세포암종 및 편평세포암종과 같은 피부암을 일으킨다.²⁸

<표3-9> 중금속의 표적장기

중금속	표적장기
카드뮴 (Cadmium)	신장, 폐, 간
크롬 (Chromium)	폐, 호흡기, 피부
수은 (Mercury)	신장, 뇌
주석 (Tin)	비장, 심장, 폐, 뇌 (유기 주석 화합물)
텔루륨 (Tellurium)	간, 신장
납 (Lead)	조혈기, 신장, 뇌
니켈 (Nickel)	피부, 뇌
비소 (Arsenic)	간, 피부, 전 장기

(출처: 김오식, 환경독성학, 1990)

(3) 국민 혈중 중금속 잔류 현황

국민 혈중의 중금속 농도 조사(질병관리본부, 2005)에 의하면 혈중 중금속 잔류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련 설문조사들에 의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신음식, 보신탕, 개소주의 섭취빈도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설문조사 편 참조). 고농도의 중금속이 위생검사 결과 확인이 되고 있어 보신문화의 영향으로 노년층의 개고기 음식 섭취가 일반화되어 있어 이로 인한 중금속 잔류에 의한 위험에 더욱 노출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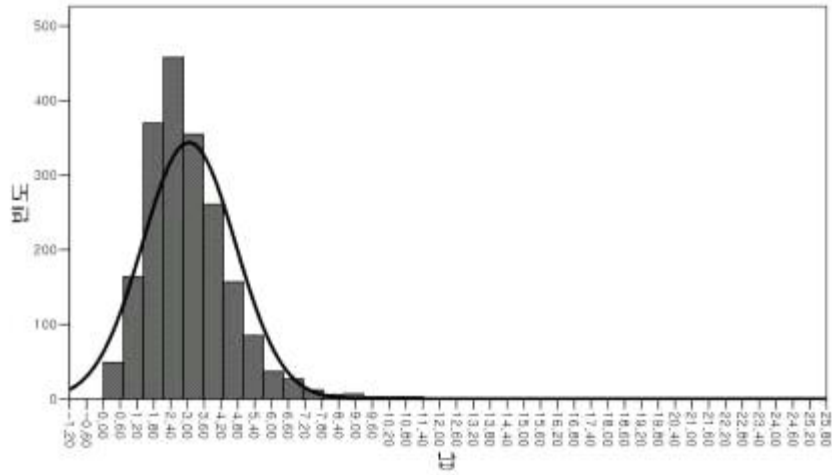
1) 혈중 납 수준

혈중 납 수준의 평균(산술)은 $3.06\mu\text{g}/\text{dl}$ ($0.08\text{--}24.09\mu\text{g}/\text{dl}$)이었다. 중금속 노출 관련 직업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의 분포는 그림에 제시하였으며 혈중 납 수준의 평균(산술)은 $3.02\mu\text{g}/\text{dl}$ ($0.08\text{--}24.09\mu\text{g}/\text{dl}$)였다.

전체 대상자의 혈중 납 평균(기하) 수준은 $2.66\mu\text{g}/\text{dl}$ 이었고 연령별로 비교시 20대 $2.25\mu\text{g}/\text{dl}$, 30대 $2.52\mu\text{g}/\text{dl}$, 40대 $2.77\mu\text{g}/\text{dl}$, 50대 $2.85\mu\text{g}/\text{dl}$, 60대 이상 $2.84\mu\text{g}/\text{dl}$ 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 비교시 남자 $3.06\mu\text{g}/\text{dl}$, 여자 $2.31\mu\text{g}/\text{dl}$ 로 남자가 더 높았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2.63\mu\text{g}/\text{dl}$, 읍면지역이 $2.77\mu\text{g}/\text{dl}$ 로 읍, 면지역이 동지역보다 높았다.

국외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다는 높은 수준인 반면 독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보다는 낮았다. 중국과 일본의 연구결과와 비교시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3-10> 국민의 혈중 납 수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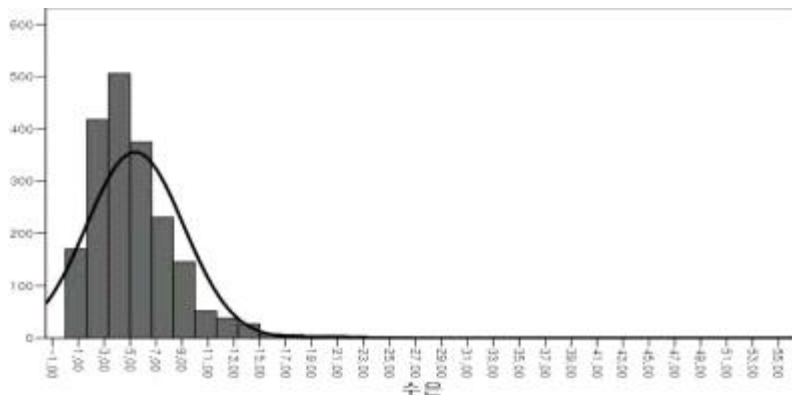


2) 혈중 수은 수준

혈중 수은은 평균산술 수준은 $5.38\mu\text{g/l}$ ($0.07\text{--}55.94\mu\text{g/l}$)이었다. 중금속 노출 관련 직업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의 혈중 수은 평균산술 수준은 $5.28\mu\text{g/l}$ ($0.07\text{--}55.94\mu\text{g/l}$)이었다.

대상자의 혈중 평균기하 수준은 $4.34\mu\text{g/l}$ 이었고 연령별로 비교시 20대 $3.98\mu\text{g/l}$, 30대 $4.18\mu\text{g/l}$, 40대 $4.79\mu\text{g/l}$, 50대 $4.52\mu\text{g/l}$, 60대 이상 $4.06\mu\text{g/l}$ 로 40대의 수은 수준이 가장 높았다. 성별 비교시 남자 $5.01\mu\text{g/l}$, 여자 $3.76\mu\text{g/l}$ 로 남자가 더 높았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4.28\mu\text{g/l}$ 읍면지역이 $4.58\mu\text{g/l}$ 으로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높았다. 국내의 연구로는 (호문기, 2003) 성인 235명을 대상으로 혈중 수은 수준을 측정된 결과가 유일한 보고로 혈중 평균 수은은 $3.2\mu\text{g/l}$ 로 본 조사 결과보다 낮았다. 또한 미국과 독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혈중수은이 미국과 독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시 미국 $0.42\text{--}2.76\mu\text{g/l}$, 독일 $0.29\text{--}0.91\mu\text{g/l}$, 중국 $3.5\mu\text{g/l}$, 일본 $18.2\mu\text{g/l}$, 노르웨이 $2.0\text{--}8.4\mu\text{g/l}$ 로 대상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3-11> 국민의 혈중 수은 수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2005)



3) 혈중 카드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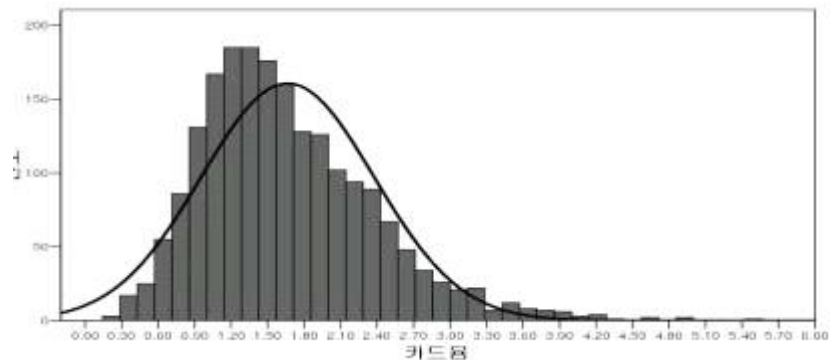
전체 대상자의 혈중 카드뮴 평균(산술)은 $1.66\mu\text{g}/\text{l}$ ($0.18\text{--}5.52\mu\text{g}/\text{l}$)이었다. 중금속 노출 관련 직업 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의 카드뮴 평균(산술) 수준은 $1.67\mu\text{g}/\text{l}$ ($0.18\text{--}5.52\mu\text{g}/\text{l}$)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혈중 카드뮴 평균 기하 수준은 $1.52\mu\text{g}/\text{l}$ 이었고 연령별로 비교시 20대 $1.46\mu\text{g}/\text{l}$, 30대 $1.42\mu\text{g}/\text{l}$, 40대 $1.53\mu\text{g}/\text{l}$, 50대 $1.58\mu\text{g}/\text{l}$, 60대 이상 $1.63\mu\text{g}/\text{l}$ 로 60대의 혈중 카드뮴 수준이 가장 높았다. 성별 비교시 남자 $1.55\mu\text{g}/\text{l}$, 여자 $1.48\mu\text{g}/\text{l}$ 로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카드뮴 수준이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1.51\mu\text{g}/\text{l}$, 읍 면지역이 $1.56\mu\text{g}/\text{l}$ 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95퍼센트 카드뮴 수준은 $2.97\mu\text{g}/\text{l}$ 이었고 연령별로 50대가 $3.21\mu\text{g}/\text{l}$ 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자의 95퍼센트 카드뮴 수준은 $3.04\mu\text{g}/\text{l}$ 로 남자인 $2.91\mu\text{g}/\text{l}$ 보다 높았고 읍 면지역의 95퍼센트 카드뮴 수준은 $3.10\mu\text{g}/\text{l}$ 로 동지역보다 높았다.

중금속 노출 관련 직업 경험자를 제외한 대상자의 혈중 카드뮴 수준은 $1.52\mu\text{g}/\text{l}$ 으로 전체 대상자와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 성별 거주 지역별 분포 또한 전체 대상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과 독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시 미국과 독일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WHO의 일반인 권고치인 $5\mu\text{g}/\text{l}$ 는 초과하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5\mu\text{g}/\text{l}$ 를 초과하는 대상자는 단지1명이었다.

<표3-12> 국민의 혈중 카드뮴 수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2005)



(국민 혈중의 중금속 농도 조사, 질병관리본부, 2005)

(4) 축산물에서 중금속 함량 현황

•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통 중인 식육(소, 돼지, 닭 및 오리고기)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소고기60건, 돼지고기47건, 닭고기44건, 오리고기21건등 총172건의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카드뮴과 비소는 기준이내의 수준으로 검출되었지만 남은 소, 돼지 및 오리고기 각1건, 닭고기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³¹

• 우리나라 육류중 납의 함량은 0.49mg/kg, 오 등(2000)은 소에서 0.2828mg/kg, 돼지는0.0917mg/kg 그리고 닭은 0.1532mg/kg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기준치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³²

참고문헌

1. 중앙일보, 2010. 5. 5 “보신탕용 식용개, 음식물 쓰레기 최고 ‘해결사’ ”
2. 안용근, 개고기 식용이 위생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미치는 영향. Korean J. Food & Nutr. Vol. 23. No. 1, 124 ~ 133 (2010)
3. 국민일보, 2010.10.25 “한림의대 내과 김동준 교수 건강표방식품·약제에 의한 독성간염 실태 분석결과”
4. 강선형외, 급성 독성간염 159예의 임상적 고찰, The Korean Journal of Hepatology 2008 ; 14 : 483 - 492,
5. Cui J, Wang ZQ. Outbreaks of human trichinellosis caused by consumption of dog meat in China. *Parasite*. 2001 Jun;8(2 Suppl): S74-7.
6. 서영우. 수도권 일대 집단 번식농장 사육견에서의 개심장사상충 감염실태. 대한수의학회, 2001
7. 장승익. 대전지역 사육견의 심장사상충 감염실태 조사, 가축위생학회지, 2004
8. 정대영. 광주와 전남지역 사육견의 심장사상충 감염률조사, 가축위생학회지, 1997
9. Dognappers spark deadly violence across Vietnam". *Newsday*. October 3, 2011."Hanoi dog meat restaurants come under scrutiny after cholera outbreak". *Vietnamnet*.
10. Douglas Mawson. "The Home of the Blizzard"
11. 식품영양학, 건동대학교, 2010
12. AHA 가이드라인, 2010
13. 윤기선. 식품의 중금속 오염현황과 관리방안. *식품기술학회지* 20(4): 37-49, 2007
14. Massaro EJ. 1990. *Handbook of human toxicology*. Boca Raton Press. New York: 149-188
15. Rhee JS. 1995. A study on the content of heavy metal in domestic or foreign oriental medicine by means of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M. S. Thesis, Dept.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6. 전옥경, 김연천, 한선희. 2001. 시중 유통가공식품중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16(4): 308-314)

17. 윤기선. 식품의 중금속 오염 현황과 관리 방안. 식품기술 20(4): 37-49, 2007
18. 정지현, 황래홍, 윤은선, 김현정, 한인규. 축산식품중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가축위생학회지, 22(1): 1-7), 1999
19. KBS 소비자 고발, 2008, “당신은 애완견을 먹고 있습니다.”
20. 뉴시스, 2008. 8. 7 “서울 보양식당 개고기서 중금속·식중독균 검출”
21. YTN, 2000. 12. 10 “인천 보양식당 개고기서 중금속·식중독균 검출”
22. 식용견 위생관리 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 2005
23. 권병만. 우리나라 식품오염의 현황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24. 김희연, 김재인, 김진철, 박지은, 이경진, 김성일, 오재호, 장영미. 2009. 국내 유통 중인 농산물의 중금속 함량 모니터링. 한국식품과학회지. 41(3): 238-244.
25. 김미혜, 김정수, 소유섭, 정소영, 이종욱. 국내 유통 과일류 중 유해 중금속 함량. 한국 식품 과학회지. 36(4): 523-526, 2004.
26. WHO. Cadmium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134).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131-195, 1992
27. 김희연, 김재인, 김진철, 박지은, 이경진, 김성일, 오재호, 장영미. 국내 유통 중인 농산물의 중금속 함량 모니터링. 한국식품과학회지. 41(3): 238-244, 2009
28. 윤기선. 식품의 중금속 오염 현황과 관리 방안. 식품기술. 20(4): 37-49, 2007
29. 김오식, 환경독성학, 1990
30. 국민 혈중의 중금속 농도 조사(질병관리본부, 2005
31. 최윤화, 김연주, 이경혜, 강영일, 이정학. 유통식육에서 중금속 함량조사. 한국가축위생학회지33(3) 299-302, 2010
32. 오은희, 김상욱, 이태욱, 박판재, 서영동, 이재일, 황인영. 전남지방에서 생산·유통되는 식육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축위생학회지23(2): 194, 2000

제 5 절 실태조사 - 수송과정

1. 서론

개의 도축은 주로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늦은 밤에서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축장으로의 수송 등도 역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대에 이동을 한다고 하나 간혹 오전, 오후 시간대에도 확인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좁은 공간 내에 많은 수의 개들이 뒤얽혀 고통 받고 있는 모습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불량한 위생의 케이지 내에만 생활하다가 처음 세상에 나오는 것이 좁은 철장으로 강제로 구겨져 들어가는 고통이다. 관련업을 하는 사람에 의하면 좁게 만드는 이유는 판매처까지 이동할 때 개들끼리 싸워서 교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거나 죽으면 안되고 한 번에 많은 수를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도축장으로 이동할 동안 좁은 공간내에서 숨만 겨우 쉴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도축장에 도착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 등 잔인한 광경을 보면서 죽음을 당할 때 까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출처: <http://photo.naver.com/user/limon7711>)

<그림3-22> 도로상에서 확인된 개의 수송 모습



<그림3-23> 개 이동용 철장

최근에는 TV에서 끔찍한 영상이 방영이 된 적이 있다. 트럭내 케이지에서 같이 있는 개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방영된 것이다.

다음은 관련 기사이다.

2. 관련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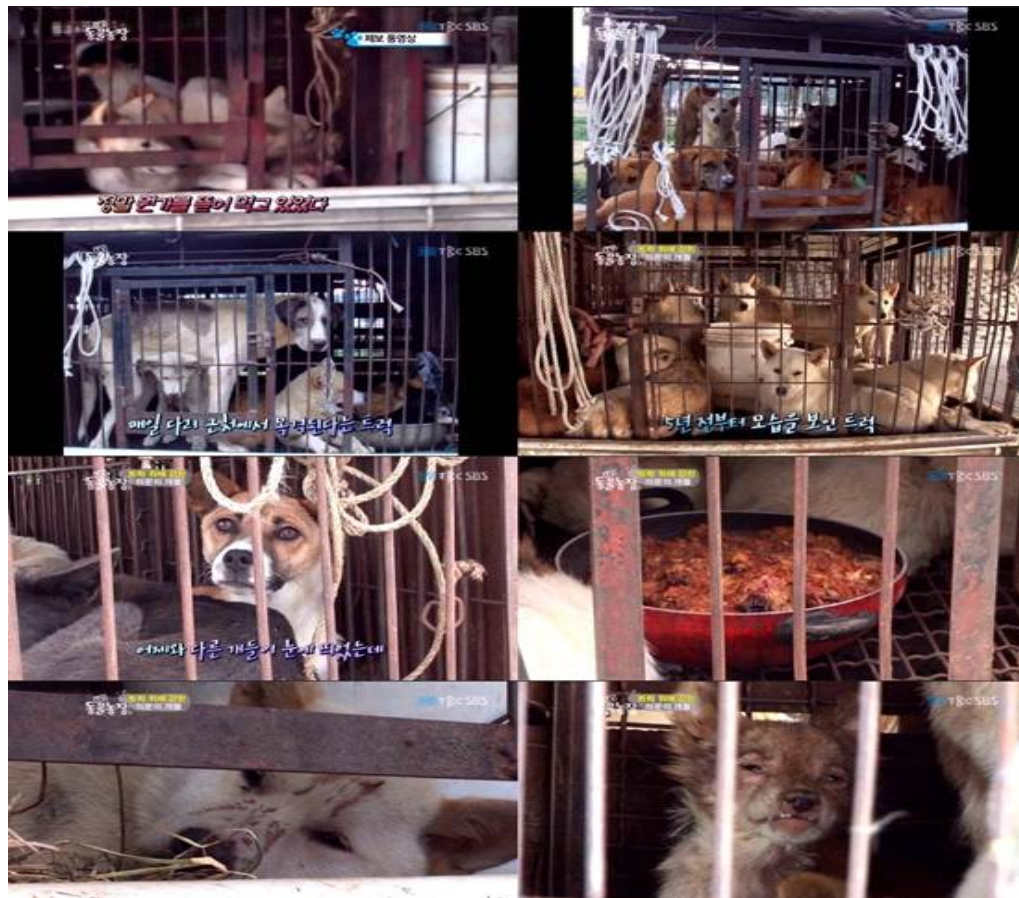
• 동물농장 ‘개가 개를 먹는 끔찍한 현장 경악’ 개장수 트럭의 불편한 진실¹

(뉴스엔, 2011. 11. 9)

트럭 안 개들의 끔찍한 생활이 밝혀졌다. 10월 9일 방송된 SBS ‘TV 동물농장’에서 개장수 트럭 안에 갇힌 개들이 개의 사체를 먹고 있다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날 동물농장에 개가 개를 먹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제작진은 문제의 트럭을 찾았다.

문제의 트럭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비좁은 철장 안에 갇혀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제보자가 말한 끔찍한 동물의 사체도 있었다. 게다가 철장 안에 개들은 형체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패된 그 사체를 뜯어 먹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¹



<그림3-24> 개장수 트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출처: SBS ‘TV 동물농장’ 2011. 10. 9)

최근에 제주도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 화물칸에 개를 겹겹이 쌓은 채 이송되는 광경이 목격이 되어 알려지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35도 가까운 폭염 상태에서 개들은 겹겹이 쌓인채 케이지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다. 죽어 있는 개들도 있었으며 구토를 하는 개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서는 유기동물, 유실동물 가능성이 높은 품종있는 개체들(세인트 버나드, 레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진돗개, 그레이트 피레니즈, 시베리아 허스키, 요크셔 테리어 등)이 눈에 띄었고 어린 개체들도 확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의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에게 이런 상황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 여객선에 ‘동물 학대’ 개장수 트럭... 시민들 충격(조선일보, 2012. 7. 24)⁴

좁은 철창에 수십 마리 실어 겁에 질린 개 일부는 죽기도
 사진·목격담 인터넷에 뜨자 "세계적 망신" 비판여론 일어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한 여객선 화물칸에 운송 중인 '개장수 트럭'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들은 숨을 쉴 수 없는 좁은 상자 속에 실려 애처롭게 쳐다보는 개, 몸이 구부러진 채 더위와 공포에 떠는 개, 스트레스를 받은 듯 철창을 물고 있는 개의 모습이 그대로 담고 있다.



<그림3-25> 제주도 여객선에서 육지로 이송되고 있는 개트럭
 (출처 : <http://4199427.blog.me/>)



<그림3-26> 트럭에서 확인된 세인트 품종 개들
 (출처 : <http://4199427.blog.me/>)

3.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제 9 조 (동물의 운송)

-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떨어진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이 사항과 관련된 벌칙 조항은 없다.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기존 처벌된 사례 역시 없다.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수송과 관련해서는 그저 안쓰럽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4. 동물보호소의 수송 관련 기준

국내 동물보호소의 수송과 관련되어 표준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다. 유기동물은 트럭이나 승합차의 케이지에 넣어 습도, 냉난방, 환기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 없이 이송이 되고 있어 수송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래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제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에서 인용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안) 수송과 관련된 기준이다.

제 1 조 (운송수단과 운영방식)

- ① 동물들을 데려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운송수단 이 보호센터에 있어야 한다.
- ② 운송수단은 다른 요소들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환기나 온도가 잘 조

절되어야 한다(열사병, 동상 방지).

- ③ 이송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운송수단은 보호센터의 이름과 연락처가 깨끗하고 잘 보여야 한다. 언제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동물들이 타고 내릴 때를 고려해 최대한 쉽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⑥ 운전자는 아프거나 다친 동물들에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⑦ 조난 또는 부상동물 신고·접수 즉시 포획장비와 이송장비를 갖추어서 출동해야 한다.
- ⑧ 사고 현장 도착 후 신속하게 신고자로부터 인계·인수 및 조난상태를 조사하고, 포획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⑨ 이동케이지, 구조장비의 청소, 소독은 하루 1회씩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⑩ 전염병이 의심되는 개체와 수의사에게 확인이 된 개체를 이송한 케이지 및 사용한 장비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에 의해 이송 후 바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⑪ 구조 인력은 2인 1조로 한다(년 1500두 입소기준).³

참고문헌

1. 뉴스엔, 2011. 11. 9 동물농장 ‘개가 개를 먹는 끔찍한 현장 경악’ 개장수 트럭의 불편한 진실‘
2. 동물보호법
3.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1
4. 조선일보, 2012. 7. 24 여객선에 ‘동물 학대’ 개장수 트럭... 시민들 충격

제 6 절 실태조사- 도축 및 도축과정

▲ 요약

- 소, 돼지 등 산업동물의 기준에 맞추어 개의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의 인도적인 도축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도축에 해당함
-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개의 인도적인 죽음은 적절한 약물에 의한 것이며 식육 및 사료로 쓰는 동물에 약물 사용은 섭취한 사람, 동물에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음
- 소, 돼지, 닭 등 다른 가축의 도축방식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임. 소, 돼지, 닭 등의 도축방식은 수십 년 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식용으로써 개도축 및 도축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합법화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임
- 개 도축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자체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 될 것이며 소, 돼지 등과 비슷한 방법의 도축 방법이 합법화 된다면 그것 또한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임

1. 한국의 개도축 실태

(1)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축방법

우리나라에서 개의 도축은 일반적으로 전기충격에 의한 감전사나 전기충격후 방혈 등이 실시가 되고 있다. 이는 전기봉을 사용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1분에서 3분정도의 시간동안 전신마비를 시켜 감전사하거나 마비시킨 후 경정맥을 절단하여 방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계류장 없이 트럭으로 싣고 온 후 트럭 위 케이지에 많은 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례대로 전기도

살을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으며 그 주위에 개들은 겁에 질려있는 상태였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반항하는 개들도 확인이 되었다.

한때는 개를 몽둥이로 두들긴 후 불에 태워 죽이거나 질식사시켜 죽이기도 했지만 최근엔 전기충격을 가해 죽이는 전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살을 병행한다. 전살의 경우 220V의 전압에 연결된 전기봉을 이용해 개의 눈이나 입에 전기충격을 가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기도살을 일종의 안락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조사에 따르면 개 도살시 이용되는 전기충격은 개를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도살 현장을 목격했을 때 한 번의 전기충격으로 죽음에 이르는 개들은 없었다. 전기봉을 처음 가격하면 개의 몸이 마비가 되기는 하나 여전히 의식은 남아 있어서 대개 두세 번 이상의 전기 충격이 가해져야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전기충격을 가하는 시간은 도살장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첫 번째 가격은 2초 이내, 두 번째 이후의 가격은 그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기도 했다. 전기기구 상태가 불량한 도살장에서는 전기 충격을 받은 개가 의식을 잃기는 커녕 오히려 전기봉을 입으로 물어뜯으려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이것은 전기충격 후 즉시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잔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전기충격이 가해진 후 털을 뽑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불과 2~5분이 소요되었는데, 것처럼 짧은 시간에 개가 완전하게 죽음에 이르렀으리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개는 몸만 마비될 뿐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털이 뽑히는 고통을 겪은 후 죽음에 이른다.¹

이 방법은 심한 통증 및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며 수십 년 전에 개, 고양이, 양, 돼지, 여우, 멍크의 안락사에 사용되어왔다. 감전사는 심장의 섬유성 연축을 유도하며, 대뇌의 저산소증을 유발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동물은 심장의 섬유성연축이 일어난 후 10초에서 30초 또는 그 이상동안 의식을 잃지 않는다. 감전사하기 전에 의식을 잃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과 돼지에서는 1단계로 전기충격에 의하여 기절시키고 감전사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종은 2단계로 수행한다.

이는 단점으로 (1) 사람에게 위험하다. (2) 시간이 오래 걸린다.(3) 위험한 동물에게는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4) 사지, 머리, 목이 경직되므로 보기에 좋지 않다. (5) 전류가 중단된 후 심실의 섬유성연축을 계속 지속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5kg미만의 동물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²

그 외 목을 매달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방법, 호흡마비를 일으키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이상 언급한 내용들은 전 세계적으로 개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도축에 해당하는 잔인한 방법이다.

최근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손님이 보는 앞에서 도축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으며 이는 사람 몸에 약물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 사람, 동물에게 고기로 사용하는 동물

에게는 호흡마비,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관련된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이나 동물의 음식이 되는 동물들의 안락사에서 US Food와 Drug Administration에서 인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조직에 남는 화학 물질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기술이 사용된다고 기술하였다.²



<그림3-27>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 된 개(출처: 동물자유연대, 2008)



<그림3-28> 개의 도살장면 (출처: 카라 엘로우독 실태조사,2005)



<그림3-29> 약물을 이용한 도살시 이용하는 근이완제

(출처: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농림부, 2011)



<그림3-30> 염소 도축장에서 개 도축현장



<그림3-31> 성남 모란시장 내 도축장소
폐수가 하수구에 유출되고 있음

<그림3-32> 도살장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모습

(2) 국내 개도축장

우리나라에서 개 도축을 위한 장소로 따로 등록을 해주는 곳은 없다. 도축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에 개도살장이라고 불리는 개 도축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 염소도축장에서 도축 등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장, 보신탕집, 개소주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소규모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축 비용은 두당 1~3만원이며 도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축을 하는 곳들도 있다.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등의 보신탕집, 개소주집은 영업장 앞에 개를 전시하고 영업장에서 즉시 도축을 실시하고 있다.

• 염소도축장에서의 개의 도축

<표3-13> 전국의 염소도축장 현황 (2011년, 농림부)

지역	도축장	구분	소	돼지	염소
인천광역시	삼성식품㈜ 032-578-2198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7-4	당월	908	17,116	
		누계	7,377	138,218	99
강원도	사단법인 평창기업 033-333-9248 강원도 평창군 용평 장평리 207-3	당월	479	3,224	2
		누계	6,351	26,268	24
충청북도	충청산업 043-216-75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07-15번지	당월	0		12
		누계	0		471
	예성실업 예성실업, 043-847-7901, 충북 충주시 용관동 12-9	당월	0		75
		누계	0		842
	건보실업 043-645-4965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869번지	당월	0		61
		누계	0		412
전라남도	농업회사법인녹색흑염소 061-373-8005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40	당월	0		3
		누계	0		3
경상북도	(주)새한축산 경북 안동시 노하동 569 054-852-2700	당월	764	4,905	44
		누계	6,589	26,200	324
제주도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64-799-5135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533	당월	343	65,581	30
		누계	4,379	645,904	30

질게 표시한 곳에서는 대단위 개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부 염소 도축장에서 대단위의 개의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 표에서 염소 도축량이 적은 곳에서의 도축이 확인되었으며 염소 도축을 위한 공간보다 개 도축을 위해 염소 도축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도축장은 허가된 동물만 도축을 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염소 도축장에서 개도축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하여 이를 알고도 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규제할 근거가 없다하고 방치만 한다면 전국의 모든 개도축을 염소 도축장에서 하도록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래는 도축장과 관련된 안용근 교수의 글이다.

소위 도살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염소 도축장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개는 전문 도축장을 허가하지 않아 자가 도축하고, 도축 폐기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서 도축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병이 없는 건강한 개를 잡는지, 보존·유통·전달 과정이 위생적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토종 누렁이개는 한 마리당 내장, 분, 족, 털 등 4 kg 정도의 도축 폐기물이 생기고, 도사교잡종은 6 kg 정도 생긴다. 내장은 다듬는 인건비 때문에 15% 정도만 식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용견은 1,476,776마리, 그 중 도사교잡종이 90%, 토종견은 10%이다. 따라서 식용견 1,476,776마리를 1년에 모두 도축할 때 생기는 도축 폐기물은 연간 7,282톤으로 계산된다.

약덕 개고기 납품업자들은 컴프레서로 동맥을 통해 개고기에 물을 20% 정도 주입한다. 18 kg 짜리 생고기를 삶아서 빼 빼고 나면 정상적인 경우 생고기의 55~60% 정도인 10 kg 정도의 삶은 고기가 나온다. 물을 가한 개고기를 삶으면 물이 빠져 나가서 40%, 즉 7 kg 정도의 고기 밖에 남지 않는다. 조선일보 1998년 8월 5일자에 따르면 세균과 바이러스 백신 실험에 사용하거나 병들어 죽은 개 5,600마리를 잡아서 음식점과 건강원에 유통시킨 동물연구소 대표와 개고기 도매업자가 적발되었고, 경인매일신문 2003년 8월 10일자에 인천지검은 개를 잡아 물을 먹여 근수를 늘려서 6,6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업자 두 명을 기소하였다. 이런 보도는 연례행사이다. ³

2. 인도적인 죽음에서의 통증과 스트레스

통증 없는 죽음에 대한 기준은 오직 통증의 메커니즘이 충분히 이해된 후에야 확립될 수 있다. 통증은 상향의 신경 경로를 거쳐 대뇌의 피질에 도착하는 신경 자극으로 생기는 감각이다. 정상적인 환경 아래에서는 이 경로가 상대적으로 일정하지만, 신경계는 충분히 가소성이 있어서 통증이 항상 통각인식 경로의 활성화로만 초래되는 것은 아니고 통각이 없는 다른 말초중추 신경의 자극도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통각이란 용어는 상처를 입힌다는 뜻의 noci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ceptive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조직을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파괴하는 유해한 자극으로 야기된 신경세포의 입력정보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이 유해 자극들은 원발 통각 수용기에 작용하고, 기계 또는 열이나 화학 활성에서 온 유해 무해한 자극들에게 반응하는 다른 감각 신경 말단에 작용하여 신경 충격파를 일으킨다. 전류뿐 만 아니라 수소 이온, 칼륨 이온, ATP, 세로토닌, 히스타민, 브래디키닌과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내인성 화학 물질들도 통각 수용기 신경 섬유에서 신경 충격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통각 경로의 활성화는 또한 정상상태에서는 무반응이나 만성 고통 상태에 의해 민감해진 수용체들 사이에서 촉발될 수 있다.

스트레스와 통증을 나타내는 연속체의 이해는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이 느끼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최소화하는 기술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스트레스는 동물의 항상성이나 적응된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는 신체적인, 생리적인, 또는 감정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정의되어 왔다. 스트레스에 대한 동물의 반응은 정상적인 심리상태와 생리적인 상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적응과정을 나타낸다. 이런 반응들은 동물의 명백한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신경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정신상태의 변화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동물의 반응은 그들의 경험, 연령, 종, 품종과 현재의 생리적·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들은 유해한 자극이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생긴다.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는 동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생긴다. 통증은 동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안락함과 편안함이 깨질 때 생긴다.

동물이 연관된 다른 많은 과정처럼, 몇몇 죽음의 방법은 동물의 물리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요구되는 통제와 억제의 정도는 동물의 종, 품종, 크기, 사육 상태, 길들여진 정도, 아픈 상처나 병의 존재, 흥분 정도, 안락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안락사를 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종종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는 동물의 고통과 괴로움을 최소화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⁴

전 세계적으로 OIE와 더불어 통용되고 있는 동물의 죽음과 관련된 지침이다. 미국수의사회(AVMA)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²

- ㄱ. 아픔을 수반하지 않고 치사시킬 수 있을 것
- ㄴ. 의식소실까지에 요하는 시간이 짧을 것
- ㄷ. 치사에 이르는 시간이 짧을 것
- ㄹ. 확실할 것
- ㅁ. 실시자에게 있어서 안전할 것
- ㅂ. 심리적 스트레스가 적을 것

- ㄱ. 목적, 필요성에의 적합성이 높을 것
- ㅇ. 실시자 및 주위 사람에의 정서적인 영향이 적을 것
- ㄴ. 경제성
- ㄷ. 병리조직학적 평가에 대한 적합성이 높을 것
- ㅍ. 약물의 효력과 폐해를 고려할 것

3. 죽음과 관련된 동물의 행동 방식

죽음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공포, 불안, 염려를 포함한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부드러운 보정(완벽히 낮익고 안전한 상태에서의)과 주의 깊은 보살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다루어지는 동물에 대해 차별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동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 있다. 해로운 자극에 대한 행동과 생리적 반응은 스트레스성 발성(짖기), 탈출 시도, 방어적 또는 방향을 바꾸는 공격성, 몸부림치는 것, 배뇨, 배변, 타액 분비, 항문낭액 배출, 동공 팽창, 심박 박동 증가, 땀 흘리기, 반사 골격 근육의 수축, 떨림, 근육 경련들을 포함한다. 의식이 있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는 동물들도 이런 반응들 중 일부를 보인다. 몇몇 종들, 특히 개, 토끼나 닭들에게서 두려움은 부동 또는 죽은 척을 하기도 한다. 이 부동 응답은 동물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성 발성(짖기), 두려움 가득한 행동, 놀란 동물들에게서의 어떤 냄새가 페로몬이 나오는 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²

4. 개에서 비인도적인 도축 방법

개의 도축 및 안락사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립이 되어 있다.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축방법은 비인도적이며 잔인한 도축으로 분류되어 있는 방법들이다. 인도적인 도축방법을 고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 연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며 행동성이 큰 동물을 보정하며 큰 고통 없이 죽음을 맞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발상자체에 무리가 있다.

이런 기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되어 있고 계속 인도적인 도축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소, 돼지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비인도적인 안락사 시행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락사의 방법으로는, 감압(decompression), nitrous oxide; 질소산화제, 수중질식, 목 자르기, 목뼈 꺾기, 척수빼기, 방혈, 감전, 총살 (비상사태 발생 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당 동물을 이송할 수 없는 경우에 현장에서 안락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허용), 공기색전증, 질소 혈관내 주입, 스트리크닌(strychnine: 신경흥분제), 염화수산물, 카페인, 니코틴, 황산마그네

숨, 염화칼륨, 석시닐콜린 (succinylcholine: 단시간의 전신근육 이완제), 클로라이드 (chloride: 염화물) 성분 (sucostrin, U-THA-Sol, Anectine, Quelicin Chloride, Scoline Chloride) 그리고 근육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펜토바비탈의 복합제의 사용 등이다. ⁵

• OIE에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방법(2009)⁶

- 아세톤에 의한 마취사
- 공기전색증
- 청산염
- 익사
- 감전사
- 동사
- 신경근육차단제(Succinylcholine, Potassium chloride, Magnesiumsulfate, Strychnine, Nicotine, Caffeine, Magnesium sulfate, Potassium chloride 등)의 단독사용(진정제와의 혼합사용 시에는 가능)
- 살충제, 독약, 화학제제 등의 사용

5. 현재 축산물의 도축과정과 개의 도축과정

도축방법 뿐 아니라 개를 먹거리로 하기 위한 도축과정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다. 이 기준 역시 소, 돼지 등과 관련하여 얘기를 하고 있으나 먹거리로서 연구자체가 되지 않은 동물에 대해 현재 소, 돼지의 도축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발상자체에 무리가 있다.

(1) 국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도입

국내에서는 도축장의 위해요소 모니터링을 위해 모든 도축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축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소, 돼지, 닭 등 도축장을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실시하였다.

이 HACCP 체계에 의한 축산물의 위생관리제도는 FAO/WHO 합동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지침서에 근거한 기본개념으로써 최근선진국의 축산물위생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종합적인 자율규제방법이다. 해외 위생 기준(미국 농무성(USDA)은 1996년 7월 농무성이 감시하는 모든 육류 및 가금류 처리장의 공정관리체계로서 HACCP 실행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축산물생산업소의 특정 HACCP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그 설정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각각의 축산물처리과정에 대한 HACCP 일반모델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호주에서는 일부 작업장에 HACCP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97년 1월부터 모든 축

산물작업장에 전면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96. 12월에 도축장법 시행규칙에 HACCP 근거를 마련하고 '98. 4월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2001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처리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고시(농림부고시 제 1998-49)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도축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축장의 HACCP제도 적용을 위한 일반모델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⁷

(2) 현재 축산물의 위해요소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자연독소, 병원성 미생물, 화학물질, 농약, 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약품, 인수공통 전염병의 병원체, 가축의 대사과정 또는 식육이나 우유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 기생충, 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축산물첨가물 또는 색소, 털, 먼지, 쇠붙이 등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부착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한다.

HACCP는 위의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공정을 말한다.

<표3-14> 축산물의 생물학적 위해 및 성장 특성

병원체	성장온도(°C)	pH	최소 수분활성도(Aw)
<i>Bacillus serus</i>	10 - 48	4.9 - 9.3	0.95
<i>Campylobacter jejuni</i>	30 - 47	6.5 - 7.5	
<i>Clostridium botulinum</i>	3.3 - 46	> 4.6	0.94
<i>Clostridium ferfringens</i>	15 - 50	5.5 - 8.0	0.95
<i>Escherichia coli O157:H7</i>	10 - 42	4.5 - 9.0	
<i>Listeria monocytogenes</i>	2.5 - 44	5.2 - 9.6	
<i>Salmonella</i>	5 - 46	4 - 9	0.94
<i>Staphylococcus aureus</i>	6.5 - 46	5.2 - 9	0.86
<i>Yersinia enterocolitica</i>	2 - 45	4.6 - 9.6	

생물학적 위해로서 주요 병원성미생물로는 바실러스균(*Bacillus serus*), 캄피로박터균(*Campylobacter jejuni/coli*), 크로스트리디움균(*Clostridium botulinum* 및 *Clostridium ferfringens*), 병원성 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H7*), 리스테리아균

(*Listeria monocytogenes*),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 typhimurium* 등),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예시니아균(*Yersinia enterocolitica*)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있다

- 주요 기생충

Trichinella spiralis,

Taenia saginata ,

Toxoplasma gondii,

Balantidium coli ,

Cryptosporidium spp.

• 화학적 위해

화학적 위해의 종류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농약, 항균물질, 호르몬제제, 착색제, 포장용기, 축산물첨가물, 윤활물질, 표면코팅물질, 세척제 등 매우 다양하다.

<표3-15> 축산물의 화학적 위해 요소

구 분	위 해 (요 소)
원료	농약, 항균물질, 호르몬제, 독신, 중금속 착색제, 잉크류, 포장제
공정	축산물첨가물 : 보존료, 향료
건물 및 장비	윤활유, 페인트, 표면코팅물질
위생	농약, 소독제, 세척제
저장 및 유통	모든 종류의 화학제, 교차오염

• 물리적 위해

물리적 위해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위해요소는 축산물에서는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인체에는 유해한 질병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물리적 위해는 많은 원인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으며, 오염된 원료, 잘못 설계되거나 유지 관리된 시설이나 기구, 공정과정중의 문제 또는 종업원의 부적절한 훈련 및 부주의한 작업 등을 들 수 있다.

<표3-16> 축산물의 물리적 위해 요소

위해(요소)	원인(물질)
유리	병, 항아리
금속	너트, 볼트, 철사
돌	원료
플라스틱류	포장재
뼈(골)	원료
탄알/주사바늘	동물포획 및 예방 치료 시에 사용되는 물질
장신구/휴대품	펜, 연필, 단추

(소 도축장 HACCP 일반모델, 농림부, 1999)

위에 언급한 것은 축산물에 적용되는 위해요소이다. 국내외에서 개의 식용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위의 위해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축산물 도축 공정과정

- 위생관리기준
- 미생물검사
- HACCP 팀 구성 및 계획
- 제품설명서 작성
- 공정흐름도
- 위해 분석
- 중요관리점
- 허용한계치
- 감시방법
- 개선조치
- 기록유지
- 검증

HACCP 지침에는 위 단계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다. 도축부터 도체작업, 포장, 유통까지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 기준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수정하고 체계화되고 있는 상태이나 여러 기준들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 특히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항생물질을 사료에 배합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높은 항생제 잔류에 대한 보고도 많으며 항생제 내성 및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등의 원인을 축산물의 높은 항생제 잔류량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개의 경우에서

도 공장식 축산 형태를 띠면서 질병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항생제, 스테로이드 사용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는 현재 축산물 잔류량보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여러 사람의 타액이 섞인 잔반 사육으로 개의 인수공통 전염병, 검증이 되지 않은 식중독균, 열악한 사육환경과 질병관리가 되지 않은 곳에서의 무분별한 항생제, 스테로이드 사용 등 개의 공장식 사육시설에 대한 국내외에서는 질병실태조사 자체가 없고 식육에 존재하는 개와 관련된 질병에 검출할 연구조차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청,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에서 개와 관련된 연구는 광견병, 브루셀라병, 심장사상충 등과 식약청에서 하절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가 전부인 상태이다. 영양학적으로 평가하는 논문만이 국내에서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질병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검증할 수 있는 연구방법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개를 도축공정에 포함시킨다는 언급은 소, 돼지 등과 같은 축산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개를 먹거리로 한 연구자체가 없고 이를 연구하는 과학자 역시 없는 상태에서 개를 현행법에 넣으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주장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 개고기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동물자유연대, 2008
2. AVMA 가이드라인, 2010
3. 안용근. 개고기 식용이 위생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미치는 영향. Korean J. Food & Nutr. Vol. 23. No. 1, 124~133, 2010
4. AHA 가이드라인, 2010
5. HSUS 가이드라인, 2010
6. OIE 인도적인 도축 기준, 2009
7. 소 도축장 HACCP 일반모델, 농림부, 1999

제 7 절 실태조사 - 유통과정

1. 서론

개고기 유통은 농장, 도축, 도매, 소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농장은 소, 돼지, 닭 등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영세 농장은 도태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형화된 농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도축을 하여 유통하는 곳도 있으나 사육후 도축장으로 넘기는 곳이 대부분이다. 도축장에서의 도축비용은 1~3만 원 정도이며 소규모 농장의 경우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농장자체에서 도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도축장 이후로는 도매업을 하는 곳에서 대부분 담당을 하며 00축산이란 회사이름으로 육견도매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전국의 보신탕집, 건강원 등으로 대부분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유통단계 없이 농장에서 바로 보신탕집, 건강원으로 가거나 소매업 자체적으로 수요를 맞추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중국산 개고기의 유통이 성행한다는 제보가 확인이 되고 있다. 공식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보따리장수들의 적발이 검역통계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53건이 적발되었다.¹ 인터뷰에서도 국내 개고기 가격의 하락 원인을 국내 수요 감소보다 중국산 개고기 유통의 성행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개고기 유통은 법적인 규제가 미흡한 상태 하에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이미 산업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국별로 영농법인이 다수 있으며 유통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는 상태이다.

2. 개식용 산업의 유통과정

아래는 대규모 육견 도매업을 하는 곳에서 분류해 놓은 조직 체계이며 조직 별 임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개식용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광축산(<http://www.okbosin.co.kr>)²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 산지중상인
- 각 지역의 책임자(수급지역)
- 본점의 직원 및 총책임자
- 직영작업장 및 도 소매직영점
- 대도시주변의 도매(나까마)직영점

(1) 산지중상인

산지에서 물건을 수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전체적인 사육두수를 파악하

는 것이 첫째다.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및 수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현재 사육되고 있는 사육두수와 현시점에서 상품성이 있는 육견수, 1개월 후 상품성이 있는 육견수등 미래에 상품성이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 지역별, 사육자 신상명세 및 판매성향, 시기 분석, 사육되고 있는 육견의 양 과 질 및 종류별, 고객카드나 수첩, 좀 더 과학적 접근이라면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하는 등 전체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매입기술이다. 개 사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 하고 의문이 있을지 모른다. 개는 종류도 다양하고 육질도 천태만상이다. 따라서 매입하는 방법도 거기에 맞춰 적절한 매입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서론에서 서술한 시장상인들의 상인문화를 잊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으로 기름장사는 되박장 사이고 고기장사는 저울장사란 말처럼 산개를 사는데는 저울장사로서 승부수를 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기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동해서 산지의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의 감량은 자신이 책임져야 산지 책임자 역시도 그 현장에서 저울질한 수치에 맞춰 계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산지중상인 아는 사실이지만 산지에서는 서로 간에 타당한 방법으로 무더기 흥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근량, 종류, 육질 등 여러 부류에 따라 적절한 흥정선이 산지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며 만약 저울로 달자고 한다면 모든 것을 점검한 뒤에야 임해야 할 것이다.

(2) 각 지역의 책임자 및 지점장(매입부분)

각 지역의 책임자는 그 지역 중상인의 대표이며 영광축산의 핵심구심점중 하나라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육견 수급상 불확실한 경우가 허다한데, 가격상승과 삼복 등 많은 수요를 늘려야 할 경우와 추석이 지난 후 적은 수요와 가격하락, 질병 등 앞치는데 덮치는 식으로 밀려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요는 많은데 가격이 내리는 이변도 있다. 아무리 본점에서 지시한 대로 한다 해도 잘되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큰 흐름의 원칙은 육견시장도 벗어나지 않는데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각 지역의 책임자는 본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는 사람 다루는 일이다.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산지중상인인데 산지중상인들과 유대관계가 확실하지 않고는 산지중상인 언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확실 존재이기 때문이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치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바로 거기에 그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장사에서 승부사란 신용의 축척이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장사만큼은, 적과아군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저 사람은 확실히 내 사람이다 해도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상인의 대표라면 적어도 중상인을 속이는 일이나, 신용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행동이나 언변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아울러 본점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은 과감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 역시도 중상인과 본점을 견제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확실한 존재로 중상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며 그 기반을 바탕으로 부을 축척해 올바른 곳에 사용한다면 그 또한 자신 스스로도 떳떳한 일이 아닌가 한다.

(3) 직영작업장 및 도·소매직영점(매출부분)

판매에서의 핵심은 고정 거래처 확보 및 자금관리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도 감량을 줄여야 산다. 그만큼 개의 사양관리도 중요하다고 본다. 단골확보에는 기본예절과 손님이 주로 쓰는 물건의 성향이나 육질 이외에도 신상명세 및 평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도매 손님의 경우엔 손님이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확실한 단골이라면 내가 어려울수록 도와주는 고객이 진실한 단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금관리는 단골확보와는 상반된 이야기로 들어줄지 모르나 앞으로 추세를 보나 상황으로 보아서는 아무리 단골 고객이라도 외상단골은 단골손님이 아니라고 보아야 된다. 한 번의 외상은 두 번 세 번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것이 누적되어 작업장 운영에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작업장의 신용도 추락 및 본점에 막대한 외상거래가 이어져 결국에는 영광축산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을 주기 때문에 외상 거래를 파고드는 거래처는 요주의 거래처(적색거래선)로 구분해서 따로 계정에 올려야 한다. 단골 거래처 관리는 수시로 연락을 취한다거나 여러 가지 판매기법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작업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로는 원가절감이다. 최대한의 비용절감도 판매수익에 못지않은 일로 자금관리에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여서는 다른 작업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의 사양관리다. 지방에서 올라온 개는 지칠 대로 지친상태인데 사양관리에 조금이라도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 개는 며칠 못가고 질병에 걸리고 만다. 개가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에 비타민제와 영양제를 투여하고 기호도가 높은 사료를 주어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주야간의 온도차가 15도 이상 격차가 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물량을 적게 받아 빠른 시간 내에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감량은 바로 매입원가와 직결되어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담당책임자는 이점 명심하기를 바란다.

(4) 대도시주변의 직영 중개상(나까마)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점까지는 중개상의 역할이 영광축산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보면 다름이 없는 중책이다. 판매부분의 대구획 정리도 직영 중개상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영광축산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 두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판매부분에서 최상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도시외곽에서 도소매 작업장과 본점의 측면지원자로 그 역할에 중요한 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견유통에서 해맑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위치다. 장사꾼과의 거래가 주력인 위치에서 신용분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격과 수요동향, 공급물량의 유동적 대처등 어떤 상황에 부딪쳐도 본

점과 유기적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본점의 지시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본점을 물동량 공급기지로서 본다면 직영중계상은 최전방의 전투사령부로서 각 작업장에 원활한 물류조달과 정보제공을 들 수 있다. 물건 재고도 전체적 흐름에 따라가 감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산지 시세 움직임을 작업장에 전달하고, 아울러 작업장 전체의 흐름도 본점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도 중요하다.

다음 사항은 자금 관리다. 자금관리는 작업장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상거래는 절대 사절하는 게 정수다. 첫 거래 시 발생하는 기본외상은 어쩔 수 없는 보증금이라고 해도 액수가 작을 경우에 한하고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래 선은 상호신뢰에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영업상 고정투자비용을 최소화 시켜 장래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시켜 말한다면 인력관리의 정확한 배치다. 도매와 작업장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영업 전략상 인력의 효율성과 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 영업 인력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숫자만 늘리는 극대화가 아닌 효율의 극대화란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거래 선수와 최대 판매량의 정확한 데이터가 요구되며 그 요구에 맞춰서 서로가 밀어주고 단결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때 목표의 초과달성도 무난히 해결되리라 본다. 보편적으로 1인의 거래처 관리는 소매부분은 약60개, 거리에 따라 차등이 적용되나 도매부분은 20여개 정도로 본다.

다음은 시간 관리다. 각각의 능력도 중요하나, 능력과 더불어 시간관리란 소매부분의 신용과 직결되며 특성상 무작위 주문으로 들어오는 소매라인의 합리화와 아울러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거래 선의 양해를 얻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간배분의 원칙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간과 외부온도 따른 산개 도매에서의 더욱 더 중요한 변수는 시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을 말해주는 자체실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운송시 영광에서 서울까지 운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 걸린다면 외부온도가 섭씨 10도 미만일 경우 100/2kg이 감량으로 작용하고 섭씨 30도 미만일 경우에는 100/4kg 섭씨 30도 이상에서는 100/6kg정도가 감량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나까마 「중개상」 하치장에서 감량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있다. 특히 여름철의 하치장 감량은 마진율에 비교해보면 평균 감량이 단가 5000원 이상시에는 마진율의 80%를 점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3. 중국산 개고기 유통

인터뷰시 중국산 개고기의 유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수도권에 유통되는 개고기의 다수가 중국산 개고기이며 정식적인 유통이 아니고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통계에 의하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53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양이 400kg로 극히 적은 양이었다.¹

국내에서 유통되는 개고기 뿐 아니라 중국에서 유통되는 개고기는 더더욱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은 관련된 기사 내용이다.

(1) 관련기사

• "개고기 30%는 중국산... 공공연한 비밀"(아시아 경제, 2011.7.28)

24일 중북 앞두고 경동시장 가보니

“중국산 아니죠?” 개고기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혹시나 싶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돌아오는 대답은 백이면 백 “국산이죠, 중국산 개고기는 없습니다”.

식당 주인들의 이 같은 호언장담과는 달리,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개고기'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월 먹여서 키웠는지도 모르고 검역도 안 거쳐 '보양식'이 아니라 '유해식품'일 수 있는 밀수품이 대부분이라는 의혹도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중북을 사흘 앞 둔 21일에 찾아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국내에서 손꼽히는 개고기 도·소매 및 도축 시장인 이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식료품 상점 주인 김 모 씨는 비정기적으로 새벽 1~2시께 시장에 들어오는 트럭 이야기를 꺼냈다. 중국산 개고기 얘기였다. 김씨는 “요즘도 자주 목격하는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은 듯 “밀항선 타고 들어온 중국산 개들인데 몰래 가져와야 하니까 보통 새벽에, 어찌다 한 번씩 트럭에 실려 온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서 개고기 도축업과 도매업을 하는 이 모 씨의 설명이 김 씨의 말을 뒷받침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재래시장에도 개고기 도·소매 점포를 갖고 있다는 그는 “우리 가게는 중국산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뒤 “사실 비정상적인 경로로 중국산 개들이 들어온다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씨는 “밀항을 통해 들어오면 국내 대형 도축업자들에게 연락이 간다”면서 “보통 한 유통업자가 거래하는 농장이 200여 군데 되는데, 한 명의 도축업자에게만 중국산 개고기가 들어와도 순식간에 퍼진다”고 귀띔했다. 밀항의 경로는 '중국 현지 개 사육업자-국내 유통업자-작업장(도축장)'이며, 국내 유통업자의 경우 '개장수'로 불린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중국산 개고기는 국산 개고기와 확연히 다른 형태로 유통된다는 게 이 씨와 김 씨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의 공통된 설명이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개고기는 산 채로 잡혀 내장과 피, 뼈 등이 제거되지 않은 채 생고기 상태로 거래되는 국산 개고기와 달리 내장·뼈 등이 모두 제거된 채 냉동 상태로만 유통된다. 밀수되는 동안 부패를 막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중국산 개고기는 근 수를 재는 방법도 국산과 다르다. 국산 개고기가 한 근에 600g이라면, 중국산 냉동 개고기는 한 근에 300~400g이라는 얘기다. 같은 부피라면, 내장과 뼈 등이 제거된 중국산 개고기에 살코기가 더 많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개고기 가운데 적어도 20~30%가량은 중국산이고, 중국산이 국산보다 근당 최소 몇 백 원은 싸기 때문에 중국산으로만 장사를 할 경우 국산만으로 하는 것보다 1년에 1000만 원 이상 적게 들일 수 있다고 상인들은 설명했다.

• 중국에서 청산가리 든 개고기 14t 적발 폐기(연합뉴스 2003. 8. 14)

중국 저장(浙江)성 위생당국은 청산가리가 든 개고기 14.7t을 적발,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신화사의 이 같은 보도는 한국에 상당량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개고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린잉(林瑩) 저장성 위생청 위생감독처 처장은 지난 1주일간 성내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청산가리가 든 개고기 14.7t을 수거, 폐기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청산가리 개고기 사건은 저장성 자싱(嘉興)시에 이런 개고기가 나돌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위생당국이 치어령쿠스예(企鵝冷庫實業)회사 냉동 창고에서 문제의 개고기 3천726kg을 적발한 후 수사를 확대해 일단 일단락됐다.

당국에 체포된 중(鐘)모 씨 등 혐의자 3명은 문제의 개고기는 상하이(上海), 장쑤(江蘇)성, 자싱 등에서 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고기는 대부분 농촌에서 구입한 토종개들인데, 때려잡기가 쉽지 않아 포살에 청산가리 등 독극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고기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된다고 위생 당국은 밝혔다.

중국에서는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동북 3성의 조선족과 남부지방의 중국인들은 개고기를 즐겨 먹고 있으며, 중국산 개고기가 한국에 상당량 수입되고 있다.

4. 실태조사

(1) 현장조사



<그림3-33> 경주 안강시장



<그림3-34> 안동 중앙시장



<그림3-35> 서천 시장

<그림3-36> 서천 시장 내 건강원의 냉동고에서 보관중인 개식육

경주, 안동, 서천에서 중국, 베트남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경주 안강시장에서는 케이지가 제작된 트럭에 개를 싣고 판매하거나 고른 후 즉시 도축작업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안강시장, 중앙시장, 서천 시장 모두 개식육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앞에 버젓이 전시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



<그림3-37>부산 구포시장(영업장 앞 전시된 개)

<그림3-38>부산 구포시장 영업장 앞 작업대



<그림3-39>부산 구포시장
(고양이, 토끼, 야생동물 취급 문구)



<그림3-40>영업장 앞 냉장고에 전시된 개식육



<그림3-41> 성남 모란시장 영업장 앞에
전시된 개들



<그림3-42> 영업장 앞 냉장고에 전시된 개식육

부산 구포시장, 성남 모란시장은 영업장 앞에 개를 전시해 놓고 이를 바로 도축하고 있으며 영업장 앞 냉장고에 개식육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다. 모란시장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행하고 있으며 위 사진의 상황의 업소가 즐비해 있다.

(2) 인터넷 상거래 실태

쇼핑몰 등에서는 개고기 관련해서는 판매가 거의 되고 있지 않으나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총 여덟 개 업소에서 개소주의 판매가 확인되었다. 다음은 인터넷 상거래를 하고 있는 곳의 업체이다.

1) 개소주 인터넷 상거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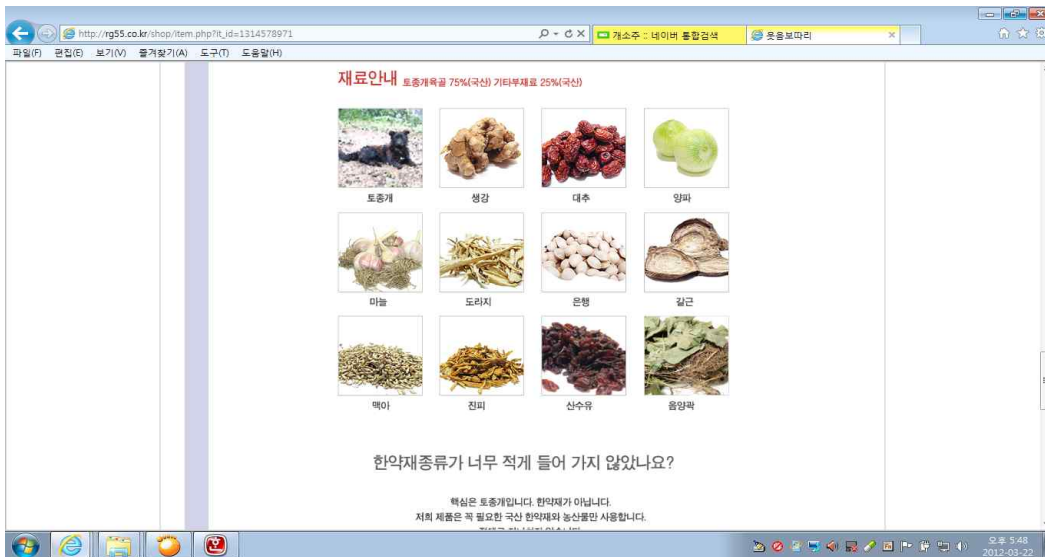
- 인터넷 쇼핑몰 A 업체에서 개소주를 건강식품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음

<http://finding.about.co.kr/Search/Search.aspx?DisplayCategories=2400000&istop=y&keyword=%ea%b0%9c%ec%86%8c%ec%a3%bc>



<그림3-43>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소주 판매

- http://rg55.co.kr/shop/item.php?it_id=1314578971



<그림3-44>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소주 인터넷 상거래(1)

- http://www.wellbeing-i.com/way4/shop/item.php?it_id=1148960869



<그림3-45>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소주 인터넷 상거래(2)

- http://www.welljuice.kr/front/php/category.php?cate_no=24
- http://www.jshome.co.kr/menu_02.html
- <http://www.mpys.co.kr/>
- <http://www.guamh.com/>
- <http://www.dufarm.co.kr/>
- <http://www.신호건강.kr/>

2) 개고기 인터넷 상거래 현황

이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고기 판매가 성행하였으나 동물보호단체의 항의와 쇼핑몰 정관에 의해 개고기 판매가 대부분 없어졌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다음, 네이버 검색한 결과 다음에서는 검색이 안 되며 네이버에서 한군데가 검색되었다.

- http://dogmeat.kr/shop/list.php?ca_id=0130



<그림3-46>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고기 인터넷 상거래

참고문헌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정보검색
2. <http://www.okbosin.co.kr>
3. 아시아 경제, 2011.07.28, "개고기 30%는 중국산... 공공연한 비밀"
4. 연합뉴스, 2003. 08. 14 "중국에서 청산가리 든 개고기 14t 적발 폐기"

제 8 절 개식용 관련 국민 의식 조사

1. 기존조사 분석

(1) 연령별 조사 결과

1) 청년층

- 대학생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성별, 지역별 섭취실태 및 섭취요인에 관한 연구¹⁾

<표3-1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건강보조식품 섭취현황

	Male					Female					N (%)
	Seoul	Incheon	Kyunggi	Chung-chung	Kyung-sang	Seoul	Incheon	Kyunggi	Chung-chung	Kyung-sang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Fiber-processed food	3 (7.9)	3 (3.4)	0 (0.0)	3 (3.5)	2 (4.0)	27 (6.9)	1 (2.0)	9 (9.7)	19 (8.3)	7 (7.5)	
Low calorie food	3 (7.9)	0 (0.0)	1 (1.1)	2 (2.3)	0 (0.0)	19 (4.8)	2 (4.0)	0 (0.0)	12 (5.3)	2 (2.2)	
Herbs and chinese medicine											
Ginseng (red)	3 (7.9)	6 (6.7)	4 (4.3)	1 (1.2)	2 (4.0)	15 (3.8)	2 (4.0)	1 (1.1)	8 (3.5)	4 (4.3)	
Deer antlers	4 (10.5)	3 (3.4)	6 (6.5)	9 (10.5)	2 (4.0)	25 (6.4)	2 (4.0)	3 (3.2)	10 (4.4)	5 (5.4)	
Chinese medicine	2 (5.3)	7 (7.9)	1 (1.1)	14 (16.3)	2 (4.0)	23 (5.9)	5 (10.0)	5 (5.4)	22 (9.6)	7 (7.5)	
Vitamin-mineral supplements											
Multivitamin	3 (7.9)	12 (13.5)	10 (10.8)	7 (8.1)	4 (8.0)	44 (11.2)	10 (20.0)	12 (12.9)	24 (10.5)	13 (14.0)	
Fat-soluble vitamin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0 (0.0)	0 (0.0)	0 (0.0)	0 (0.0)	
Water-soluble vitamin	3 (7.9)	5 (5.6)	15 (16.1)	7 (8.1)	9 (18.0)	45 (11.5)	8 (16.0)	17 (18.3)	23 (10.1)	11 (11.8)	
Calcium	0 (0.0)	0 (0.0)	3 (3.2)	0 (0.0)	1 (2.0)	4 (1.0)	2 (4.0)	2 (2.2)	1 (0.4)	0 (0.0)	
Iron	0 (0.0)	0 (0.0)	0 (0.0)	0 (0.0)	0 (0.0)	8 (2.0)	1 (2.0)	0 (0.0)	1 (0.4)	0 (0.0)	
Dietary supplements											
Grape seed oil	2 (5.3)	4 (4.5)	5 (5.4)	4 (4.7)	4 (8.0)	14 (3.6)	1 (2.0)	4 (4.3)	10 (4.4)	5 (5.4)	
Lactic acid bacteria	8 (21.1)	22 (24.7)	15 (16.1)	23 (26.7)	16 (32.0)	116 (29.6)	10 (20.0)	27 (29.0)	66 (28.9)	24 (25.8)	
Others	1 (1.6)	3 (3.3)	3 (3.3)	4 (2.7)	1 (2.0)	15 (3.6)	1 (2.0)	5 (5.5)	11 (4.9)	10 (10.9)	
Health foods											
Gagagi, Gasaju	5 (13.2)	17 (19.1)	16 (17.2)	11 (12.8)	6 (12.0)	10 (2.6)	2 (4.0)	1 (1.1)	11 (4.8)	3 (3.2)	
Black goat	0 (0.0)	0 (0.0)	1 (1.1)	0 (0.0)	0 (0.0)	1 (0.3)	0 (0.0)	0 (0.0)	0 (0.0)	0 (0.0)	
Deer blood	1 (2.6)	0 (0.0)	1 (1.1)	0 (0.0)	0 (0.0)	1 (0.3)	0 (0.0)	0 (0.0)	0 (0.0)	0 (0.0)	
Safflower seed oil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0 (0.0)	
Others	0 (0.0)	7 (7.9)	12 (12.9)	1 (1.2)	1 (2.0)	25 (6.4)	3 (6.0)	7 (7.5)	9 (3.9)	2 (2.2)	
Significance	0.007 ¹⁾					N.S. ²⁾					

1) **: p<0.01 by Chi-square test

2)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본 조사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영양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818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01년 11월 5일에서 2001년 12월 5일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설문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역 249명, 인천지역 97명, 경기지역 142명, 충청지역 217명, 경상 및 부산지역 92명 등 797명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청년층에서의 개고기 음식 선호도는 전체 10%였다. 남성(7%)이 여성(3.3%)보다

개고기 관련 음식을 훨씬 선호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선호도가 높았다.

2) 중장년층 이상

•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 식품의 섭취 실태²

표출법에 의해 대도시로 서울(345명), 부산(248명), 대구(200명), 대전(185명), 광주(200명), 인천(203명)의 6개 지역과 중소도시로 수원(111명), 안양(101명), 성남(98명), 청주(99명), 전주(100명), 진주(89명), 춘천(109명), 천안(100명)의 8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인지, 구입방법, 정보출처, 추후 섭취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은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에 대해 48.9%가 대충 안다. 35.3%가 모른다. 15.8%가 잘 안다고 응답하여 판매 전에 효능이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 식품의 오남용 및 부작용 등의 인식 없이 섭취하여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개고기, 흑염소 등 보신식품군 섭취자의 56.7%를 차지하였고 약초 및 한약군 섭취자의 52.2%에 해당하였다. 이에 반하여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식이섬유가공품 등 특수영양식품군 사용자의 66.7%를 차지하였고, 식물추출물 발효, 키토산 등의 건강보조식품군 섭취자의 53.5%에 달하였으며, 비타민, 칼슘 등의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사용자의 42.8%를 차지하여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남자는 한약과 보신에 대한 개념이 강한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고학력 남자는 서구식 영양보충개념으로 특수영양식품,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및 건강보조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개고기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6.4%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선호하고 있었다.

<표3-18> 50 대 이상 성인의 성별 건강보조식품 섭취현황

Table 3. Category of supplements taken by subjects N(%)

Category	Sex		Total	Significance
	Male	Female		
Food for special dietary uses				
Fiber processed food	4(1.3)	6(1.1)	10(1.1)	
Low calorie food	0(0.0)	1(0.2)	1(0.1)	
Others	1(0.3)	4(0.7)	5(0.6)	
Herbs and Chinese medicine				
Ginseng(red ginseng)	35(11.3)	34(5.9)	69(7.8)	
Deer antlers	13(4.2)	35(6.2)	48(7.2)	
Chinese medicine	60(19.3)	114(20.0)	174(19.7)	
Others	5(1.6)	7(1.2)	12(1.4)	
Vitamin-mineral supplement				
Multivitamin	34(11.0)	114(20.0)	148(16.7)	
Fat-soluble vitamin	2(0.6)	12(2.1)	14(1.6)	
Water-soluble vitamin	12(3.9)	22(3.8)	34(3.8)	
Calcium	8(2.6)	65(11.4)	73(8.3)	
Iron	3(1.0)	4(0.7)	7(0.8)	
Others	9(2.9)	10(1.8)	19(2.3)	
Dietary supplements				
Embryobud	0(0.0)	0(0.0)	0(0.0)	
Grape seed oil	2(0.7)	2(0.4)	4(0.5)	
Squalene	7(2.3)	8(1.4)	15(1.7)	
Spirulina, Chlorella	2(0.7)	1(0.2)	3(0.3)	
Yeast	0(0.0)	2(0.4)	2(0.2)	
Lactic acid bacteria	1(0.3)	1(0.2)	2(0.2)	
Mushroom	9(2.9)	18(3.2)	27(3.1)	
Aloe	5(1.6)	8(1.4)	13(1.5)	
Apricot extract	1(0.3)	3(0.5)	4(1.5)	
Chitosan	7(2.3)	16(2.8)	23(2.6)	
Royal-jelly	2(0.7)	9(1.6)	11(1.2)	
Others	7(2.3)	11(1.9)	18(2.0)	
Health foods				
Geigogi, Geisoju	48(15.4)	9(1.6)	57(6.4)	
Black goat	8(2.6)	7(1.2)	15(1.7)	
Snake	1(0.3)	0(0.0)	1(0.2)	
Deer blood	8(2.6)	3(0.5)	11(1.2)	
Centipede	0(0.0)	1(0.2)	1(0.2)	
Safflower seed oil	3(1.0)	6(1.0)	9(1.0)	
Others	3(1.0)	7(1.2)	10(1.4)	
Others	11(3.5)	29(5.1)	40(4.5)	
Total	311(100.0)	573(100.0)	884(100.0)	

P < 0.001***1)

1) *** : p < 0.001 by χ^2 -test

• 춘천지역 60대 이상 노년층의 건강식품 섭취실태³

<표3-19> 춘천지역 60대 이상 노년층의 질병별 건강식품 섭취 현황

Table 7. The kinds of health food taken by the kind of disease

Health food		Without disease	Diabetes	Hyper-tension	Heart disease	Digestive disease	Neuralgia-Arthritis	Renal disease	Hepatic disease	Respiratory disease	Others
Ginseng products	No	8	6	2	0	4	11	0	1	5	3
	%	12.5	22.2	4.3	0.0	9.1	9.6	0.0	25.0	20.0	17.6
Deer antler	No	7	3	5	2	6	7	0	1	2	1
	%	10.9	11.1	10.6	25.0	13.6	6.1	0.0	25.0	8.0	5.9
Mushroom products	No	5	0	4	1	3	8	1	0	1	2
	%	7.8	0.0	8.5	12.5	6.8	7.0	20.0	0.0	4.0	11.8
Tonic medicine	No	14	9	11	2	11	34	3	0	4	2
	%	21.9	33.3	23.4	25.0	25.0	29.6	60.0	0.0	16.0	11.8
Kye-so-ju	No	7	3	3	0	5	11	0	1	0	0
	%	10.9	11.1	6.4	0.0	11.4	9.6	0.0	25.0	0.0	0.0
Black goat	No	8	1	7	1	5	13	0	0	1	0
	%	12.5	3.7	14.9	12.5	11.4	11.3	0.0	0.0	4.0	0.0
Blood of deer	No	2	4	2	0	0	1	0	0	3	0
	%	3.1	14.8	4.3	0.0	0.0	0.9	0.0	0.0	12.0	0.0
Royal jelly	No	3	4	3	1	5	9	0	0	1	0
	%	4.7	14.8	6.4	12.5	11.4	7.8	0.0	0.0	4.0	0.0
Aloe	No	2	3	4	2	6	8	1	0	3	1
	%	3.1	11.1	8.5	25.0	13.6	7.0	20.0	0.0	12.0	5.9
Squalene	No	2	0	0	0	1	1	0	0	1	0
	%	3.1	0.0	0.0	0.0	2.3	0.9	0.0	0.0	4.0	0.0
Chitosan	No	1	1	0	0	2	4	0	0	0	0
	%	1.6	3.7	0.0	0.0	4.5	3.5	0.0	0.0	0.0	0.0
The power of the silkworm	No	0	1	0	0	0	1	0	0	0	0
	%	0.0	3.7	0.0	0.0	0.0	0.9	0.0	0.0	0.0	0.0
Grape juice	No	3	1	5	0	2	5	0	1	0	4
	%	4.7	3.7	10.6	0.0	4.5	4.3	0.0	0.0	0.0	23.5
Pumpkin	No	9	3	6	1	6	17	1	1	1	2
	%	14.1	11.1	12.8	12.5	13.6	14.8	20.0	0.0	4.0	11.8
Snake	No	1	2	0	0	0	1	0	0	0	0
	%	3.1	7.4	0.0	0.0	0.0	0.9	0.0	0.0	0.0	0.0
Hongwhassi (red-flower seed)	No	1	0	2	0	1	4	0	0	0	1
	%	3.1	0.0	4.3	0.0	2.3	3.5	0.0	0.0	0.0	5.9
Total	No	64	27	47	8	44	115	5	4	25	1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 춘천지역 60대 이상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노년층의 10%가 개고기 관련 음식(개소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지역의 외식 실태조사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음식점과 음식의 선호도 조사

<표3-20> 부산 지역에서 성별, 연령층별로 싫어하는 음식 조사

표 7. 싫어하는 음식의 종류

(단위 : %)

내 용	성별		연령별								전체	순위
	남자	여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20대	30대	40대	50대		
응답자수(명)	252	290	71	62	71	81	67	58	72	60	542	
추어탕	8.7	14.5	16.9	11.3	21.1	14.8	10.4	8.6	2.8	6.7	11.8	5
곰탕	6.8	7.6	9.9	11.3	15.5	6.2	6.0	3.5	1.4	3.3	7.2	
곰창전골	15.1	23.8	18.3	25.8	28.2	23.5	29.9	10.3	11.1	8.3	19.7	2
돼지국밥	3.6	13.1	8.4	4.8	9.9	8.6	7.5	10.3	11.1	8.3	8.7	
카레라이스	13.1	4.5	0.0	1.6	2.8	6.2	6.0	12.1	16.7	23.3	8.5	
라면	7.9	4.8	1.4	0.0	4.2	4.9	1.5	13.8	11.1	13.3	6.3	
피자	20.2	7.9	2.8	1.6	1.4	16.1	11.9	8.6	23.6	45.0	13.7	4
꼬리곰탕	11.1	19.0	19.7	33.9	15.5	19.8	16.4	12.1	2.8	1.7	15.3	3
생선회	5.6	6.5	16.9	12.9	4.2	3.7	4.5	3.5	1.4	1.7	6.1	
장어구이	7.9	9.0	5.6	19.4	9.9	13.6	6.0	10.3	2.8	0.0	8.5	
보신탕	32.5	54.8	45.1	54.8	62.0	54.3	47.8	36.2	29.2	21.7	44.5	1
족발	4.0	7.9	1.4	12.9	8.4	7.4	10.4	3.5	2.8	1.7	6.1	
복지리	5.6	5.5	5.6	8.1	9.9	4.9	3.0	6.9	5.6	0.0	5.5	
쫄면	7.1	4.1	0.0	1.6	2.8	4.9	3.0	8.6	8.3	15.0	5.5	
햄버거	14.3	7.6	1.4	0.0	1.4	1.2	14.9	17.2	23.6	30.0	10.7	7
스파게티	15.9	6.5	7.0	1.6	8.4	8.6	7.5	19.0	16.7	20.0	10.9	6

중복선택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이유를 전체적으로 “맛이 없어서”가 5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혐오식품이어서” 33.1%, “체질상 거부하여서” 30.2% 순이었다.

싫어하는 음식 1위로 보신탕이 1순위였으며, 여성이 54.8%, 중, 고등, 대학생 등 젊은 층에서 싫어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표3-21> 부산 지역에서 성별, 연령층별로 섭취하지 않은 음식 조사

표 4.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종류 (단위 : %)

내 용	성별		연령층별			전체	순위
	남자	여자	학생층	청년층	장년층		
응답자수(명)	158	197	151	101	103	355	
부대찌개	26.6	34.5	47.0	14.9	23.3	31.0	7
추어탕	11.4	20.8	27.2	15.8	1.9	16.6	
양식부페	14.6	17.3	16.6	13.9	17.5	16.1	
곰창전골	32.9	44.7	55.0	40.6	15.5	39.4	4
돼지국밥	13.3	19.8	29.1	11.9	3.9	16.9	
비프스테이크	30.4	27.9	34.4	20.8	29.1	29.0	8
백반정식	15.8	16.8	32.5	7.9	1.0	16.3	
잡탕밥	32.3	39.6	49.0	36.6	17.5	36.3	5
꼬리곰탕	27.2	42.6	51.0	39.6	9.7	35.8	6
장어구이	19.0	20.3	30.5	20.8	2.9	19.7	
보신탕	46.2	74.1	72.8	65.3	41.7	61.7	2
함박스테이크	19.0	10.7	17.2	7.9	16.5	14.4	
복매운탕	36.1	47.2	59.6	42.6	16.5	42.3	3
수육백반	19.6	30.5	40.4	24.8	4.9	25.6	10
해장국	12.7	17.8	31.1	5.0	2.9	15.5	
복지리	58.9	66.5	74.2	73.3	36.9	63.1	1
대구탕	9.5	21.3	31.8	8.9	0.0	16.1	
스파게티	20.3	17.8	15.2	7.9	35.0	18.3	
회덮밥	20.9	31.5	47.0	20.8	2.9	26.8	9
응답자의 30% 이상인 종목 수	6	9	14	6	3	6	

중복선택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보신탕이 2순위에 속했다. 여성이 74.1%, 학생층에서는 72.8%가 섭취해보지 않았다.

• 반려견에 대한 태도와 개의 식용을 설명하는 경로 모델⁵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7~66세 사이의 남성 256명과 여성 414명 이었다. 그들의 연령은 남성이 33.55±12.61세, 그리고 여성이 33.61±12.03세로 성차가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남성이 섭식 경험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의사가 낮을수록 견육 섭취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동물의 복지에 관심이 더 많고 인간적이지만, 남성은 동물의 이용에 더 관심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조사의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2. 청년층에서 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청년층에서의 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조사 대상

<표3-22> 조사 대상(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구분	명(%)
성별	남	169명 (58%)
	여	121명 (41%)
	무응답	3명 (1%)
거주지	경기도	16명 (5%)
	광주	121명 (41%)
	대전	26명 (9%)
	서울	35명 (12%)
	충청남도	17명 (6%)
	기타 지역(참여자 10인 이하)	14명 (5%)
	무응답	64명 (22%)
계	293명 (100%)	

총 293명이 설문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4세였다. 남자가 58%, 여자가 41%였으며, 거주지는 경기도 5%, 광주광역시 41%, 서울특별시 12%, 대전광역시 9%, 충청남도 6%, 기타지역 5%, 무응답이 22%였다.

(2) 반려동물 사육 여부

<표3-23> 반려동물 사육 여부(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명 (%)
예	개	47명 (16%)
	고양이	24명 (8%)
	기타	11명 (4%)
	무응답	33명 (11%)
	계	115명 (39%)
아니오	아니오	176명 (60%)
	무응답	2명 (1%)
	총계	293명 (100%)

설문참여자의 39%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60%는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지 않았다.

(3) 개고기가 음식 섭취 경험 질문

<표3-24> 개고기 음식 섭취 경험 (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남	여	성별 확인 안됨
네	105명 (62%)	55명 (45%)	3명
아니오	63명 (37%)	66명 (55%)	-
무응답	1명 (1%)		
계	169명 (100%)	121명 (100%)	3명

지금까지 개고기 섭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설문참여자의 55%였으며 경험이 없는 사람은 44%였다. 이중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한 달에 1회-3%, 1년에 1회 이상-13%)은 14%로 구분되었다. 다른 조사에서 청년층에서 개고기의 섭취 빈도(10%)보다 약간 높았다.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의 52%가 개고기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남성(62%)이 여성(45%)보다 개고기 섭취 경험이 더 많았다.

(4) 잠재적인 개고기 섭취 대상자(추후 개고기 섭취할 의사가 있는 사람)

<표3-25> 잠재적인 개고기 섭취 대상자(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남	여	성별 확인 안됨
네(25%)	52명 (31%)	22명 (18%)	
아니오(66%)	95명 (56%)	95명 (79%)	
무응답	22명 (13%)	4명 (3%)	3명
계	169명 (100%)	121명 (100%)	3명

추후 개고기를 섭취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설문참여자의 25%가 섭취할 의사를 주었으며 66%가 섭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기존 섭취하는 사람보다 10%가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비교하였을 경우 남성(31%)이 여성(18%)보다 추후 섭취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의 16%가 추후 먹을 의사가 있다고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유무가 개고기의 선호도와 관련이 있으며 선호도가 더욱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조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경구전염병에 대한 인식 후 개고기 섭취 의사 변화

(개식용 시 여러 사람의 타액이 섞인 음식물 찌꺼기를 동물에게 급여하고 있는 상황과 해충의 오염 및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로 경구전염병의 매개체가 있을 가능성 언급)

1) 경구전염병에 대한 인식 유무

<표3-26> 경구전염병에 대한 인식 유무(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경구전염병 인식 유무	네	91명 (31%)
	아니오	201명 (69%)
	무응답	1명 (0%)

식용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에게 음식물찌꺼기가 주로 급여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경구전염병의 연구는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조사 대상자의 31%에서 이런 사실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었다.

2) 경구전염병에 대한 인식 후 개고기 섭취 의사 변화

<표3-27> 경구전염병에 인식 후 섭취 의사 변화(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경구전염병 인식후 개고기 섭취 의사	네	51명 (17%)
	아니오	229명 (79%)
	무응답	13명 (4%)

이전 문항에서 개고기 섭취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전체 25%였으나 경구전염병에 대한 인식 후 개고기 섭취의사가 17%로 8%하락하였다.

(6)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후 개고기 섭취 의사 변화

(집단사육 시 무분별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에 대한 사용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 가능성 언급)

1)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표3-28>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유무(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네	141명 (48%)
	아니오	152명 (52%)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은 48%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경구전염병의 인식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언론 보도 등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이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2)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후 개고기 섭취 의사 변화

<표3-29> 항생제 내성 인식 후 개고기 섭취 의사 변화(개식용과 관련된 인식 조사)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후 개고기 섭취 의사	네	44명 (15%)
	아니오	241명 (82%)
	무응답	11명 (3%)

이전 문항에서 개고기 섭취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전체 25%였으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후 개고기 섭취 의사는 15%로 하락하여 10%가 생각이 바뀌었다.

경구전염병에 대한 문항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을 하여 섭취 의사 변화가 더욱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7) 약물 주입으로 도살된 개고기 섭취 의사 변화

(석시닐콜린 등의 약물의 사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섭취 의사 질문)

<표3-30> 약물 주입으로 도살된 개고기 섭취 의사 변화(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약물 주입으로 도살된 개고기 섭취 의사	네	9명 (3%)
	아니오	270명 (92%)
	무응답	14명 (5%)

이전 문항에서 개고기 섭취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전체 25%였으나 약물 주입으로 도살된 개고기에 대한 섭취 의사 변화는 크게 하락하여 섭취의사가 있는 사람은 3%였다. 경구전염병, 항생제 내성, 약물 주입과 관련된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의사가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에서는 인체에 축적이 되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사용을 엄격히 금지 하고 있다. 보신음식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건강에 위해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후 섭취의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다.

(8) 개 도축에 대한 인식

(고압전류를 이용한 감전사, 목을 매는 질식사, 도구로 머리를 때리는 타격법 등의 도축이 인도적이고 적합한 방법인지 질문)

<표3-31> 개 도축에 대한 인식(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인도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다	네	11명 (4%)
	아니오	278명 (95%)
	무응답	4명 (1%)

거의 대부분(95%)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개도축의 방법 비인도적인 도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소, 돼지 등과 비교하여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도 주었다.

(9) 개고기의 영양가에 대한 인식

(소, 돼지, 닭고기 등과 비교하여 개고기의 영양가 인식)

<표3-32> 개고기의 영양가에 대한 인식(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다른 고기와 영양가 비교	비슷하다	139명 (47%)
	아니오	112명 (38%)
	더 뛰어나다	31명 (11%)
	무응답	11명 (4%)

개고기가 영양가가 뛰어나다는 의견은 11%였으며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영양가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다.

(10) 개고기가 다른 고기보다 나은 점에 대한 질문(중복응답 포함)

<표3-33> 개고기가 다른 고기보다 나은 점(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다른 고기보다 나은 점	무응답	152명 (51%)
	몸에 좋다	51명 (17%)
	맛이 좋다	40명 (13%)
	가격이 저렴하다	27명 (9%)
	영양가가 높다	20명 (7%)
	소화가 잘 된다	9명 (3%)

몸에 좋다, 영양가가 높다, 소화가 잘 된다 등 보신음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답안은 27%였으며 맛이 좋다는 문항을 선택한 사람은 기호 음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며 13%에 해당하였다. 지금까지 개고기가 건강관련음식으로 구분되고 보양탕, 보신탕 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 역시 개고기가 보신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잘못된 문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1)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와 다른가에 대한 질문

<표3-34>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와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의 차이 (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는 반려동물과 다르다.	네	111명 (38%)
	아니오	171명 (58%)
	무응답	11명 (4%)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38%였다. 잠재적인 섭식 의사가 있는 25%보다 13%나 높은 수치였다. 섭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식용목적의 개는 다르다고 개식용 논란에서 찬성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12) 개고기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

<표3-35> 전통음식으로서 개고기의 인식(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개고기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이다.	네	108명 (37%)
	아니오	172명 (59%)
	무응답	13명 (4%)

개고기가 우리나라 전통음식인가에 대한 물음에 37%가 전통음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역시 잠재적인 섭식 의사가 있는 25%보다 무려 12%나 높은 수치였다. 식용견, 전통문화 등 개식용을 찬성하는 논리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섭식의사가 없는 사람이 개고기를 전통음식으로 인식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13) 개고기는 앞으로 이어가야할 전통인가에 대한 질문

<표3-36> 개고기가 계속 이어가야할 전통인가에 대한 인식(개고기와 관련된 인식 조사)

개고기는 앞으로 이어가야할 전통음식이다.	네	37명 (13%)
	아니오	220명 (75%)
	무응답	36명 (12%)

개고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하는 전통이라고 답한 사람은 13%였다. 개고기 섭식 의사가 있는 사람, 개식용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개고기는 계속 이어가야할 전통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14) 기타 질문

1) 개고기 관련 음식을 먹는 이유(개고기 섭취자 구분 없음)

- 무응답 154명 (51%)
- 주변사람의 권유 56명 (19%)
- 맛이 좋아서 35명 (12%)
- 몸보신을 위해서 26명 (9%)
- 정력에 좋다고 하여서 5명 (2%)
- 기타 의견 24명 (8%)

무응답은 51%였으며 개고기 비섭식자의 답변으로 생각된다.

주변사람의 권유(19%)라고 답한 것은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회식이나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맛이 좋아서, 몸보신을 위하여, 정력에 좋다는 이유 등 본인 의지와 관련하여 섭취한 경우는 23%였다.

• 기타의견

- 어렸을 때만 먹었음
- 가족끼리 먹어서
- 부모님이 소고기(양고기)라고 속여서 먹은 적 있음
- 속아서
- 개고기인줄 모르고 섭취하였음
- 그냥
- 하나의 음식이다
- 다른 음식과 다를 게 없다 생각하여 거부감 없이 먹는다.
- 아무 것도 모르고 따라감
- 좋아하지 않고 한번 먹어봄
- 강제흡입
- 그냥 고기(육류)라고 생각됨(개고기도 고기임)
- 맛이 궁금해서 한번 맛보고 싶다(한번은 먹어보고 싶어서).
- 평생 안 먹을 것 같다.

2) 개고기를 먹어 본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한 답변

- 먹을 기회가 없어서 40명 (27%)
-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0명 (20%)
- 혐오스러워서 22명 (15%)
- 다른 고기들이 많이 있어서 먹을 이유가 없어서 21명 (14%)
-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어서 16명 (11%)

-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명 (1%)
- 무응답 4명 (3%)
- 기타의견 11명 (7%)

잠재적인 섭취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먹을 기회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27%였으며 개식용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68%였다.

• 기타의견

- 불교(종교적 이유)
- 개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 그냥 먹기 싫다(그냥 싫어서).
- 어릴 때부터 키워서 강아지를 먹는데 거부감 있음
- 개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하는 집안이라서
- 냄새가 역겹고 거부감이 들어서
- 집에서 안 먹어서
- 예전에 개를 많이 키워서

3) 개고기를 먹는 것이 합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

- 개의 생명에 대해 더 존중 하지 않게 될 것 같다.
- 다른 소와 돼지와 같이 시스템으로 합법화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다.
-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음식 못 먹는다.
- 적당한 사육방식, 인도적인 도축방법이 정착한다면 문제될 것 없다.
- 문제없다.
- 무분별하고 비윤리적인 도축이 증가한다.
- 애견인의 반대시위운동 및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애견인들이 가만 있진 않을 테니 시끌시끌하겠죠).
- 법이 생기면 개고기의 식용이 존속될 수 있다.
- 건강에 안 좋다(위생불량).
- 길거리에 유기견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좋은 의미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지금도 그렇지만 개도둑이 있어서 누군가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를 훔쳐 넘긴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곽지오, 이정희, 유혜은, 성현이, 장경자. 대학생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성별, 지역별 섭취실태 및 섭취요인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영양교육 참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5) : 639~653, 2002

2. 김진숙, 이미영, 정선희, 이정희, 김현덕, 이주희, 현대선, 장경자.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 식품의 섭취 실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6(5) : 798~808, 2001
3. 이희섭, 이혜숙, 이정애, 강금지. 춘천지역 60대 이상 노년층의 건강식품 섭취실태, 대한 지역사회영양학회지 6(4): 635-644, 2001
4. 부산 지역의 외식 실태조사-연령과 성별에 따른 음식점과 음식의 선호도
KOREAN J.FOOD & NUTR. 11(2) 200~210(1998)
5. 김세영, 서국현, 윤가현. 반려견에 대한 태도와 개의 식용을 설명하는 경로 모델, Kor. J. Vet. Publ. Hlth., 35 (3): 139-146 (2011)

제 4 장

개식용 관련 법령 분석 및 대응방안

제 1 절 개식용 관련 법령 분석

제 2 절 개식용 관련 대응 방안

제 1 절 국내 개식용 관련 법령 분석

1. 서론

현재 개식용 관련법은 크게 도축 부분까지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관, 도축 이후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식품부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개고기 등의 판매가 특별히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외적인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대외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개식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중국 등도 최근 국제 행사에 외교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였다.

지속적으로 개식용 업계에서는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대로 개식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국, 한국, 베트남 정도만 개식용 금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국도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최근에 정부에서 개식용 합법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음성적으로 개식용 산업은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농장, 도축, 유통 등도 예전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호수는 갈수록 줄고 있으나 대규모로 농장을 운영하거나 도축, 유통 단계까지 형성된 곳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식용 금지와 합법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나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식용 산업은 더욱 큰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 개식용 관련 정부의 대응

개식용과 관련한 시기별 대응방식은 크게 적극적 대응기, 부정적 대응기, 소극적 대응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적극적 대응기

적극기 대응기인 1975년 8월 28일에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를 수축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에서 도살 및 식육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물 보호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개와 개고기를 축산물 위생 처리법상 가축과 축산물에서 제외하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1978년 6월 13일 이루어졌다.

(2) 부정적 대응기

•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 정부의 대응은 개식용에 대한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부정적 대응기로 볼 수 있다. 1983년 1월 15일에는 각 시·도가 개고기를 혐오식품

으로 하여 판매행위를 제한하였는데, 대도시, 관광지 및 관광호텔 주변에서 혐오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각 시·도에서 고시로 제정하였다 (면단위 이하 지역으로 시·도지사 고시지역은 판매). 1983년 11월 1일에는 외무부에서 개도살 및 식용 금지 조치 요구가 있었고 1983년 11월 3일에는 농림부의 도살용 개 사육억제 지시가 있었다.

- 1983년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지시로 보건사회부는 대중음식점 혐오식품 조리·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농림부는 개도살을 금지하였다. 또한 1984년 1월 16일 농림부는 개도살을 일체 금지하도록 시·도에 지시하였고, 1984년 1월 30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개도살 및 식용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달되었다. 이때 대상 업소는 뱀탕, 보신탕, 토룡탕, 용봉탕, 궁벵이탕, 개소주집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의 사례는 없었으며, 동 고시는 현재 사문화되어 운용이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서울, 경기 이외의 타 시·도는 고시하지 아니함).

- 1984년 6월 8일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를 개정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혐오식품 판매를 금지토록 영업자 준수사항 개정하였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88올림픽 때 정부는 개식용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한국산 상품을 불매 운동한다고 하는 외국 동물보호가들의 위협에 대도시에서 보신탕 영업을 못하게 하고, 시골에서만 영업을 하게 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94호('84.2.21)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영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품위유지와 면모를 갖추기 위해 혐오식품영업행위 금지대상 및 지역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94호('84.2.21)로 운영하고 있다.

가. 금지대상영업

- 뱀탕, 보신탕, 개소주, 토룡탕, 용봉탕, 궁벵이탕 등 혐오감을 주는 영업

나. 금지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다. 영업금지 시기 : '84.4.30부터

(3) 소극적 대응기

- 1988년 올림픽 이후 이러한 제재는 형식적이 되어 정부의 소극적 대응기로 변화되고, 식용견 관련 산업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1989년 11월 22일에는 IFAW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는 외무부에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음식으로 먹는 것은 한국의 뿌리 깊은 음식문화이므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공개 장소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것만은 피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기 기간 중 1991년 5월 31일에는 동물학대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국내외 동물관련 단체의 주장 및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99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고기 식용문제는 2002 월드컵대회까지는 현행 대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1999년 8월 17일 김홍신 의원 등 의원 20인이 개고기가 식용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생관리가 절실하다는 인식하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농림부 소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개식용 관련 도살 및 처리 분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의 식견국 지정, 한국 상품 불매운동전개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이는 무산되었다.¹

- 2005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식용견 위생관리 정책연구”라는 정책연구과제를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하여 개식용 합법화를 위한 과정으로 판단되어 동물보호단체 및 여론의 못매를 맞은 적이 있다.

- 2008년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개고기 관련 음식에 대해 합법화를 추진하다 실패하였으며 근데 공교롭게도 2008년도부터 식약청에서는 하절기마다 개고기 취급 음식점 위생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실시하였는데 지자체 관할이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지자체에 문의 시 식약청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협조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 2008년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개농장도 관리범주에 들어가면서 2008년도에 소규모, 영세 개농장이 농장을 접고 업종전환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지자체 별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3. 현행 개식용 관련 법령

(1)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1) 축산법 관련

-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본인이 축산업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개고기는 축산물에 해당하지만 축산업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어 축산업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가 힘들며 관리대상에서도 빠져있으며 어떤 문제나 민원이 있어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0.10.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2010.10.12, 일부개정]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²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3조(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뼈(골분을 포함한다)·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2. 로얄제리·화분·봉독(蜂毒)·프로폴리스·밀랍(蜜蠟) 및 수벌의 번데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법으로써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가공, 유통,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는 축산법에 가축으로 되어 있어 축산물에는 포함되나 이 법의 관리 대상에서 빠진다. 개의 사육, 도살, 처리, 가공, 유통 등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규제대상 역시 아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³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3) 동물보호법

•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의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9조(동물의 운송),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이 고시되어 있다. 하

지만 벌칙조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벌칙 조항만이 있어 개식용 산업과 제8조에 해당되는 사항 외에 다른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최근 유기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추가되었다(제8조 제3항).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⁴

1. "동물"이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유기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동물의 운송)

-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개도 포함되어 있다. 광견병, 브루셀라가 제 2종 가축전염병에 분류되어 있어 있을 뿐이다. 개에서 광견병, 브루셀라병 등이 확인되는 사항 말고는 현재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그리고 현재 수의공중보건 분야에서는 번식장, 개농장 등에서 광견병, 브루셀라병 등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마다 실시하는 검사, 광견병 예방접종에서는 개식용과 관련된 곳과 번식장등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이 방치상태이다. 수의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아직 축산분야만 모니터링 하는데 그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⁵

[전문개정 2010.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2) 환경부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 2008년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신설되고 개도 관리대상에 들어가면서 육견협회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다.

주요 관련 사항으로는 2008년 9월까지의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2009년도 9월까지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개도 가축으로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규제 뿐 아니라 다른 가축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이 법은 애완견, 식용목적의 사육견을 구분하지 않고 분뇨를 발생시키는 사육장 20평 이상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축사육 금지지역(도시지역), 제한지역(인가 00호 이상에서 00m이내 지역)을 시군 조례로 지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지정하여 도시계획 지역 내 주거지역을 비롯하여 상업, 공업,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을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를 키울 수 없게 하고, 키울 수 있는 일부 제한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몇 백m 또는 몇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신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⁶

이는 동물보호소와도 관계가 되어 있다.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시동물보호소, 사설보호소중 대다수가 축사로 신고하여 정화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곳도 있으나 비용이 드는 부분 때문에 퇴비로 재활

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변으로 인해 암모니아 냄새, 해충, 병원체에 대한 소독 등이 안 되고 있으며 이는 보호동물의 질병관리에 매우 취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 다음은 이 법에 대해 육견협회에서 해석한 것이다. ⁷

1. 축산폐수 처리 관리대상에 빠져 있던 개가 추가됨.
2. 개사육사 60제곱미터(20)평 이상 신고해야 함(허가가 아님).
3.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4. 처리시설 설치(설치신고 : 2008. 9.27.까지 처리시설 설치 : 2009. 9.27.까지)
5. 가축사육 금지지역(도시지역), 제한지역(인가 00호 이상에서 00m이내 지역)을 시군 조례로 지정
6.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제9조 및 부칙 제2조) :
(1)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할 경우(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자)
(2) 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에 유입시킬 경우
7. 농림부 장관은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9. 농림부 장관은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 농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0. 밀집사육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려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시·군·구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의견수렴, 공청회).
11. 발생된 가축분뇨는 퇴비나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잔여량을 정화처리하기 위해 축분과 뇨를 분리해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술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이 법의 신설과 관련하여 지자체 별로 조례를 만드는 등 조치를 한 곳이 있었으며 아래는 이에 대한 기사들이다.

-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실시로 환경개선 큰 도움 기대. (전라일보, 2007. 10. 1)

김제시가 주민간의 분쟁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환경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규정으로 강화해 지역 환경개선과 분쟁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시는 돈사와 우사 등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 등으로 생활 환경에 피해를 끼치며 주민들 간에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따른 축사신축의 일부를 제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사 신축과 확대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며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 등의 생활환경의 오염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들 간의 분쟁 민원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시행된 가축사육금지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하여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지에만 축사신축에 대한 제한 근거가 있었지만 동 지역 등은 제한할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제한규정 강화로 민원과 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제한규정은 일부지역만 국한되어 있어 큰 실효성이 없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제한규정은 환경개선과 주민간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동지역 등도 포함되어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었고 도시계획 지역 내 주거지역을 비롯하여 상업, 공업,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주택이 위치한 부지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 젓소의 경우 100m이내, 말, 돼지, 닭, 오리, 개, 양, 사슴의 경우에는 200m이내 지역은 축사의 신축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제한 지역 내 모든 세대로부터 축사신축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경우는 축사를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여기에 법적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개’ 사육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도심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생활환경 개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⁸

- 가축사육제한 조례’ 집단 반발 보은군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중, 축산단체는 축산업 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장 (보은신문, 2008. 1. 18)

보은군이 입법예고 중인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축산단체가 반발, 관련 부서에 항의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은군은 1월7일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은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청취 중이다. 보은군은 관련 조례안에서 소 등은 100m이내 지역, 돼지는 500m이내 지역과 같이 구체적으로 거리제한을 명시하며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면 분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보은군이 이같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축사와 인근 주택과의 거리가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발생, 해충 발생, 주변 오염 등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축산업은 경쟁력을 떠나 생명산업이자 생계이고 돈이 많아

어디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닐 형편이 아니라며 지금 보은군 농업소득의 46%이상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군에서는 신 활력 사업으로 축산을 권장하면서 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내는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보은군 전 지역에서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조례안으로 보면 신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FTA체결로 축산의 규모화가 시급해 정부에서도 적정 두수 사육을 위한 축사신축 및 퇴비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환경부서는 27일까지 조례안에 단체나 기관, 개인의 의견을 수렴 중이기 때문에 축산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군 의회 의정 간담회를 거쳐 조례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축산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양봉협회 윤찬호 회장, 육우협회 고장석 회장, 양계협회 차영화 회장, 한우협회 조위필 회장, 양돈협회 방희진 회장, 낙농협회 송석부 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들은 보은군을 방문해 축산 부서 및 환경부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일반 주민과 축산업자 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의견과 조례 제정 시일을 늦춰 줄 것을 건의했다. ⁹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

개식용 관련 업소에서의 개도축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경우 이 법에 적용될 수 있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10.3.22>

3. 제1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¹⁰

(3) 보건복지부 관련

1) 식품위생법 관련

• 현재 개의 도축이후에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밝혀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의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개식용 관련 음식점에 대한 하절기에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언론에 공개를 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결과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식약청에 위생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식약청에서는 해당 지자체 별로 요구를 하라고 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식약청에서 요구를 해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에 개고기에 대한 위생검사, 인수공통질병 등에 대한 논의, 연구, 자료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08년도 위생검사 결과는 심각한 상태로 위해평가 대상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으로서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1983년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지시로 보건사회부는 대중음식점 혐오식품 조리·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농림부는 개도살을 금지하였다. 또한 1984년 1월 16일 농림부는 개도살을 일체 금지하도록 사·도에 지시하였고, 1984년 1월 30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개도살 및 식용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달되었다. 이때 대상 업소는 뱀탕, 보신탕, 토룡탕, 용봉탕, 굴베이탕, 개소주집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의 사례는 없었으며, 동 고시는 현재 사문화되어 운용이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서울, 경기 이외의 타 사·도는 고시하지 아니함).

정부의 위생 점검은 개식용 관련업은 이미 법의 테두리에 있으며 식품위생법의 관리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생 점검 후 실제로 처벌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으로 개고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도 제 7 조, 제 9 조 포장 용기, 기구에 대한 벌칙조항은 해당이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1. "식품"이란 모든 식품(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제15조(위해평가)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 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제7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제10조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제37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 (참고자료) “당신은 애완견을 먹고 있습니다.” (KBS, 2008. 7. 11)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대상은 서울, 경기 일원에서 수거한 개고기 17점, 인터넷에서 구입한 개소주 10점 등 총 27점.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항생제(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등이다. 검사결과는 놀라웠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준용할 때 총 17점의 개고기 중 일반세균 4건, 대장균 8건, 황색포도상구균 1건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됐다. 또 중금속 중 납은 식품공전을 준용할 때 개고기에서 1건, 개소주에서 1건이 기준을 초과했다. 27점 중 15건이 유사 기준을 넘은 것이다.

작년 서울시에서 수거해 검사한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세균 검출건수가 700여건에 2건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수십 배 이상 높은 검출 빈도이다.¹²

- 2008년 식약청에서 지시한 개고기 위생검사 관련 공문 ¹³

식약청브랜드 **KiFDA(기쁘다)**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수신자 식품잔류약품과장
(경유)

제목 식용견 검사의회

1. 최근 KBS '소비자고발' 프로에서 식용견의 비위생적 취급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여름철을 맞아 식용견의 소비량 증가로 인하여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아 식중독 예방 목적 등으로 아래와 같이 검사의회 하오니 검사완료 후 우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뢰제품 : 식용견(생고기)
- 나. 수거건수 : 14건
- 다. 수 거 량 : 각 600g
- 라.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붙임 : 제품검사의뢰서 및 제품인수증 2부(별도송부). 끝.

식 품 관 리 과 장

시행 식품관리과-7911 (2008.07.29) 접수 ()

우 122-70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 www.kfda.go.kr

전화 02-380-1633 전송 02-352-9445 / k1026@kfda.go.kr / 공개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식용견 조리·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

■ 목 적

- 여름철 식용견의 소비량 증가에 따른 식용견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에 따른 위생 점검 및 식중독균, 동물약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

■ 점검일자 : '08. 7.17 ~ 7.18 (2일간)

■ 대상 업소 : 식용견 조리·판매업소(식품접객업소) 총 60개소

■ 점검기관 : 식약청(본청, 지방청)

■ 주요 점검사항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위반여부
- 조리장 등 영업장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여부
- 무신고 영업행위(등산로 입구 등 취약지역) 여부 등

■ 수거검사

- 수거건수
 - 본청 : 생고기 20건(시장에서 판매 중인 생고기)
 - 지방청 : 삶은 고기 10건 이상(접객업소 조리판매 중인 삶은 고기)

(※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병행)

- 수거대상
 - 조리·판매 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열·조리한 후 보관중인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섭취하는 삶은 고기

- 생고기(동물의약품)

○ 검사항목

- 식중독균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

- 동물용의약품

○ 수거방법 : 유상수거

○ 수거량 : 800g(400g×2점)

○ 검사기관

- 생고기 : 본청(잔류화확물질팀)

- 삶은 고기 : 지방 식약청(시험분석센터)

○ 주의사항

- 수거용기는 반드시 무균봉투 또는 멸균용기 사용

- 수거한 검체는 냉장 운반하여 4시간 이내 검사의뢰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 : 7.22일까지

○ 수거검사 결과보고 : 7.30일까지

붙임 : 1. 업소점검표 1부

2. 위생 점검 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서 1부.

[붙임 1]

식용건 조리·판매업소 점검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점검분야	점검의견 / 위반사항	적·부
◦ 식용건 위생적 보관·취급		
◦ 식용건 보관 냉장·냉동 보관 시설 정상작동		
◦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 조리장, 조리시설(기구) 등 관리		
◦ 기타사항(점검자 의견 등)		

검 체 채 취	<input type="checkbox"/> 채취 <input type="checkbox"/> 미채취
----------------	--

위 점검결과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월 일

확인자(위생관리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붙임 2]

위생 점검 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서

■ 위생 점검 결과

○ 점검결과

점검업소수	적합	부적합	비고

○ 위반업소 내역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 수거검사 결과

○ 수거검사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비고

○ 부적합 내역

수거장소	업소명 (업종)	소재지	품목명	부적합 사유		
				항목	기준	결과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 우리나라에서 2002년 8월에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기능성식품의 용어.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 그 내용으로 볼 때 dietary supplement and functional food에 해당한다.

개소주는 일반인에게 건강식, 보양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 개고기를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으나 건강원에서의 개소주는 허가를 내주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 개소주는 건강원에서 제조후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해당된다. (제5조 영업의 허가), (제6조 영업의 신고), (제7조 품목제조신고), (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표시기준), (제2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있으며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의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해식품은 없으며 조항에 해당되는 품목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소주와 같이 검증되지 않고 검사 결과 위해한 요소가 많은 다른 위해한 기능식품도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개소주와 같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8>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
7. 제29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营业을 하는 때
9.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

할 수 있다.

제35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3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식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제3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제43조(벌칙) 제5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7.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2. 제1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정지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3.21>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 7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¹⁴

참고문헌

1. 식용견 위생관리 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 2005
2. 축산법

3. 축산물 위생관리법
4. 동물보호법
5. 가축전염병예방법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대한육견협회 www.2008dog.co.kr/
8. 전라일보, 2007. 10. 1,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실시로 환경개선 큰 도움 기대”
9. 보은 신문, 2008. 1. 18, “가축사육제한 조례’ 집단 반발 보은군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중, 축산단체는 축산업 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장“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
11. 식품위생법
12. KBS, 2008. 7. 11, “당신은 애완견을 먹고 있습니다.”
13. 식약청,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식용견 조리·판매업소 특별 위생 점검. 2008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 절 개식용 관련 대응 방안

1.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

동물보호법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개의 도축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과 개고기 판매 금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이미지 상승 및 생명권 등 동물보호 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만 현재 관련된 업계의 생계유지와 개식용 찬성 쪽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의 여론은 개식용 논란이 있을 경우 즐겨먹지 않는 사람도 애국심과 관련하여 옹호하는 주장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개식용에 반대하는 논리가 찬성하는 쪽에 대한 대응 논리로 작용하지 않았다.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반대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여 국민 합의를 도출하고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순서이며 국회, 정부, 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식용견에 대한 금지 정책은 1988년 올림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었다. 현재는 개식용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도축 이후의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부의 관리 하에 있다.

-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 정부의 대응은 식용견에 대한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부정적 대응기로 볼 수 있다. 1983년 1월 15일에는 각 시·도가 식용견을 혐오식품으로 하여 판매행위를 제한하였는데, 대도시, 관광지 및 관광호텔 주변에서 혐오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각 시·도에서 고시로 제정하였다 (면단위 이하 지역으로 시·도지사 고시지역은 판매). 1983년 11월 1일에는 외무부에서 개도살 및 식용 금지 조치 요구가 있었고 1983년 11월 3일에는 농림부의 도살용 개 사육억제 지시가 있었다.

개식용 금지 법안이 최근에 마련된 아시아권 국가 중 대만의 경우를 보면 예전부터 개식용이 성행하였으나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2001년, 대만정부는 약간의 반대는 있었지만 국내동물복지단체의 노력을 통해, 국제적인 인식향상을 위해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였다(대만 의회는 2001년 1월 2일 고기 또는 가축을 얻을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총통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는 이 법안은 위반자들에게 최고 10만 대만달러(미화 3천3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

다.

동물보호법 개정이후 개고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여 2007년에는 개고기 판매자들에게 많은 벌금을 물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동물권리옹호자들은 식당에서 개고기를 도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대만 정부를 고소하였고, 2008년 이후 개식용은 드문 현상이 되고 있다.

2. 현행 관련 법규 부분 개정

(1)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농림부 소관인 축산법에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축산물 도축, 위생과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에서 개는 제외되어 있다. 규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사육, 도축과 관련된 문제도 현행법으로 제재하기 힘든 상황이다.

관련 법규 개정에는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개를 식용목적으로 하는 축산업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그 결과물인 축산물로서 개고기 자체에 대한 언급 및 합법화 언급을 피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개 도축을 금지하는 방법이나 학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살법, 일반인에 의한 심정지, 호흡정지 약물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동물의 운송과 관련된 조항은 현재 주의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대상 및 규제범위를 어느 정도 정하여 벌칙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0.10.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2010.10.12, 일부개정]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3조(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뽕(골분을 포함한다)·뽕·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2. 로알제리·화분·봉독(蜂毒)·프로폴리스·밀랍(蜜蠟) 및 수벌의 번데기

(2) 보건복지부 관련

1) 개고기 위해식품 지정

위해식품 지정 추진시 하절기마다 실시되고 있는 위생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으나 외부공개를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 등 민간단체에서의 위해요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해식품 추진시 개식용 합법화를 위한 순서가 아니냐는 논란 및 찬성하는 쪽에 큰 반발이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3. 현행 법규를 활용하여 규제

앞에 얘기한 1, 2번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벌칙 조항에 해당되어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유기동물로 확인된 동물을 개고기로 이용할 경우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제8조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감전 후 목을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개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유기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환경부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번식장, 개농장 등은 관리 대상이다. 폐기물과 관련하여 분뇨의 재활용 절차, 시설 등이 간소화되어 규제하기는 힘들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는 농장이나, 가축사육 금지지역에 사육을 하는 농장에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축산폐수 처리 관리대상에 빠져 있던 개가 추가됨.
2. 개사육사 60제곱미터(20)평 이상 신고해야 함(허가가 아님).
3.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처리시설 설치(설치신고 : 2008. 9.27.까지 처리시설 설치 : 2009. 9.27.까지)
5. 가축사육 금지지역(도시지역), 제한지역(인가 00호 이상에서 00m이내 지역을 시군 조례로 지정하고 도시계획 지역 내 주거지역을 비롯하여 상업, 공업,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을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를 키울 수 없게 하고, 키울 수 있는 일부제한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몇 백m 또는 몇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신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6.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제9조 및 부칙 제2조) :
 - (1)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할 경우(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자)
 - (2) 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에 유입시킬 경우
농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식용 관련 업소에서 개도축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10.3.22>

3.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보건복지부 관련

약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식품위생법 관리 하에 있다. 도축이후의 부분부터 관리 소관이며 실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2008년도부터 하절기마다 개식육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음식물로 취급하여 관리 받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식육의 채취나 판매 등이 영업허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보신탕집, 개소주 집 등은 식품접객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 운영시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고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포장 용기, 기구에 대한 기준은 해당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 7 조, 제 9 조)

「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 개고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도 포장 용기, 기구에 대한 기준은 해당

• 제7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해당됨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제10조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개소기를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으나 개소주의 경우는 건강원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

개소주는 건강원에서 제조 후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해당된다. (제5조 영업의 허가), (제6조 영업의 신고), (제7조 품목제조신고), (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표시기준), (제2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있으며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의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해식품은 없으며 조항에 해당되는 품목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소주와 같이 검증되지 않고 검사 결과 위해한 요소가 많은 다른 위해한 기능식품도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개소주와 같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3. 부패·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줄 것
4. 판매사레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2조(품질관리인)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제2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영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영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제5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3.21>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 7의2. 제22조의 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관령 법령을 이용하여 개식용 문제에 대처한 경우

1) 최근에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보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 가축 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개도축 업자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연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휴대폰] [주택] [사무실]		
직 업	[휴대폰]	사무실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번영동 117-35
전 화	[휴대폰]	[주택]	[사무실]
이메일	[이메일주소]		
대리인에 의한 고소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성명 : _____ , 연락처 _____) <input type="checkbox"/>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_____ , 연락처 _____)		
2. 피고발인			
성 명	배 00 이 00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일산시 동구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주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귀서 지능팀에서 수사한 개 도축업자 2명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동물보호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 고발인들은 경기도 일산 동구 야산에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여 동안 개 730여마리를 불법 도축 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고 (2012년 7월 9일 문화일보 기사)

도살 후 잔존물 처리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고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5. 고발이유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는 누구든지 동물(개)을 죽일수 없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그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15조(배출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위반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처리의 의무)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하여 불법도축장 주변의 토질 및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6. 기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2년 7월

고발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연합(인)

제출인



일산경찰서장 귀중

- 3 -

(출처: <http://blog.naver.com/autocafe/161692371>)

2) 불법 무허가 건축물, 무신고 간판,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와 관련되어 해당 구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실시하여 영업장 폐쇄, 농장 철거 등의 결과를 얻어 냈다. 이는 영세한 농장주, 소매업자 등과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에서 개식용과 관련된 고발

- 2011년 11월

기장군 정관면 소재 개사육장(불법컨테이너 2동, 불법 가건물 2동)

해당 개사육장의 불법건축물 개사육장 전부 철거.

- 2011년 11월

연제구 거제동 소재 **보신탕집

무신고 영업행위 고발

- 2012년 1월

기장군 철마면 소재 **집

무허가 건축물 고발, 무신고 영업행위 고발, 무신고 간판 고발

- 2012년 1월

사하구 괴정동 소재 **탕제원

무허가 건축물 고발, 무신고 영업행위 고발, 무신고 간판 고발

- 2012년 2월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흑염소

무신고 영업행위 고발

- 2012년 2월

금정구 장전동 소재 **개소주

무신고 영업행위 고발, 간판철거

(간판 자진철거, 영업장 자진 폐쇄)

현재 고발진행중인 건도 여러 건 있음

부곡동, 온천동, 부전동 소재 보신탕집은 고발예정

구포시장도 고발조치 들어간 상태

4. 개식용 수요 감소를 위한 노력

복날 캠페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민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캠페인, 교육, 언론 매체 활용 등이 필요하다. 기존의 개식용 논란에서는 애국심, 식용견과 반려동물은 다르다는 찬성 쪽 논리가 우위를 점하고 개를 먹지 않는 사람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은 적절한 반대논리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개의 먹거리로서의 부적합성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되어 합법화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찬성하는 쪽에서 약한 것은 비전문성이다. 오히려 이 부분이 강조가 되면 합법화의 여론을 맞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으나 개를 식용으로 연구한 나라는 없으며 현재 상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 오히려 개식용을 논란의 중심으로 이슈화하여야 하며 개고기 금지에 대한 여론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고기 위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 합법화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개식용 관련업자와 찬성론자 때문에 무대응을 펴고 있으며 오히려 위생부분에 대한 합법화의 입장을 펴고 있다. 개식용에 대해 이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대단위 유통망을 가진 곳이 출현하였고 대규모 농장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개고기 산업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신문화가 대세인 한국에서 개고기 수요가 장년층에서 가장 높고 청년층에서도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연령대 별로 차별화하여 캠페인을 펼칠 필요도 있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언론 매체 활용 등으로 영세한 농장 및 소매업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장 및 대단위 유통망을 가진 곳 역시 위축이 될 수 있다.

5. 대외적인 압력

선진국 계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유일하게 개식용에 대한 금지의 움직임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국제 행사 때마다 국제적으로 여러 비난과 항의를 받았으나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 후로 외교문제가 될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조심스런 접근이 이루어졌고 대외적인 압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외적인 압력 역시 개고기 반대에 대한 국민의 합의와 관련이 있으며 국내에서 어느 정도 반대논리가 여론으로 작용할 경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개식용 관련 업자에 대한 대책

육견협회에서는 동물보호단체가 생계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와주면 대부분 농장의 업종전환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 육견협회 법인화를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현행법 위반 업소에 대한 규제, 개식용 금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으로 계속 압박하는 방법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개식용 금지와 관련된 법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개식용 관련업자의 생계에 대해 업종 전환 시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